

Comprehensive Guide:
How to Invest Overseas?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머리말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라는 기치 아래 FTA 등으로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역확대 외에도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투자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1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56억 달러이며, 금년 9월까지 177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투자에 관한 노하우·정보·인력·자금·마케팅 등이 부족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지식경제부는 80여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신규제도를 반영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해외투자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기관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 12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강성천

Contents

Chapter I 해외진출 개요

| | |
|--|----|
|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 12 |
|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 12 |
| 2-1. 해외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 | 12 |
| 2-2. 해외진출 유형별 장단점 비교 | 15 |
|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 16 |
| 3-1. 외화증권취득 | 16 |
| 3-2. 외화대부채권취득 | 16 |
| 3-3. 해외영업소 운영·사업 활동 자금 등 지급 | 16 |
| 3-4. 해외투자 절차 | 17 |
| 3-5. 해외투자 확정 | 22 |
|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 28 |
| 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 29 |
| 4-2. 비금융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 34 |
| 4-3.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 36 |
| 4-4. 해외건설업 신고 | 38 |
| 4-5.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 39 |
| 4-6. 해외(광물·농축산물·산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 40 |
|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 42 |
| 5-1.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 42 |
| 5-2.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 43 |
| 5-3. 해외투자 유의사항 | 52 |

Chapter II 해외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 | |
|-----------------------------------|-----------|
|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 56 |
| 1-1.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 56 |
| 1-2.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 57 |
| 2. 상담 및 컨설팅 | 58 |
| 2-1. 해외진출기업 종합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58 |
| 2-2. 해외 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 59 |
| 2-3. 해외진출컨설팅센터 | 60 |
| 2-4. 인터넷 해외통관 지원센터 | 62 |
| 2-5. 중국교역 투자 상담 | 63 |
| 2-6.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 64 |
| 2-7. 글로벌콘텐츠센터(GCC) | 67 |
| 2-8.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사업 | 69 |
|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 70 |
| 3-1. 투자 조사단/사절단 파견 지원 | 70 |
| 3-2. 해외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 지원 | 71 |
| 3-3.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 72 |
| 3-4. 선진기업연구소 기술조사단 | 73 |
| 4. 해외 법인(공장) 설립 지원 | 74 |
| 4-1.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 74 |
| 4-2.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 사업 | 75 |

Contents

| | |
|--|-----------|
|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 77 |
| 5-1. 재외공관 통상투자종합지원반 | 77 |
| 5-2.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78 |
| 5-3. 해외 공동물류센터 | 79 |
| 5-4.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 81 |
| 5-5. 수출인큐베이터 | 83 |
| 5-6. 해외지재권보호 데스크(IP Desk) | 86 |
| 5-7.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87 |
| 5-8. 중소기업 KOREA DESK | 89 |
| 5-9. 대중국 투자정보 및 경영상담 | 91 |
|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 92 |
| 6-1.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 92 |
| 6-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 93 |
| 6-3.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국제특허분쟁 예방사업) | 94 |
| 6-4.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및 산업기술 보호 지원 | 96 |
| 7. 해외 건설 · 플랜트 · 환경 · 물류기업 지원 | 97 |
| 7-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97 |
| 7-2.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 | 98 |
| 7-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 100 |
| 7-4.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 102 |
| 7-5.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 103 |
| 7-6.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 105 |
| 7-7. 엔지니어링기업 해외수주 지원 | 107 |
| 7-8. 해외환경산업 진출 지원 | 108 |
| 7-9. 국제물류 투자분석 지원 | 116 |
| 7-10.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118 |
| 7-11. 중국시장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120 |
| 7-12.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 121 |

| | |
|--------------------------------------|------------|
|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 123 |
| 8-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여건조사 | 123 |
| 8-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기초탐사 | 125 |
| 8-3.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127 |
| 8-4. 해외농업환경 조사 지원 | 129 |
| | |
| 9. 노무관리 · 해외취업 지원 | 131 |
| 9-1. 노무관리 지원 | 131 |
| 9-2.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 지원 | 133 |
| 9-3. 해외취업 알선 | 135 |
| 9-4.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 136 |
| 9-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 138 |
| 9-6.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140 |
| 9-7. 플랜트 해외 인턴 지원 | 141 |
| 9-8. 해외사업 퇴직전문인력 채용박람회 | 142 |
| | |
| 10. 법률 지원 | 143 |
| 10-1. 해외진출기업 상사중재제도 활용 지원 | 143 |
| 10-2. 해외진출기업 투자분쟁제도 활용지원 | 145 |
| 10-3. 해외 법령정보 지원 | 147 |
| 10-4. 해외 세무정보 지원 | 148 |
| | |
| 11. 청산 및 해외환류기업 지원 | 149 |
| 11-1. U턴기업 지원 | 149 |
| 11-2. 산업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 150 |
| 11-3.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 151 |
| | |
|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 153 |
| 12-1. KOTRA 글로벌연수원 | 153 |
| 12-2. 해외건설협회 | 154 |
| 1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 157 |
| 12-4. 전지사업자 교육 | 159 |

Contents

Chapter III 조세제도

| | |
|---|------------|
| 1. 내국세 | 162 |
| 1-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162 |
|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164 |
|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165 |
| 1-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 167 |
| 1-5. 이전가격 과세제도 | 168 |
|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 170 |
|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 172 |
| 1-8.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 173 |
| 1-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 175 |
| 1-1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 177 |
| 1-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179 |
| 1-12.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신고의무 | 181 |
| 2. 관세 | 183 |
| 2-1. 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수입활용) | 183 |
| 2-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수출활용) | 185 |
| 2-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187 |

Chapter IV 금융 및 보험 제도

| | |
|--|------------|
| 1. 금융 | 192 |
| 1-1. 해외투자자금 대출 | 192 |
| 1-2. 해외사업자금 대출 | 194 |
| 1-3.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195 |
| 1-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 196 |
| 1-5.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자금 융자 | 200 |
| 1-6.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융자 | 202 |
|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 204 |
| 1-8. M&A Financing 및 금융(협조융자) 주선 | 206 |
| 1-9. 해외 매출채권 담보대출 | 207 |
| 1-10. 대외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 209 |
| | |
| 2. 보험 | 215 |
| 2-1. 국외기업 신용조사 | 215 |
| 2-2. 해외투자보험 | 216 |
| 2-3.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 218 |
| 2-4. 해외사업금융보험 | 220 |
| 2-5. 수출보증보험 | 222 |
| 2-6. 해외 미수채권 추심대행 | 224 |

Contents

Chapter V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 | |
|----------------------------|------------|
| 1. 조세제도 | 226 |
| 1-1. 국내제도 | 228 |
| 1-2. 조세조약 | 238 |
| 2. 금융제도 | 242 |
|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 245 |
| 2-2. 투자제한 | 252 |
| 2-3. 내용변경 | 254 |
| 2-4. 사후관리 | 256 |
| 2-5. 지원제도 | 260 |
| 3. 무역보험제도 | 264 |
|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 268 |
| 5. 해외건설 진출제도 | 272 |

부 록

| | |
|-------------------------------------|------------|
|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 282 |
| 1-1. 투자보장협정 | 282 |
| 1-2. 이종과세방지협정 | 284 |
| 1-3. 사회보장협정 | 285 |
|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 287 |
| 1-1. 조세조약 현황 | 287 |
| 1-2.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289 |



해외진출 개요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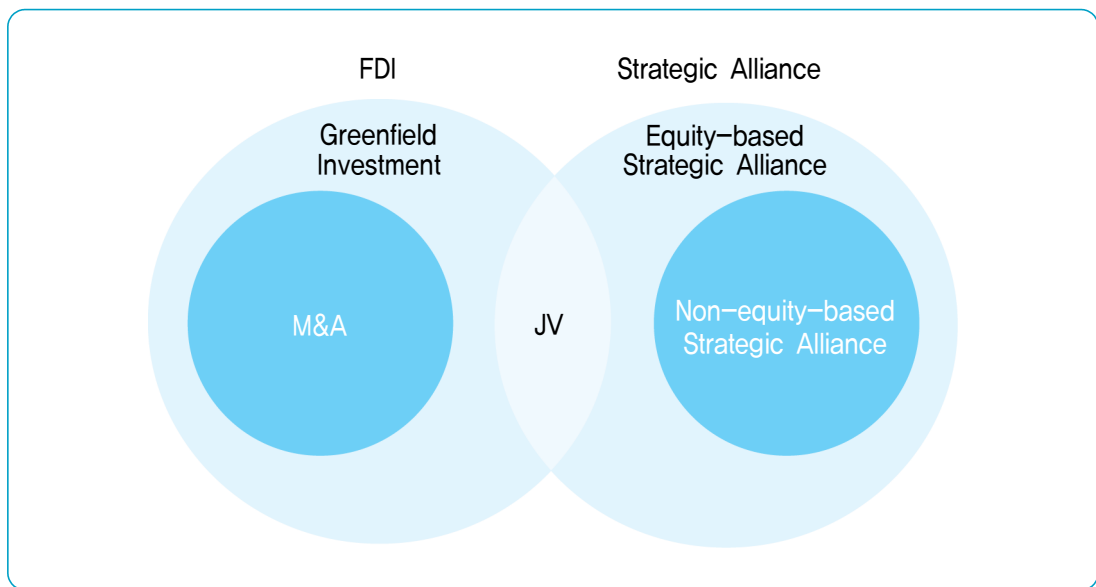
1. 해외투자진출의 의미

- 해외투자진출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험관리상의 지식·노하우·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의 경영활동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2-1. 해외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

해외시장 진출 유형



-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은 해외직접투자·전략적 제휴·M&A·Joint Venture(합작법인 설립) 등이 있으며, 이들 방식이 상호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계가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 해외진출 유형은 크게 해외직접투자(FDI)와 전략적 제휴로 구분할 수 있음

가. 해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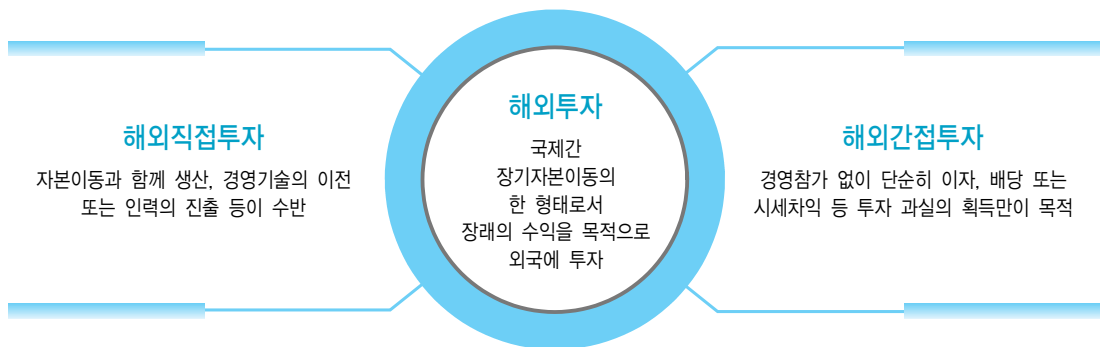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로는 그린 필드 투자(단독 또는 합작에 의한 신규 법인 설립)·JV(합작법인 설립)·M&A(기존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이 포함되며, JV의 경우 일정 투자를 동반해 파트너 기업과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함
- 단, 모든 JV가 전략적 제휴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 지속적,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가 전제되어야 함

나. 전략적 제휴

- 전략적 제휴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자산투자를 동반하는 Equity-based Strategic Alliance와 자산투자 없이 협력을 수행하는 Non-equity-based Strategic Alliance로 구분할 수 있음. 자산기반 투자의 경우 FDI 요건(투자기업의 지분 10% 이상 보유, 경영참여) 충족 시 FDI로도 분류됨
- 그러나 M&A 방식이 사업부 합병을 통한 JV 설립을 동반하거나, 일부 JV는 전략적 제휴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이 같은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

* FDI 요건 : 투자기업의 지분 10% 이상 보유

※ 해외직접투자자와 해외간접투자자의 차이



해외투자진출 세부 유형별 내용

| 유형 | 내용 |
|--|--|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 현지에 법인을 설립(단독 or 합작)하거나 현지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현지 기업에 대한 투자 10% 이상 지분 보유(IMF 정의) ※ M&A, 그린필드형(합작투자, 단독투자) 투자로 구분 가능 |
| - M&A(인수합병) | 기존 기업의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 인수, 합병 방식 |
| - Greenfield Investment | 신규 법인 설립 방식의 직접투자 ※ 합작투자(Joint Venture), 단독투자(Wholly-owned subsidiary) |
| JV (합작투자) | 공동투자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단, 모든 JV가 전략적 제휴로 간주되지는 않음 ※ JV가 전략적 제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JV 설립을 통한 투자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수동적인 파트너십은 전략적 제휴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 Fuji - Xerox의 50:50 지분 투자를 통한 JV 설립 후 Fuji는 지분을 통한 투자이익에만 관심. 동 JV는 마치 Xerox의 자회사처럼 운영되었음 |
|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의 전략적 목표(기술개발, 생산, 판매, 자본 조달 협력 등)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M&A와 달리 양 법인의 독립성은 유지 ※ 자본투자를 병행하는(JV, FDI 등 중소 자본투자) Equity-based 제휴와 자본 투자 없이 계약에 의해 양방의 책임과 제휴방법 등을 명시하는 Non-equity-based (contractual) 제휴방식으로 구분 |

2-2. 해외진출 유형별 장단점 비교

가. 단독투자 vs M&A

| | 단독투자 | M & A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통제용이 - 불필요한 통합비용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 (신규시장 적응성) - 경쟁사의 제거 - 회사의 자원과 역량 향상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진출에 따른 시장 적응력 저하 - 시행착오 위험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에 따른 적응 비용 발생 -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기업 역량 저하 |

나. 전략적 제휴 vs M&A

| | 전략적 제휴 | M & A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 (신규시장 적응성) - 모기업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 - 파트너 변경의 용이성 - 경쟁자의 제거 - 부족한 경영자원 확보(기술, 노하우, 브랜드) - 불요불급한 투자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 (신규시장 적응성) - 파트너 기업 자산에 대한 높은 통제력 - 경쟁자의 제거 - 부족한 경영자원 확보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통제력(공동 의사결정 필요) - 핵심 역량(기술, 노하우 등) 유출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합병 비용(프리미엄 발생 가능) - 양사 문화, 직원간 충돌 가능성 - 불필요한 통합 노력 필요 |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진출(직접투자) 방법에는 ①외화증권 취득, ②외화대부채권 취득, ③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음(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3-1. 외화증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기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3-2. 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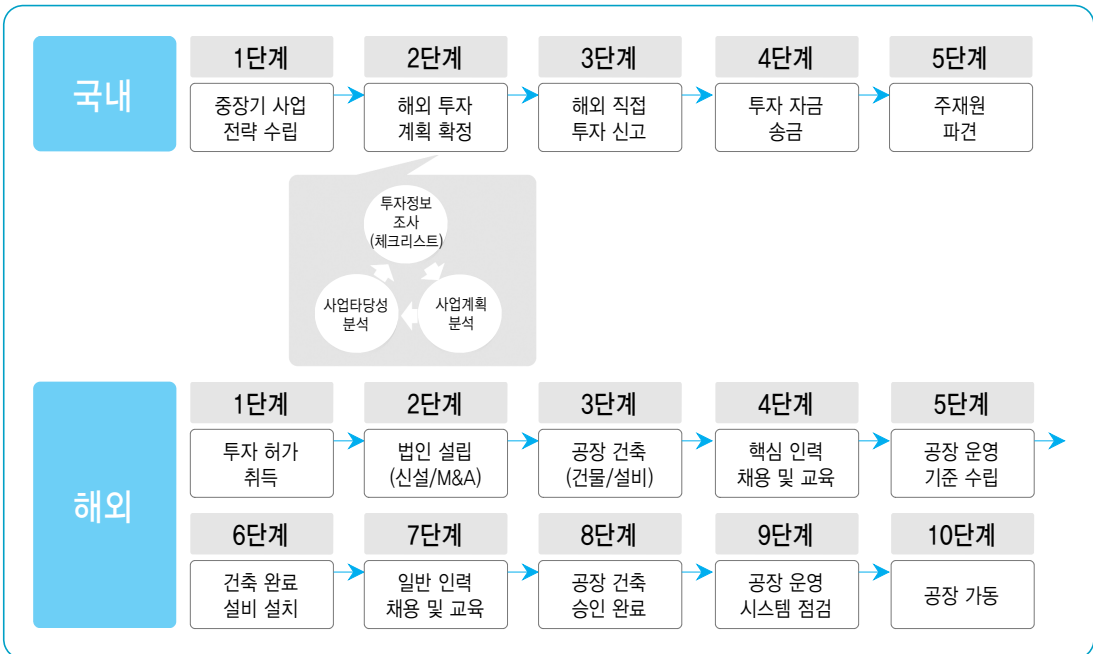
-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

3-3. 해외영업소 운영·사업 활동 자금 등 지급(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 외국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3-4. 해외투자 절차

- 해외투자 절차는 국내절차 및 해외절차로 구분됨. 단계 명시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여러 단계가 동시에 검토되고 준비되는 것이 일반적임
 - 국내 :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후 투자자금 송금 및 주재인력 파견
 - 해외 : 투자허가 취득 후 법인설립 및 공장가동 준비



■ 국내 절차 ■

-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 해외투자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또는 원가상승이나 환율 등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
 - 사업전략에 포함된 경우는 사전 계획된 투자로서 당연히 미리 조사해야 하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

○ 해외투자 결정

- 해외투자의 결정은 「투자정보 조사·사업계획 수립·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결정되며 사업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임

○ 해외직접투자 신고

- 해외법인설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함
 - 외국환은행은 다음의 하나를 지정하여 신고함
 - ① 주 채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② 주 채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로 지정하는 은행
-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 전에 관련 부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에 의거 해외자원이 광물이면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수산물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이면 산림청장에게 신고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 신고
- 국내에서도 전략기술(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가 제한될 수 있음. 전략기술 해당여부와 허가는 전략물자관리원 (www.kosti.or.kr)에 확인
- 기타 신고절차는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www.ois.go.kr) 참고

○ 투자자금 송금

- 투자자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에 따라 1년 내에 송금하면 되며, 그 기간 내에 송금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 다만, 동 기간 내에 당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
- 투자자금은 현금과 현물 외에 현지와 합작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지식재산권)으로도 불입이 가능하며 합작계약서에 명시하면 됨
- 투자자금이 송금되면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함

○ 주재원 파견

-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이미 해외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주재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업무 및 어학준비를 시켜야 함. 주재원 파견이 중요함에도 간과하고 있다가 파견이 임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책임자를 찾기가 어렵고 현지 적응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됨

- 주재인력파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핵심 업무(제조, 관리, 마케팅 및 영업 등)만 주재 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합작인 경우는 합작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된 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함
- 주재원 파견 전에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함
- 주재원으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의 체류비자 취득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야 함. 소요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장자 신분으로 현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해외 절차 ■

○ 투자허가 취득

-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할 업종이 투자우대 업종인지 투자제한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함. 투자우대 업종은 타 업종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현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각기 다른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마다 투자업종이나 투자규모 등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국가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므로 투자대상 국가의 외국인투자법규를 확인해야 함

○ 법인 설립

- 투자할 업종과 품목이 외국인 단독투자(100% 지분)가 가능한지 또는 지분을 제한이 있는지 확인 필요. 지분을 제한이 있는 경우는 현지인 파트너를 물색하여 합작으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임
- 법인설립에 앞서 회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함. 회사의 형태는 국가마다 회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목적 및 사업계획에 맞는 적합한 형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한 후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업체에 설립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
- 해외투자시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 현지법인을 인수·합병(M&A)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각각의 일반적인 장단점에 투자자의 성향과 업종 및 현지 인력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함

| | 신규 설립 | 인수 · 합병 (M&A)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입지 선정 · 계획의 융통성 및 현지인들과 조화 용이 - 투자금액 결정의 융통성 - 기업통제 용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착수까지 시간 단축 - 기존 인력, 기술, 경영 노하우의 흡수 - 상품, 브랜드, 유통망 확보 - 시너지 효과의 추구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및 영업기반 구축에 장기간 소요 - 능력 있는 인력채용 곤란 - 투자의 안정성 결여 - 기존업체와의 마찰 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인수자금의 필요 - 기존의 부실 문제점 존재 - 이질적 문화와 초기적응 어려움 · 인수가격 산정 곤란 - 절차의 복잡성 |

- 현지 M&A 가능한 업체에 대한 정보는 현지 투자청 사이트나 KOTRA의 해외진출 M&A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공장 건축

- 공장은 직접 건축하거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임차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차에도 기존 공장건물을 임차하거나 건축사양에 맞춰 신축 후 임차하는 방법이 있음
- 공장건축 시에는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 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과 기업의 부담비용 등을 잘 살펴보고 직접투자 또는 아웃소싱 등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공장건축은 인허가 사항이 많으므로 행정업무는 현지 거주중인 경험 많은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건축공기는 설계능력, 시공방법, 건설업체의 능력, 기후 및 건축자재 조달 용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사정을 감안한 공장가동 일정을 수립하여 판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핵심인력 채용 및 교육

- 한국에서 파견되는 주재인력을 보좌하면서 제조라인의 핵심공정에서 근무할 현지 인력은 미리 채용하여 교육을 시키고, 공장가동을 준비하는 단계에 참여시켜 향후 채용할 일반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해야 함
- 핵심인력은 동종업계나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함. 교육내용은 직무 교육과정과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문화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교육 장소는 현지교육과 한국 본사에서 연수교육이 있음. 본사 연수교육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애사심 배양과 동기부여 및 단시간 내 업무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 현장근로자인 경우는 현지 생산라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 공장 운영기준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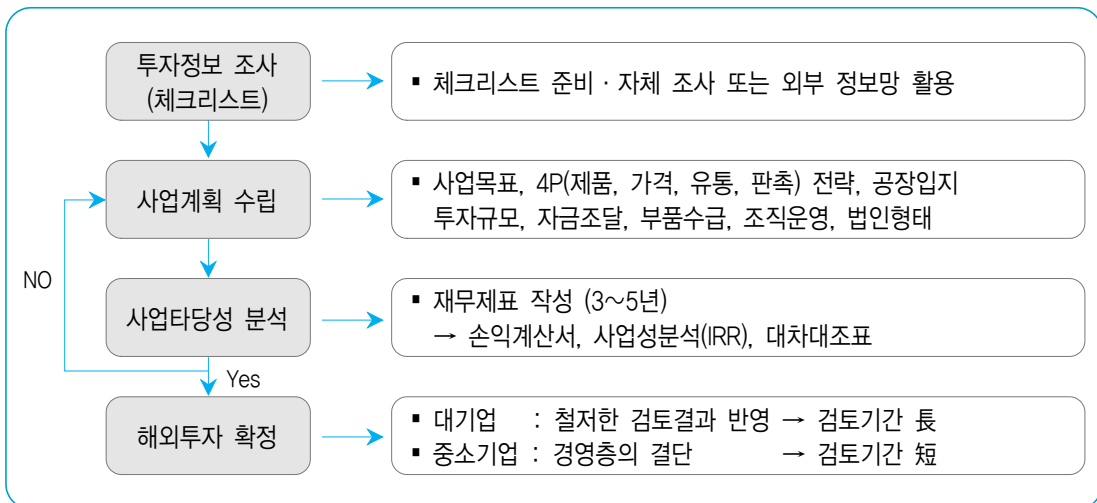
- 회사는 사규, 기준, 표준 및 업무 매뉴얼 등이 있음.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현지어로 준비해야 하며, 현지 국가의 각종 제도나 문화 등을 반영하여 현지인들이 납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초기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공장가동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부문별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거친 후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준비가 부족하면 보완 후 가동을 하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함

○ 건축완료~공장가동

- 공장 건축완료, 생산설비 설치, 공장운영시스템 점검 및 공장가동까지의 기간은 현지 인력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그 동안은 실체가 없는 이론교육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는 실체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인 계획표를 만들어 단기간 내에 현지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공장운영시스템 점검은 제조, 품질, 구매, 전산, 판매 등 부문별로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장가동은 제품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3-5. 해외투자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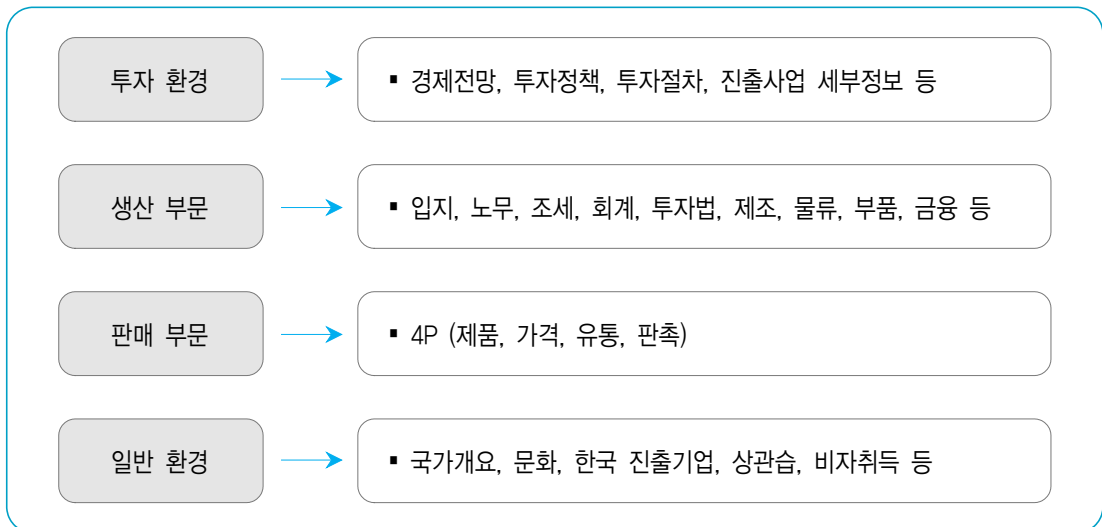
- 해외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투자정보 조사·사업계획 수립·사업타당성 분석」의 사이클을 거침. 그러나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기업도 한 번의 사이클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적게는 몇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에 달하는 사이클을 거쳐 투자를 결정함. 그 만큼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투자정보 조사는 공개 자료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이 직접 수행하거나 KOTRA와 같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 투자정보 조사가 끝나면 조사내용을 반영하고 회사의 역량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 제조업 투자 시 「先 판로 확보, 後 투자」의 원칙이 중요. 판로확보 없이 투자하여 공장가동이 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음
-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타당성 분석이 필요.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며, 보통 3개년 내지 5개년까지는 검토가 필요. 해외투자 기준 (수익률 몇 %, 투자회수기간 몇 년, 부채비율 몇 % 등)을 수립하여 기준에 충족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음.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은 보통 회사 내 재무관리 부서가 중심이 되어 검토함



투자정보 조사항목

- 정보조사는 보통 「투자환경, 공장부문, 판매부문, 일반환경」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짐
 - 현지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면밀히 조사함.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가 클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정부와 추가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인센티브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 공장의 입지는 내수시장 진출 또는 우회수출 거점 등의 투자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지별 인센티브 차이, 내수시장 접근성, 항구 접근성, 도로사정 등을 조사하여 종합평가 후 최적의 입지를 결정해야 함
 - 판매부문은 4P(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판촉)를 기준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제조업은 특성상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투자목적이 내수시장 판매인 경우 도입되는 제품은 필히 현지의 문화와 환경에 부합하도록 시장조사 및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야 함

- 해외법인 진출은 해외에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여 회사 사업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정리해야 함. 조사할 항목은 투자 업종과 품목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투자정보 조사방법

- 해외투자 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설명 방법을 알더라도 정보입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 가능
 - 국내(KOTRA) 및 현지 투자유치기관(투자청)의 공개자료와 사례집 입수 및 전문가 상담
 - 해외투자정보 제공 웹사이트(www.ois.go.kr)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KOTRA가 고객 맞춤형으로 정보를 조사해주는 OPS(Overseas Investment Premium Service,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 (KOTRA 해외투자상담팀 02-3460-7481)
 - 각 국가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웹사이트 조회 및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정보 입수
 -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도 있음. 현지 진출기업정보는 KOTRA 무역투자정보 웹사이트(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입수 가능
 - 기본정보는 공개자료나 KOTRA의 맞춤조사를 이용하더라도 현지 방문을 통해 관련업종 종사자나 고객과 인터뷰를 하고, 시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현장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KOTRA 등에서 실시하는 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진출연수, 투자사절단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익함

| 조사 방법 | 내 용 | 장 소 |
|----------|---|---------|
| 공개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 간행물, 투자정보 (KOTRA, 수출입은행 등) - 현지에서 발간한 간행물 및 투자 정보 (투자청 등) - 정보조사 기관 및 미디어 (TV, 신문 등) - 해외진출 성공 및 실패기업 사례집 조사 | 국내 · 해외 |
| 조사의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KOTRA, 컨설팅 기관 등) | 국내 · 해외 |
| 현지기업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업체 직원과의 접촉을 통한 조사 | 해외 |
| 개별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종의 소비자와 직접 인터뷰하여 정보 수집 | 해외 |
| 현장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의 경쟁사 제품의 판매상황 및 고객반응에 대하여 직접 관찰 조사 | 해외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필요한 조사항목의 정리가 용이해지며 조사 및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여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 재무제표의 이해도를 높이면 조사항목 정리가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함
- 재무제표 및 조사항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와 시설이자 및 조사항목의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음

[손익계산서, 예]

| 검토 사항 | 사업계획 수립 | 항 목 | 비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과 기업의 부담비용 - 건축법규 및 건축인허가 사항 - 건축회사 및 건축기간 - 토지·건축 직접투자비 및 건물임차비 -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고정자산 - 제조설비 수입규제 여부 - 설비별 수입관세 및 면세여부 - 일부 제조공정의 아웃소싱 가능성 - 고정자산(토지, 건물, 설비 등) 감가 상각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건물 투자여부 (직접투자·임차) ▷ 공장 Lay-out ▷ 생산능력 및 라인수 ▷ 자체 생산 공정 및 아웃소싱 공정 | 매 출 액 | 100% |
| | | 제 조 원 가 | 7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금융 이용 편의성 - 은행 거래조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조건, 차입액, 상환조건, 차입이자(단기, 장기) 등 - 현지·외국은행간 차입조건 비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차입규모 ▷ 거래은행 결정 | 재 료 비 | 55% |
| | | 노 무 비 | 7% |
| 투자금액 상각기준 적용 | | 제 조 경 비 | 12% |
| | | ◆ 감가상각비 | 7% |
| | | ◆ 기 타 경 비 | 5% |
| | | 매 출 이 익 | 26% |
| | | 판 매 관 리 비 | 13% |
| | | 영 업 이 익 | 13% |
| | | 영 업 외 비 용 | 8% |
| 차입금 이자적용 | | 운 전 이 자 | 2% |
| | | ◆ 시 설 이 자 | 5% |
| | | ◆ 기 타 | 1% |
| | | 총 원 가 | 95% |
| | | 경 상 이 익 | 5% |

※ 시설이자는 토지, 건물, 설비 등의 고정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함.

-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와 시설이자는 고정자산 투자에 따라 원가에 반영할 항목임. 이 항목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투자비를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원가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음
 - 국가별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준을 조사해야 함.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로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정률법(定率法), 급수법(級數法), 생산액비례법(生産額比例法) 등이 있으며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쓰임
 -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며, 초기에 손실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 감가상각을 무리하게 빨리 할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비용계상의 필요성이 없어 유리함
 -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이 크게 이루어지며, 신규 자산일 경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 유리하고 비용화를 앞당겨 세금부담을 이연시키게 되므로 그만큼 비용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공장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는 제조할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까운 장래에 해당 요소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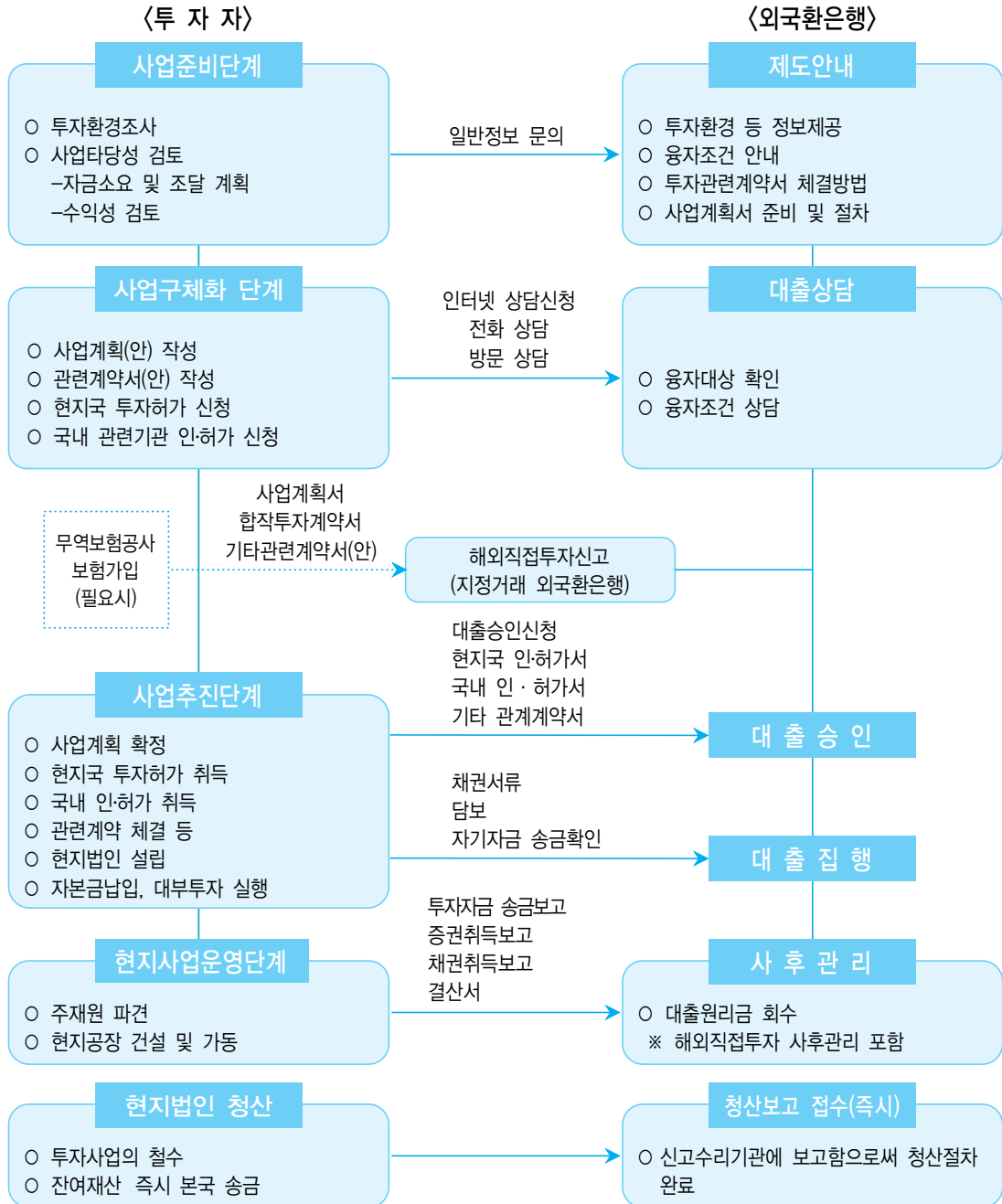
| 결정 요소 | 효과 |
|--------------|-----------------------------------|
| 토지 가격 | 지역별 순수지가와 인센티브 비교로 토지가 절감 |
| 원료 부품 구매 용이성 | 재료비 절감 및 납기 단축 용이 |
| 시장 접근 용이성 |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 용이 |
| 노동력 조달 용이성 | 고급인력 확보,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인건비 절감 |
| 동력 조달 용이성 | 원활한 제조활동 및 유틸리티 비용 절감 |
| 관련 산업 집적도 | 시너지 효과 제고 |
| 환경 규제 | 소음, 대기오염, 폐수 등의 저감, 정화장치 투자 및 운영비 |

- 중국, 베트남 등 일부국가는 영구적인 토지소유권 보장 대신 일정기간의 토지 사용권만 보장. 토지소유권 취득 시 감가상각에 반영을 하지 않는 반면 토지 사용권 취득 시에는 감가상각에 반영함
- 공장건물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 건축법, 소방법, 현지 업체 시공 능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투자범위 및 시공업체를 결정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토지와 공장건물은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임차 시 비용을 비교하고 향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할 것인지 또는 임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기계장치 및 금형 등의 투자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현지의 제조 인프라임.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직접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면 직접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 기계장치 및 금형 등을 현지에서 구입하면 운반비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지구입 가능성을 조사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수입 시 관세면제 등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내용을 조사하거나 현지 관련기관과 직접 협상을 해보는 방법이 있음
 - 투자규모와 회사의 운전자금 규모가 결정되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함. 투자금은 전액 자기자본 또는 일부 타인자본을 통해 조달함. 타인 자본의 차입 시에는 금리, 차입규모, 상환 등 차입조건이 유리한 금융권이 어디인지를 조사해야 함
 -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원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까지 자금이 1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 즉,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이어서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제조를 하면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조 후에 외상으로 판매(여신기일)된 뒤 일정기간 이후 판매대금이 회수되므로 자금조달이 필요하게 됨
 - 진출 초기에 현지은행을 통해 차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그것도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기업인 경우는 한국에서 진출한 현지 국내은행이나 한국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단계별 해외진출 Flow Chart (예시)



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해외투자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분

1) 신규 사업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 사업 신고에 준함

※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여부 확인

- 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별 사전신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 해외건설업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업신고(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2) 내용변경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 포함)

3) 회수신고

- 대부투자 원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4) 청산보고(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 현지법인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을 회수한 후

나. 해외직접투자 목적물(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 통화 등 지급수단
- 현지법인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자본재)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이의 이용에 관한 권리
-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 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대외 채권
- 주식
-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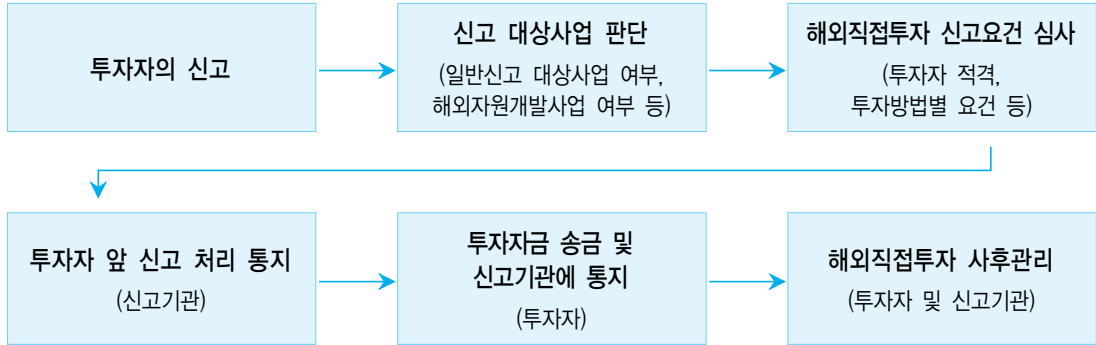
다. 신규신고 대상

- 외화증권 취득
- 외화대부채권 취득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및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

라.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시
-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시
- 한국은행총재
 -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3항)
- 외국환은행장(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여신최다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그 밖의 경우

마.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서류(외국환거래법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 공통제출서류 ┃

- 해외직접투자신고서(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추가제출서류 ┃

-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시 당해 사업계약서
- 현물투자시 현물투자명세표 2부
- 주식을 통한 직접투자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 취득예정인 현직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받기 위한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 해외직접투자 관련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 1부

■ 보완서류 ■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및 신용 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 농수축산물인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국토해양부장관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1) 보고서 등의 제출

-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청산보고서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 기타신고 : 신고기관의 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외국환거래 관련 제재

가) 외국환거래법

-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 기한 경과 후 이행 시 기획재정부 장관 경고(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나) 신용정보관리규약

- 금융기관의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 :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후 5년간 기록보존

다)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에 대한 제재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5호)

아. 세무신고(Chapter III. 조세제도 관련항목 참고)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가) 제출서류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지사 명세서

나) 서류 제출 규정 법령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문의처 |

-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주채권은행
- 주 채무계열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체는 여신최다은행
-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거주자가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

4-2. 비금융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가. 신고대상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 해외지사의 구분(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 (종교단체포함)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

나. 신고기관

-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다. 설치자격요건

-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제1호)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 불 이상인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제2호)
 - 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 불 이상인 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비영리단체 포함)

라. 해외지사의 폐쇄 등(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제1항, 제2항)

-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하여야 함
- 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 아래의 사후관리 관련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 설치행위 완료내용 보고 :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내용 보고 :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어명세표 포함) 제출 :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4-3.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상 업종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투자로 구분

-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 및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 참조
- ▶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가. 은행

1) 은행법에 의한 사후보고

- 은행이 해외에 자회사, 지점, 사무소를 신설 또는 폐쇄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
(은행법 제47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제26조의2)
- 다만, 자회사 및 지점의 신설시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은행의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
 -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은행의 업무(부수업무, 겸영업무 포함)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수리 절차

- 금융위 신고수리(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외화경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제출)

- 보고사항(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
 -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해외자회사를 설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고서 등 필요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3) 해외지사(지점·사무소) 형태의 해외점포

- 금감원 신고(수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
 - 지사 설치에 따른 외화소요경비 등을 첨부하여 금감원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 (지점)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외화경비명세서 → 신고수리
 - ☞ (사무소) 업무활동계획서, 외화경비명세서 → 신고

나. 증권·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 등

1) 권역별 감독법규에 따른 사전승인(신고) 또는 사후보고 절차

- 금융투자 권역(증권, 자산운용) : 해외점포 설치 후 사후보고(자본시장법 제418조)
- 보험 : 자회사 소유 관련 사전승인 또는 신고(보험업법 제115조), 해외지사 설치 시 사후보고 (보험업법 제130조)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수리 절차

- 금융위(또는 금감원) 신고수리(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
 - 신규 해외직접투자 :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 해외지점 개설 :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금감원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 사후설치 보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
 -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해외자회사를 설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고서 등 필요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문 의 처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 전화 (02)2156-9782, 팩스 (02)2156-9789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시장팀 : 전화 (02)3145-7927, 팩스 (02)3145-7949
- ※ 홈페이지 : www.fnhubkorea.kr

4-4. 해외건설업 신고

해외에서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신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함(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0조)

가.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 신고자격 :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해외공사수주및개발업 등 관련 업종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나.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및 인수신고

- 신고기한 :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벌칙 및 과태료

-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 신규신고를 한 자 및 신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해외건설촉진법 제39조)
- 해외건설업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의 과태료(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또는 인수신고를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의 과태료(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 전화 (02)3406-1069 팩스 (02)3406-1123
※ 홈페이지 : <http://yes.icak.or.kr>(해외건설e정보시스템-해외건설업신고, 해외공사상황보고)

4-5.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수출절차 간소화 및 재반입 시 세제혜택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해외건설협회에서 확인(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가. 대상 물품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 기자재
- 중고용품을 포함한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식료품 등

나. 대상 업체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수주활동상황보고 및 계약체결결과보고를 이행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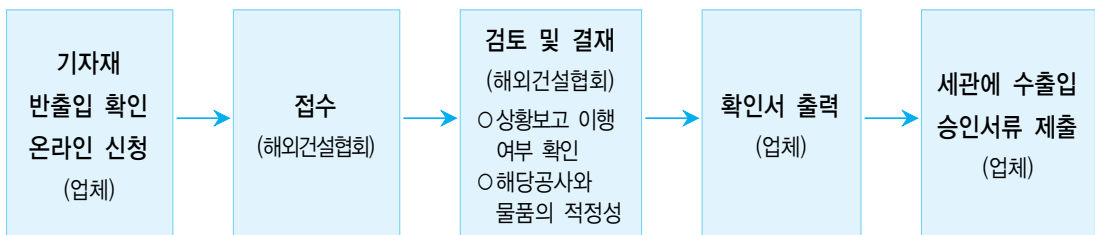
다. 검토 기준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자재인지의 여부 및 적정여부
- 국내 재반입 여부
- 반출입 기자재의 국내 수요 균형 등을 고려한 정부시책과의 일치여부

라. 확인 중지

-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 기자재의 용도가 해당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 구비서류 및 내용의 불비

마. 확인신고 절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실 : 전화 (02)3406-1141
- ※ 홈페이지 : <http://yes.icak.or.kr>

4-6. 해외(광물·농축산물·산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 제8조)

가.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

- 신고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신고서류 :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법인인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광물자원 : 금광·은광·동광·아연광 등 총 50 광종
 - 해외농축산물 : 밀·옥수수·콩·면화 등
 - 산림자원 : 조림(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팜유·자트로파 등), 벌채, 임산물 가공업 등 산림 관련 사업

나.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

- 신고사항 : 해외자원·농업개발의 방법, 투자규모 및 투자비용, 해외자원농업개발사업 계약의 상대방 변경 사항
- 신고서류 :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변경사유서, 관련 서류

다.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공동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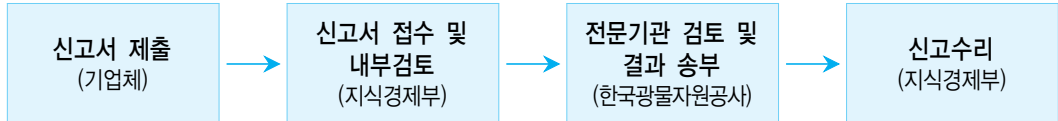
- 신고사항 : 동일한 해외자원·농업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공동신고인 명부 첨부)

라. 벌칙 및 과태료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자원을 개발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해외 자원개발사업법 제24조 및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6조)
-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5조 및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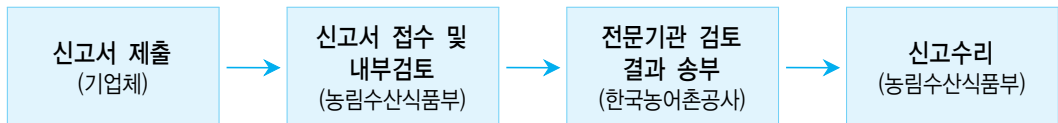
마. 사업별 신고절차

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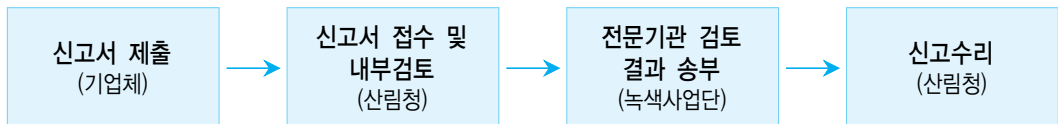


※ 신고서 제출 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운영하는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 <http://www.koredis.or.kr/web/index.jsp> > 해외자원개발 > 자원개발신청 > 광물자원분야,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함

2)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



3)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문의처

| | |
|----------------------|---|
|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 전화 (02)2110-5449, 팩스 (02)6488-0590 ※ 홈페이지 : www.mke.go.kr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2)840-3528, 팩스 (02)840-5888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 해외농업 개발사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 전화 (02)500-1876, 팩스 (02)504-6659 ※ 홈페이지 : www.mifaff.go.kr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 전화 (031)420-3290, 팩스 (031)423-8953 ※ 홈페이지 : www.oads.or.kr |
|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전화 (042)481-4089, 팩스 (042)481-8884 ※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산림자원→해외산림자원개발) |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5-1.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는 달리 국경을 벗어나 타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법제도나 문화, 언어, 경제여건, 산업발달 정도 등과 같은 투자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현지정보 입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국내투자에 비하여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음
 - 일단 해외투자가 결정되고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투자계획을 쉽사리 취소하기도 힘들고 취소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된 내용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실행 이전에 투자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함
- 해외투자는 계획단계에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조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투자결정을 내려야 함.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음
- 투자를 실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일정이 지연되고 심지어는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이라면 문제 발생이 적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해결책을 찾아 정상화하기가 비교적 용이함

5-2.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 투자정보 조사 시에는 조사항목이 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조사해야 함. 다음의 체크리스트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업 진출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항목은 투자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함

- 투자환경
 - 투자할 국가 및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목적일 것임. 즉 특정 국가의 내수시장 진출확대 또는 우회수출거점으로 활용이 목적인지 아니면 고급기술 습득 또는 원가절감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서 최적의 국가를 선정해야 함
 - 투자환경 조사단계에서는 투자목적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지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 외국인에 대한 투자정책과 지원, 투자입지로서의 적합성 등을 조사함

- ※ 현지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과거 ·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 전망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 현지의 정부기관이나 국제통화기금(www.imf.org),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 아시아개발은행(www.adb.org)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의 국가신용도 평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무역투자 관련 정보는 KOTRA 무역투자정보 웹사이트(www.globalwindow.org)를 이용

- 진출사업 환경
 - 이 부분은 주로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는 내용임. 경제적 성장성이 있다 하여 투자할 대상 산업 · 품목도 동반하여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 현지 사업경험이 없을 때 현지사정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임. 토종 현지기업과 외국 진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음
 - 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대상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를 통한 조사,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사례집을 통한 조사 방법 등이 있음
 - 현지 업체와의 미팅은 사전 안면이 없는 경우는 쉽지 않으므로 KOTRA 해외무역관 또는 현지 투자청 등을 통해 미팅 주선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음

- 진출사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판매 및 매출에 대한 계수 목표를 수립. 판매목표는 투자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상황 및 회사의 역량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무리한 판매목표 수립 및 투자로 인해 회사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판매부서와 제조부서가 다르므로 판매부서는 의욕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제조부서는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조정을 잘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함

○ 판매

- 판매는 4P(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판촉)를 기준으로 조사. 최종소비자를 위한 완제품 판매와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판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품은 소비자들의 성향, 관습 및 구매 선호도를 조사하고 히트상품을 분석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개발·생산해야 함. 국내에서 히트 제품이라 하여 현지에서도 손쉽게 팔리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도입하였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제품을 외관, 기능, 성능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니즈, 사용 환경, 제품규격 조사 등이 필요함

○ 유통

- 유통 구조는 국내의 예를 보더라도 전자제품의 경우 직영점, 전문점,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판매, 방문판매 등 다양하며 유통마다 마진과 여신기한(외상판매)·반품조건도 다르므로 정확히 분석하여 적합한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야 함
 - 전체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인력과 자금 등 투자가 많이 수반되므로 자기 기업에 적합한 유통망을 선택해야 함.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도 전 유통망에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전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 또한 없음
- 유통구조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회사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제품의 모델별 가격구조(Cost Structure)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음
 - 가격구조(Cost Structure)란 특정모델의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음. 즉 제품의 브랜드 및 가치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유통마진 및 각종 세금을 프로세스별로 정리하여 회사가 유통에 판매하는 가격(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임

○ 물류

- 대형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물류비의 부담이 크며 물류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운송회사, 운송수단,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 운송횟수 등이 있음. 각 요소별로 조사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함
 - 물류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공장입지임. 입지의 선정은 내수 판매, 우회수출 또는 내수·수출 병행이냐에 따라 달라짐. 내수는 시장에 근접한 곳, 수출은 항구에 근접한 곳, 병행은 규모가 큰 쪽을 우선한 입지선정이 되어야 함. 그러나 입지를 선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물류거리 외에 지가, 부품조달, 인력 및 유틸리티 공급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장 효과가 큰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함
 - 공장을 떠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트럭, 컨테이너, 항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으며 어느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는 수출이냐 내수판매냐, 제품이 대형이냐 소형이냐, 고가품이냐 저가품이냐에 따라 달라짐
 - 운송수단 중 특히 트럭의 경우는 국가별로 적재부하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운송비는 운송거리, 운송횟수, 운송방법,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도로사정을 조사하는 것은 운송할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임. 도로 사정이 나쁜 경우는 제품에 파손 등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포장을 보강하여 대비해야 함
- 물류창고는 거래처에 직납이 가능하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물류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투자 또는 제 3자 물류창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 공장입지

- 공장입지는 산업단지나 지역별로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입지는 입지선정 요소를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적지를 결정함
- 각 입지별로 직접투자 이외에 임차해서 사용할 공장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공장건축 후 임대를 제공하는 공단 또는 업체가 있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지는 경제성 평가 후 결정함

○ 투자

- 여기서 투자란 토지, 건물, 설비, 계측장비, 금형 등의 고정자산을 말하며 투자비는 앞쪽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조사하고 결정. 투자비 계획 수립 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는 반드시 포함시켜 제품 품질 저하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부품조달

- 제조업의 원가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라고 보면 됨. 따라서 원가를 낮추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부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임
- 부품구매의 3대 원칙은 가격(Cost), 품질(Quality), 납기(Delivery)임. 이 3대 원칙에 따라 최상의 조건이 된다면 글로벌 소싱도 가능함
 - 과거에는 부품현지화비율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지만 요즘은 그 중요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음. 진출한 국가에서 주변국가로 역내 수출 시에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역내 자재(Local Contents)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함
- 해외 부품업체 인프라는 국내와 비교 시 열악한 경우가 많음. 국내에서는 핵심부품 이외의 대부분의 부품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직접 부품을 제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렇게 해외에서는 부품별로 국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없으므로 현지 부품제조 인프라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함
- 부품별 수입관세를 조사하려면 우선 HS Code(신국제통일상품분류기호)를 알아야 함. HS Code는 무역통계 및 관세분류의 목적상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보통은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터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이고 나머지 뒤의 단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
 - 관세율은 현지국가의 관세청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관세율 책자를 조회하면 됨
 - KOTRA 무역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세계 주요국가의 관세율 FAX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현지 HS Code를 몰라도 우리나라의 HS Code 6단위로 문의할 수 있음 (KOTRA 무역자료실 문의전화: 02-9460-7405, www.globalwindow.org)
 - 수출용으로 부품을 수입 시 관세납부 후 환급을 받거나 수출용으로 신고하여 납부를 유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함

○ 노무

- 제조업의 해외투자 요인 중 인건비, 노사관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무 분야도 중요. 따라서 현지의 노동 관련법규 및 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법정 근로시간, 노동조합, 직원채용 및 해고, 산업 및 교대근무, 최저임금, 정규 및 비정규인력 운영, 각종 휴가·휴직제도 등에 대해 조사 필요함
- 전문·고급인력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는 공장입지가 인력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함. 인력채용 방법은 광고나 소개,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할 수도 있고 대학 또는 인력전문업체의 알선서비스 또는 KOTRA의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Contact Korea(www.contactkorea.go.kr)를 통해 물색하는 방법이 있음

- 산업인력 발굴의 경우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도 국내 또는 현지에 있는 산업인력을 현지법인에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인건비는 가급적 직급별로 과거 3~4년간 구체적인 비용 및 상승률을 조사하여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보고 퇴직연금,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 13th month pay 등 복지제도의 종류와 산출방법 등을 조사하여 총인건비에 반영해야 함
-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인의 문화와 특성 등을 조사해야 함
 - 업무 숙련도, 결근율, 이직성향, 초과근무 선호도, 종교적 행사, 생활관습 등

○ 제조

- 해외에서 생산방식은 한국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음. 노동력 확보용이 정도, 인건비, 전력 등 투자여건과 투자 전략에 따라 자동화 정도를 결정 함. 한국에서는 외주화했던 공정도 사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종업체의 생산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여건 상 외주생산이 어렵고 사내에서도 생산이 어려운 공정이나 부품이 있는 경우는 국내 관련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함
 - 현지생산 시 한국에서 과거에 생산하던 방식을 더 유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과거에 사용되던 기술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은 꼭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공업용수, 가스 등의 유틸리티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은 얼마 인가를 조사하고 입지 선정 시 반영함
 - 특히 전기사정은 공장가동에 직결되므로 비상 발전기 투자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진출해야 함. 또한 전기는 공장가동 뿐만 아니라 전기로 작동되는 제품인 경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맞춰 설계된 제품을 도입해야 함
- 투자가 많이 수반되는 공정은 가동률을 높여서 투자효율을 최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여 생산라인 운영계획을 수립함

○ 운전자금

- 운전자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구매해서 생산 후에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할 때까지 소요기간(운전주기)을 조사하고, 부품의 외상구매가 가능한지와 제품의 외상판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인지를 조사함
 - 상기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전자금과 고정자산 투자금액을 합산하면 회사 전체의 소요자금이 되며 이에 맞춰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면 됨

○ 금융

- 투자규모와 필요한 운전자금 규모가 결정되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함. 투자금은 전액 자기자본 또는 일부 타인자본을 통해 조달하는데 타인자본은 대개 금융권에서 차입. 차입 시 금리, 차입규모, 상환 등 조건이 유리한 금융권이 어디인지를 조사해야 함
 - 투자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유희설비 또는 라인전체를 이전하여 활용 가능. 현지에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됨

○ 조세제도

- 조세제도는 현지의 조세법을 참고하거나 현지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하며 세금의 종류(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업원 사회보장세 등), 세율, 납세방법, 과실 송금 보장, 한국과 현지국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 협정 등)을 조사해야 함

※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한 현지세법상 세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세율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양국 간 체결된 이중 과세방지협정은 국세청(www.nts.go.kr)에서 그리고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법인형태

- 법인은 형태별 장단점, 설립·신고절차, 설립비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법인의 형태는 세금의 경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음
 - 국내 신고절차와 현지법인 설립절차 및 비용은 OIS(www.ois.go.kr)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현지 투자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 회계

- 현지 회계사를 통해 회계기준 및 회계연도 등 관련 내용 상담 필요함

○ 일반 환경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인구수 및 인구구성, 상주 외국인 규모, 한국기업 진출현황, 진출업체의 성공·실패사례,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비즈니스 에티켓, 비자 취득절차 등을 조사함
 - 현지 거주를 위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주재원들의 사례 및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시장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성분석(3~5年) |
| 투자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국의 지리적 이점 - 사업여건 및 경제동향 - 경제성장률 및 환율 전망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 국가 투자위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배경, 타당성 검토 | |
| 진출 사업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장규모 및 향후 성장전망 - 지역별 시장규모 - 과거 시장가 변동추이 및 전망 - 시장경쟁 정도 - 동종사업 참여업체의 사업현황 - 외국 업체 진출사례 - 연관 산업 발달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배경,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 (시장점유율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및 매출계획 수립 |
| 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성향, 관습, 구매 선호도 - 상위권 동종업체 마케팅 전략 ▷4P(제품, 가격, 유통, 판촉) - 히트상품 조사 및 분석 - 제품규제(규격, 인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P(제품, 유통, 판촉, 가격) 계획 수립 ▷제품 : 현지 특화 제품 도입계획 ▷가격 : 경쟁사와 가격 포지셔닝 ▷유통 : 진출유통 및 유통마진 계획 ▷판촉 : 경쟁사와 차별화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별 판가 산출 - 광고·판촉비 산출 |
| 유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 - 유통채널별 특성 및 유통마진 - 유통채널별 매출채권 회수(여신기한) - 판가결정 체계(Cost Structure) | | |
| 물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 외국인 투자 규제 여부 - 주요 산업단지와 주력 시장간 또는 항구간 물류 ▷도로사정, 운송 수단·거리·기간·비용, 운송횟수, 운송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창고 운영계획 수립(제품·부품) - 공장입지와 시장접근성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산출(제품·부품)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시장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성분석(3~5년) |
| 공장 입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별 투자 인센티브 - 산업단지별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업체 및 관련 산업 업체 - 산업단지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등 에너지, 통신, 용수, 도로·시장 접근성, 지반 견고성, 인력수급 - 토지구입가 및 공장건물 임차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입지 결정 | |
|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과 기업의 부담비용 - 건축법규 및 건축인허가 사항 - 건축회사 및 건축기간 - 토지·건축 직접투자비 및 건물 임차비 -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고정자산 - 제조설비 수입규제 여부 - 설비별 수입관세 및 면세여부 - 일부 제조공정의 아웃소싱 가능성 - 고정자산 감가상각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건물 투자여부 (직접투자·임차) ▷ 공장 Lay-out ▷ 생산능력 및 라인수 ▷ 자체 생산 공정 및 아웃소싱 공정 - 공장가동 목표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및 감가상각비 산출 - 직접투자비와 임차비 비교 분석 - 고정자산 유지보수 비용 산출 |
| 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별 현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생산능력(Capa), 품질수준, 납기 - 부품별 수입관세 및 수출시 환급 여부 - 수입부품의 구입처(글로벌소싱) - 소싱국가별 운송 기간, 비용, 운송횟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수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현지화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산출 - 부품현지화율 산출 |
| 노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근로시간, 노동조합, 직원 채용 및 해고, 잔업·교대근무 가능성 및 급여, 정규·비정규 인력운영 - 인력확보 용이성 및 채용방법 - 인력의 자질 및 노동관행 - 직급별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 등 - 현지인 강제 고용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인력규모 - 인력 수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원 파견 ▷ 정규직 및 계약직 운영 ▷ 핵심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산출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시장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성분석(3~5年) |
| 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업체 생산방식 - 유틸리티 수급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공업용수, 가스 등 - 생산소모품 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방식, 생산 공정 설계 교대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틸리티 소요량 및 금액 ▷소모품비 등 |
| 운전 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회수기간(제품) - 매입채무 지불기한(부품) - 제품 제조기간 및 부품 구매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조달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산출 - 운전자금 회전주기 산출 |
| 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금융 이용 편의성 - 은행 거래조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조건, 차입액, 상환조건, 차입이자(장·단기) 등 - 현지은행-외국은행간 차입조건 비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차입(장·단기) 규모 ▷거래은행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및 차입금 규모 산출 - 지급이자 산출 |
| 조세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종류, 세율 및 납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과실송금의 보장 -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세면제 협정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세방안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이익 및 순이익 산출 - 수익률 분석 |
| 법인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형태, 설립절차, 비용, 해당관청 - 법인형태별 장단점 분석 - 세제, 설립용이성 등 - 국내 법인설립 신고절차 - 법인 철수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형태 결정 | |
| 일반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인구구성, 상주외국인 규모 - 한국기업 진출현황 - 진출업체의 성공 및 실패사례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비즈니스 에티켓 - 비자 취득절차 등 회계·회계연도 및 회계기준 | | |

5-3. 해외투자 유의사항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사업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진출이나 현지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투자진출이나 현지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함
- ① 사업계획 수립에 충실하자
 - 법인설립 및 공장건설 절차 등 행정적인 절차는 투자가 결정되면 대행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투자를 위한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에 충실하여 바른 투자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먼저 판매망을 확보한 후 투자하자
 - 판로개척과 투자를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현지에 투자하면 물건을 사겠다는 현지 바이어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완제품 판매 또는 조립식(Knockdown) 부품의 현지 단순조립을 통해 판로를 우선 확보하고 판매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권함
- ③ 계약내용은 꼼꼼히 따져 보자
 - 투자와 수반되는 계약(합작계약, 기술지원계약, 판매계약 등)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특히 기술정보 사용 및 판매의 독점권 부여 여부는 향후 현지에서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함
- ④ 동반진출 시에도 다른 거래선 개척을 소홀히 하지 말자
 -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업체와 동반진출 시에도 동반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현지 판매망을 개척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유용할 것임
- ⑤ 공장은 먼저 시스템을 구축한 후 가동하자
 -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제조, 품질, 구매, 전산, 판매 등 부문별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후 합격 시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사전 정해진 가동 일정을 맞추느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가동하고 보자는 식의 공장운영은 나중에 품질문제 및 납기차질로 더 큰 경영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⑥ 본사와 현지법인 간 거래기준을 만들고 준수하자

- 공장가동 초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본사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 그러나 아무런 기준이 없이 퍼주기식 지원은 현지법인의 자생력 확보에 역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에 이전가격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함

⑦ 주재인력은 어학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 현지공장에 주재원 파견 시 어학과 업무능력이 모두 뛰어난 적임자를 찾기란 쉽지 않음.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주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에 탁월하고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학능력만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사전에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⑧ 현지문화와 조화를 이루자

-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 특히 현지근로자들에게 한국식 근로문화를 강요하다가는 높은 이직률과 노동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됨



해외투자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2. 상담 및 컨설팅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4. 해외 법인(공장) 설립 지원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7. 해외 건설·플랜트·환경·물류기업 지원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9. 노무관리·해외취업 지원
10. 법률 지원
11. 청산 및 해외환류기업 지원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1-1.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OIS(Overseas-Investment Information System)란 31개 해외진출 지원기관별 정보를 통합해 해외진출 및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국가별·산업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무료 포털 서비스

가. 주요 제공 서비스

- 최신 해외투자소식, 해외투자절차, 국가별 해외투자정보
- 해외투자 전문가 칼럼, 전문자료, OIS 커뮤니티
- 해외진출 한국기업 검색서비스, 해외투자통계
- 해외투자 상담서비스 (Q&A, FAQ)
- 有대리의 즐거운 해외투자 이야기, OIS 해외투자 뉴스레터

나. 정보제공 유관기관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해외건설협회 등 31개의 해외진출 지원 부처 및 기관

다. 해외진출 한국기업 목록 검색 서비스

- 전 세계 83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10,500개사) 목록 및 상세내용을 검색 제공

라. 해외투자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행사 안내

- 매달 진행되는 해외투자 설명회 및 세미나 정보를 제공
-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해외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트위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 전화 (02)2110-4861, 팩스 (02)504-4816
※ 홈페이지 : www.mke.go.kr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6, 팩스 (02)3460-7950
※ 홈페이지 : www.kotra.or.kr

1-2.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해외 투자진출 설명회는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을 돕기 위해 유망시장의 투자환경, 투자진출 절차 및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현지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기 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생생한 정보를 전달

가. 설명회 일정 및 세부정보

-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의 「행사안내」란을 통해 확인 가능

나. 설명회 개최 주요 기관

| 기관명 | 주요 설명회 |
|----------|---|
| KOTRA | 세계시장 진출 전략, 주요국 진출전략, 유망프로젝트, 해외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등 |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 설명회 |
| 한국무역보험공사 | 중장기성 수출보험 설명회,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명회, 해외건설 자금조달방안 설명회 |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진출 유망국가의 정치·경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지역연구회 |
| 한국무역협회 | 해외진출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
| 대한상공회의소 | 주요 지역별 투자설명회 |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경제협력위원회 |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8, 팩스 (02)3460-7950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 전화 (02)769-6856, 팩스 (02)783-6956
-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개발부 : 전화 (02)399-6824, 팩스 (02)399-6577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분석팀 : 전화 (02)3779-6668, 팩스 (02)3779-6770
-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지원본부 : 전화 (02)6000-5428, 팩스 (02)6000-530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 전화 (02)6050-3545, 팩스 (02)6050-3910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 : 전화 (02)3771-0347, 팩스 (02)3771-0110

2. 상담 및 컨설팅

2-1. 해외진출기업 종합 상담 및 컨설팅 지원

KOTRA 해외투자상담팀에서는 해외투자 초기단계의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위하여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투자상담센터 운영, 유선 또는 내방상담 실시(무료)

※ 내방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 국가별 상담

| 지역·국가 | 전화 | |
|-------------------------|------------------------|-------|
| 중국 및 중화권 | 대표전화 1600-7119 (#3) | 내선 1번 |
| 아세안 10개국 | | 내선 2번 |
| 북미, 중남미, 유럽, CIS | | 내선 3번 |
|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일반 상담 | | 내선 4번 |

○ 분야별 상담

| 분야 | 상담 내용 | 상담 수행기관 | 상담전화(02) |
|----------|----------------------------------|----------------------|--------------|
| 금융 | 해외투자 정책금융 | 수출입은행 | 02-3460-7472 |
| | 해외투자 상업금융 | 외환은행 | 02-3460-7478 |
| | 해외투자 보험·보증 | 무역보험공사 | 02-3460-7477 |
| 조세 | 국내·외 조세 제도 | 국세청 | 02-3460-7480 |
| 법률 | 중국법률 자문 (매주 월, 수 13:00~17:00) | 법무법인 광장 (중국인 변호사) | 02-3460-7548 |
| 지원 제도 | 해외투자 정책 | 지식경제부 | 02-3460-7475 |
| | 중소기업지원제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3460-7476 |

2-2. 해외 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OPS: Overseas Investment Premium Service)

가. 사업개요

- 해외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기업이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맞춤형 유료 서비스

| 서비스 형태 | 서비스 주요 내용 |
|-------------------------|--|
| 해외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사업환경, 법인설립, 입지정보 조사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층 조사 - 현지 출장 및 실사 지원 ※ 문의처 : 해외투자상담팀 전화 (02)3460-7481 / 팩스 (02)3460-7945 |

나. 사업가입 및 지원 절차

- ① 고객이 해외투자상담팀에 서비스 참가 신청서 제출
- ② 해외투자상담팀에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무역관과 사업진행여부 결정
- ③ 사업진행이 결정되면, 해외투자상담팀과 고객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간 및 참가비를 결정하고 협약서를 체결
- ④ 고객이 KOTRA에 참가비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 ⑤ 무역관 사업 수행 및 고객에 지원 내용 보고
- ⑥ 사업 종료 후 고객에게 2개월간 사후 지원 실시

다. 지원기간 및 수수료

- 고객과 무역관(또는 본사 담당부서)간 직접 협의하여 결정

| 문의처 |

- KOTRA 해외투자상담팀 : 전화 (02)3460-7481, 팩스 (02)3460-7945

2-3. 해외진출컨설팅센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글로벌경영체제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컨설팅센터 설치·운용을 통한 금융상담, 정보제공, 환위험 관리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내용에 따른 맞춤형 금융 및 제도 상담
- 업무분야별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정보제공 및 상담

| 구 분 | 업 무 분 야 |
|---------|---|
| 전문컨설턴트 | 수출금융, 해외투자금융, 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37개 분야 38명 |
| 해외지역전문가 | 중국, 아시아, CIS·동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5개 지역 6명 |

※ 상담분야 및 전화번호는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게시

나. 「중국진출자문센터」 설치·운영

- 아국 기업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
- 중국 각 성별 투자현황자료 발간

다. 「국제계약상담」 서비스 제공

-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및 영문계약서 문례 제공
- 기타 국제거래 관련 법률상담

라. 해외진출 관련 자료 발간

- 수은해외경제, 세계국가편람,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대외경제협력기금(ECDF)지원제도, 해외투자실무가이드, 국가별 투자정보자료 등 모든 수출입은행 발간물 제공
(세부목록은 「4. 해외진출 관련 지역별 발간물」 참조)

마. 기업 환위험 관리 컨설팅 제공(실비지원)

-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관리 지원
- 방문, 면담 등 통하여 환위험 특성 및 문제점분석, 환위험 관리방법 등 제시
- 기업의 환위험수준 진단 및 관리방안 제시

바. 기업실무자에 대한 환위험관리 개요, 환위험 해지방법 교육 실시(월1회)

| 문의처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진출컨설팅센터 : 전화 (02)3779-6861, 팩스 (02)3779-6770
- ※ 홈페이지 : www.koreaexim.go.kr 고객센터→해외진출컨설팅센터→서비스 안내

2-4. 인터넷 해외통관 지원센터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주요국가 통관정보 제공, 신고센터를 통한 통관 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 외국기관 및 유관기관 연락처 제공

가.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직접 입력(www.customs.go.kr/foreign)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해외통관지원센터”로 검색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나. 제공 정보

| 구 분 | 서비스 내용 |
|--------------|--|
| 국가별 통관정보 자료실 | - 신흥경제국(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수출입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통관환경 보고서' - 관세관 주재국(미국, 일본, 중국, 홍콩, EU, 태국, 베트남) 통관제도 설명회 자료 등 |
| 외국 관세율 | - 수출투자와 관련하여 대상국가 수출물품 관세율 정보 제공 |
| 관세관 연락처 | - 해외파견 관세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안내 |
| 외국기관 연락처 | - 관세·무역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
| 유관기관 연락처 | - 재외공관 연락처, 코트라 연락처, 외국 상공회의소 연락처 등 안내 |

다.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 안내

| 구 분 | 서비스 내용 |
|--------------------|--|
| '인터넷 해외통관 지원센터' 접수 | -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상단에 위치한 '해외통관애로신고' 메뉴에서 등록 - 접수된 통관애로사항에 대해, 1차 검토(지원센터) 및 2차 검토(업무부서) 후 회신 -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보완 요청 |
| '전화 및 전자우편' 이용 | - 해외통관애로사항은 '해외통관애로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 - 접수시 문의사항(제출자료, 접수대상 여부)은 전화 및 전자우편 이용 ※ 접수대상 제외 : 민사 분쟁(계약관련 분쟁,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등) |
| 관세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 - 미국, 일본, 중국, 홍콩, EU, 태국, 베트남 지역은 현지 관세관이 통관애로해소업무 직접지원 |

문 의 처

- 관세청 국제협력과 : 전화 (042)472-2197, 팩스 (042)485-7713
※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customs.go.kr/foreign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577-8577(해외에서 86-2-3438-5199), 팩스 1577-8578

2-5. 중국교역 투자 상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경제, 무역관련 제도, 투자환경 및 상관습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교역 및 투자관련 애로 등 유무선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가. 서비스 내용

-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상담
 - 온라인 상담 : 무역협회 중국포털 china.kita.net 의 Q/A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질문을 무역협회 중국통상지원단/북경지부/상해지부에서 실시간 확인 후 답변을 게재해 드림
 - 오프라인 상담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무국 공무원이 한국어로 대중교역 및 투자절차에 관하여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실시
(대면상담의 경우 사전에 아래의 번호로 예약을 하셔야 함)

나. 이용 시간

- 온라인 상담 : 상시
- 오프라인 상담 : 월~금요일 09:00-11:30, 13:30-17:30

다. 장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상팀(트레이드타워 46층)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상팀 : 전화 (02)6000-5346, 팩스 (02)6000-3079
※ 홈페이지 : www.kita.net, china.kita.net

2-6.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131인의 전직 주요 대기업 CEO 및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경륜과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무료 경영자문 및 교육서비스 제공

가. 대상 기업

○ 국내 중소기업(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

※ '04년 발족이후 현재('12. 5.31.)까지 4,647개 중소기업 대상 총 11,488건 경영자문 실시

나. 지원 사업

1) 온라인 경영자문

-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www.fkilsc.or.kr) 무료자문 제공
- 해외진출 관련 온라인 자문분야 : 해외진출 리스크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주재원 파견 및 현지공장 운영, 전체 시장 규모 및 향후 시장 전망, 소비자 성향, 관습, 구매 선호도, 유통구조, 부품별 현지화 가능성, 노동 관행, 동종업계 생산방식 등

2) 단기 경영자문

-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3회 미만의 무료자문 제공
- 자문분야 : 해외시장 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및 리스크 분석, 수출입 계약, 클레임 관리, 무역관리, 해외 생산기지 설립, 합작사 선정 및 계약 체결, 해외법인 운영, 해외 판매망 선정 및 대리점 운영, 해외 현지 및 프로젝트 영업 등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무료 자문

※ 여의도 일일자문 : 온라인 자문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도 무료로 자문받을 수 있음

3) 비즈니스 멘토링

- 자문위원이 중소기업의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경영애로와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6개월~1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무료자문 수행

4) 경영닥터제

- 자문위원이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닥터'가 되어 6개월 동안 CEO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문단과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의 삼각협력 체제 아래 추진

5) 「중견기업키우기」 프로그램

-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에게 최대 5년까지 중장기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

6) 1:1기업전담 멘토제

-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3회 이상 자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위원이 2년간 주치의 역할 및 A/S자문 지속 제공
- ※ 전경련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에 무료 및 실비로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 송부
- ※ 진행기업 중 우수기업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중견기업키우기'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7)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지원

-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조하여 해외법인장, 해외담당 임원을 역임한 전경련 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

8) 법무자문 서비스

- 계약서 작성, 특허등록, 수출입통관관세 환급, 회계세무실무, 근로계약노무관리 등 법무분야 중소기업들의 고충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9) 중소기업 종합경영진단

- 각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으로 진단팀을 구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전반에 걸쳐 경영 상태를 총체적으로 무료진단
- ※ 진단분야 : 경영전략, 기술/생산, 마케팅,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5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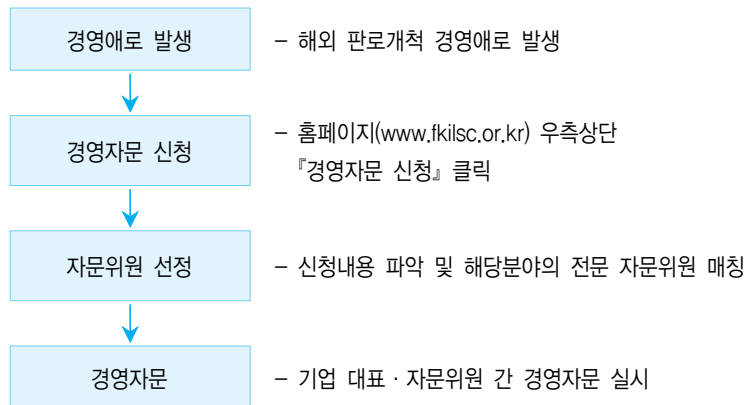
10) 맞춤형 경영교육

- 중소기업(기관)이 희망하는 주제, 일시, 장소에 맞추어, 강사(자문위원)를 매칭하여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 교육 분야 : 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 세계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본수칙, 중국진출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
- 신청 경로 : 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 → 상단 『경영자문』 → 교육신청 클릭
- ※ 회의장, 교재 등은 기업에서 준비
- ※ 강사료는 중소기업 교육 시 무료이며,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름

다. 자문분야

| | | |
|---|---|---|
| <p>01 경영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비전 / 중장기전략 • 구조조정 • 신규사업 • 사업계획 • 위기 / 위험 / 변화관리 • 구매관리 • 사내전산화 • 윤리경영 • 기술경영 | <p>02 기술 / 생산 / 품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 / 원가절감 • 생산품질관리 • 기술개발 / 기술도입 • 생산현장관리 • 에너지 / 환경 • 지적재산권관리 | <p>03 마케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전략 • 시장개척 • 해외시장 / 수출전략 • 차별화전략 • 유통 / 물류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 e비즈니스 |
| <p>04 인사 / 노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문화 / 조직혁신 • 인력양성 / 직무교육 • 인사사고 / 성과보상시스템 • 노무관리 | <p>05 자금 / 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 투자유치 • 재무관리 / 자금운영 • 회계관리 / 회계시스템구축 / IFRS • 채권관리 • 환리스크 관리 • 기업공개(IPO) / IR | <p>0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 벤처 • 중국 / 동남아 / 북미 / 남미 / 유럽 |

라. 경영자문 신청 절차



문의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단지원팀

※ 전화 (02)6336-0611, 0617, 팩스 (02)6336-0620, 홈페이지 : www.fkil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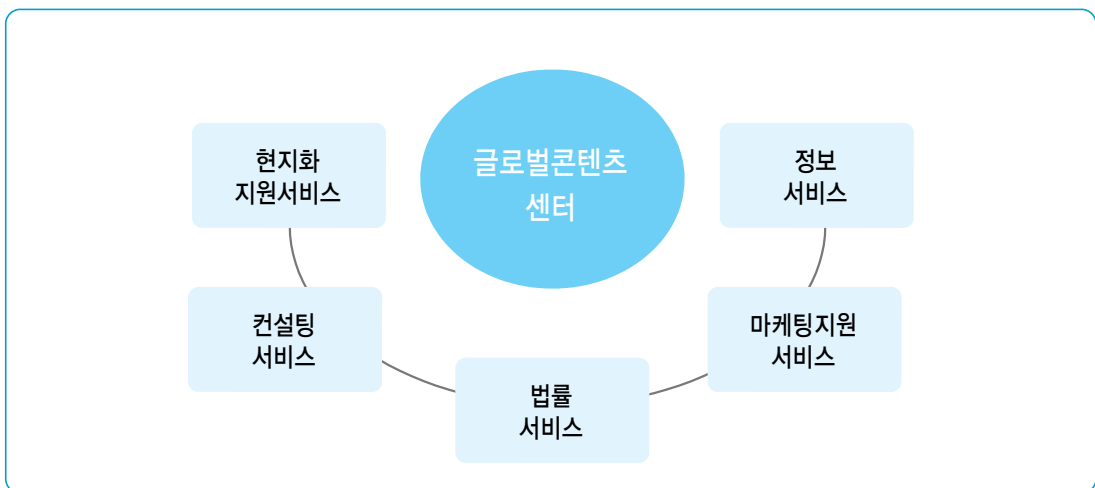
2-7. 글로벌콘텐츠센터(GCC)

■ Global Content Center

한국 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재권·마케팅 무료상담 및 현지화(번역 등), 정보조사 지원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종합 지원체계

※ 게임,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스마트콘텐츠(스마트폰·TV 등),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등 콘텐츠 전 장르

가. 글로벌콘텐츠센터 업무영역



나. 주요 지원업무

- 해외진출 분야별 컨설팅 서비스
 - 해외진출 법률/지재권 컨설팅 : 현지계약서 검토, 법률, 지적재산권, 조세, 세무금융, 국제거래/마케팅 관련 무료상담
 - 해외진출 비즈니스 컨설팅 :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조사, 해외 현지 컨설팅 지원

○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홍보/법무지원 서비스

- 현지화 재제작 지원 : 번역, 자막, 더빙 등 현지 진출을 위한 재제작 지원
- 해외진출 홍보지원 : 현지 각종 매체 광고게재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해외 광고/홍보지원
- 해외진출 법무지원 : 해외 지재권 관련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의 특허 출원·등록 및 관련 소송 지원

○ 해외진출 정보제공 서비스

-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 미국, 중국 등 콘텐츠 주요시장 및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정책/법률 관련 전략 및 네트워킹 제공 세미나 개최
- 콘텐츠 해외진출 마케터 워크숍 : 해외시장 동향 제공 및 마케팅 전략 교류
- 해외진출 성공사례 및 시장정보 조사
- 국내외 콘텐츠 전문 컨설팅 기관 및 글로벌 콘텐츠 기업정보 조사
- 콘텐츠 해외수출지원 계약매뉴얼 제공 및 해외 콘텐츠 관련 법률분쟁 사례 조사

| 문 의 처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 (02)3704-9623, 팩스 (02)3704-9629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전화 1566-1114, 팩스 (02)3153-1108
- ※ 홈페이지 : www.kocca.kr

2-8.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사업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쟁력 제고

가. 지원대상자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

- 전체 취급(판매)메뉴 중 한식메뉴(메뉴판 기준) 비율이 70% 이상인 업체

나. 지원대상 국가 : 제한 없음

다. 지원조건 : 업체당 자부담금 100만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업체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방문컨설팅 진행

라.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전략, 원가절감, 메뉴 개선개발, 레이아웃 등 한식당의 경영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분야

마. 추진방법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희망업체는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
- 국내 및 현지의 분야별 컨설턴트로 팀을 구성하여 방문컨설팅 및 사후관리 실시
- 총 방문횟수는 3회 이내로 진행

바. 추진절차

- ①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② 지원대상자 선정 ⇒ ③ 자부담금 입금(해외한식당→공사) ⇒ ④ 방문컨설팅사 모집 ⇒ ⑤ 컨설팅사 선정 ⇒ ⑥ 컨설팅 실시 ⇒ ⑦ 완료보고 ⇒ ⑧ 만족도 조사 ⇒ ⑨ 사후관리

문 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컨설팅팀 전화 (02)6300-1732
- 농림수산식품부 : 외식산업진흥팀 전화 (02)500-1962
- ※ 홈페이지 : www.at.or.kr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3-1. 투자 조사단/사절단 파견 지원

지역별 투자조사단/사절단을 통해 투자진출 희망국가 현지 투자유치 기관의 투자환경 설명회, 산업단지 및 해외진출기업 방문 등 현지 실사 활동을 지원, 정확한 투자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

가. 신청절차

- KOTRA 홈페이지 「행사안내」란의 게재된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

나. 사절단 활동 기간 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

| | |
|-------------|---|
| 현지 투자환경 설명회 | 각국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에서 개최하는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접할 수 있음 |
| 해외 산업단지 방문 | 현지 생산 환경 확인을 통해 더욱 면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가능하게 함 |
| 해외진출 기업 방문 | 해외기업 진출 시의 애로사항 및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현지 진출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접할 수 있음 |

다. KOTRA 지원사항

| KOTRA 지원사항 | 기업 부담사항 |
|------------|--------------|
| 현지 일정 수립 | 항공비/체재비/기타실비 |
| 통역 및 차량 | |
| 상담 주선 | |

※ 지자체 등의 투자조사 파견을 위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 (연간 수요조사 및 지자체 등의 연간계획수립지원, 업체모집 및 선정, 해외파견 전 업무지원 등)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6 팩스 (02)3460-7950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3-2. 해외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 지원

우리기업의 자원, 건설, 플랜트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유망한 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 전파하고 1:1 밀착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

가. 제공 정보

- KOTRA 해외 무역관이 주재국 유력발주처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거나 주재국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등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조사·제공

나. 5개 중점 분야

| 구분 | 세부 분야 |
|-------|---------------------------|
| 엔지니어링 | F/S, M/P, O&M, 개념/상세/실시설계 |
| SOC | 철도, 도로, 항만, 신도시 |
| 에너지 | 발전, 송배전 |
| 환경플랜트 | 수처리, 폐기물, 소각로 |
| 자원 | 석탄, 구리, 비철금속, 희토류 |

다. 수주지원 서비스

- KOTRA의 각종 해외진출지원서비스를 통해 현장실사(Site Survey), 관계자 면담, 현지 하청업체(Subcontractor) 및 Agent 발굴지원 등 프로젝트 수주 관련 활동 전반을 지원
 - 수주단 파견 : 타겟프로젝트 발주처 방문 상담회
 - 발주처 방한초청 사업 : 국별 개발 프로젝트 초청 설명회/상담회
 - OPS(해외진출프리미엄서비스) : 발주처 인사 등 주요인사 정보제공, 면담주선, 현지 에이전트 및 입찰제도 정보제공, 절차 대행 등 특정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맞춤형 유료 서비스 (실소요경비 기업 부담)
 - 해외프로젝트 수주협의회 운영 : 회원사 대상 프로젝트 정보 수시제공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지원 : 25개 거점 무역관을 통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문의처

- KOTRA 프로젝트총괄팀 : 전화 (02)3460-7762/7695, 팩스 (02)3460-7926

3-3.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기업의 해외출장기간 동안 투자환경 조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KOTRA 해외 무역관이 현지 일정 수립, 체류 관련 제반 서비스를 대행

가. 제공 서비스

| | |
|---------------------|---|
| 일정 수립, 상담 주선 | 기업이 요청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지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인사 및 현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주선 |
| 현지 동향 소개 | 현지 투자환경 브리핑, 투자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공 |
| 숙소 및 통역 등 각종 서비스 알선 | 편안한 출장일정이 되도록 숙소·통역·차량 등의 필수 서비스를 알선 |
| 상담 주선 | 현지 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과의 상담을 주선 |

나. 수수료

| 중소기업, 대기업 | 공정위 발표 30대 대기업군 |
|-----------------------------------|-----------------|
| 300,000원~580,000원 (국가별로 차등 적용) | 기준 수수료의 2배적용 |

문의처

- KOTRA 거래지원팀 : 전화 (02)3460-7436, 팩스 (02)3460-7954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사업신청하기 → 비즈니스출장지원

3-4. 선진기업연구소 기술조사단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 선진기업 연구소를 방문하여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선진 기술경영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선진기업 R&D 담당 연구원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여 현지진출 시 이를 활용

가. 신청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홈페이지/ 기술협력팀을 통해 신청가능

나. 주요 기술조사단 사업

| | |
|------------|--|
| 일본 기술조사단 | 일본 기업의 기술경영 동향 및 첨단 연구소 벤치마킹/현지 담당자와 네트워크 구축 |
| 러시아 기술조사단 | 러시아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상용화 가능기술 발굴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도모 |
| 이스라엘 산업시찰단 | 공동세미나 개최, 1:1 기업상담회 주선, 이스라엘 첨단기업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이스라엘 진출 및 공동연구 기회 제공 |
| 중국 기술조사단 | 중국지역 첨단기술산업개발구와 중국기업 방문, 양국기업인 간 교류회담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협력기회 제공 |

다. KOITA에서 지원하는 내용

| KOITA 지원사항 | 고객 부담사항 |
|------------|----------------|
| - 현지 일정 수립 | - 항공비/체재비/기타실비 |
| - 통역 및 차량 | |
| - 상담 주선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전화 (02)3460-9060~7, 팩스 (02)3460-9069
 ※ 홈페이지 : www.koita.or.kr → 회원존 → 협력사업 → 해외연수

4. 해외 법인(공장) 설립 지원

4-1.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OPS: Overseas-Investment Premium Service)는 KOTRA가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해외법인 및 공장설립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고객과 함께 설계하여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가. 서비스 신청절차

- 지원대상별로 서비스 내용 및 절차, 기간 등 서비스 지원계획을 고객이 KOTRA 무역관과 직접 설계한 후 협약서 체결

나. 지원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지원범위 및 내역 |
|--------------|--|
| 해외 현지법인 설립지원 | - 해외 판매법인 설립 : 현지 투자진출 제반 절차 안내 및 승인신청 지원, 입지정보 제공, 현지실사 지원, 파견 직원 생활환경 정보제공 등 - 해외 공장설립 : 공장부지정보, 공단별 세관 및 물류정보, 토지사용·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 | - 투자 및 사업환경, 법인 및 매장 입지정보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 지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 실제 지원범위는 고객과 해외KBC간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다. 서비스 수수료

-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는 실 소요경비를 기업이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수수료는 해외 무역관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

라. 서비스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프로젝트 완료시까지이며 기업이 해당 무역관과 협의를 통해 정함

문 의 처

- 해외 현지법인 설립지원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1, 팩스 (02)3469-7950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 →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 : 전화 (02)3460-7427, 팩스 (02)3469-7939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4-2.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 사업

가. 지원사항

| 지원서비스 | 세부 내역 | 비 고 | 사업비 사용처 |
|------------|---|--|--|
| 비즈니스 출장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횟수 : 2회 ○ 지사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 - 교통(차량에 한함) - 회의실 및 전화·팩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는 1박2일 기준 ○ 지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aT 소재도시 국한 * 관할지역내 기타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 및 차량 렌트 * 회의실 및 전화·팩스 이용은 해외aT에서 무료 제공 |
| 맞춤형 바이어 알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발굴 관련 업무협의비 |
| 맞춤형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및 해당 업무에 국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
| 시장동향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동향자료 월 1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aT센터에서 매일 생성하고 있는 시장동향 자료 제공 | - |

나. 지원기간

- 1년

다. 사업참가비 : 1백만원 납부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업체가 납부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행하는 경우는 업체의 실비 부담하에 진행
-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약정체결 전에 동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사업기간 만료 후 잔액은 반환

라. 참가신청(참가업체 모집기간 중 신청가능)

- 신청방법
 - aT 지사화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후 첨부서류 송부
 - 온라인 신청 : 배너 또는 [모집공고/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접수처: (137-787)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2층 수출전략처 해외관리팀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0 및 '11년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장 발행) 1부
- 카탈로그 또는 제품 홍보리플렛(영문 또는 현지어) 1부
- 제품포장 또는 라벨(필수 표기사항 기준/ 영문 또는 현지어) 1부

○ 업체선정

- aT의 지원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수출 신장률, 시장개척 의지, 수출경쟁력, 체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 문의처 |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관리팀 김현호 : 전화 (02)6300-1685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5-1. 재외공관 통상투자종합지원반

재외공관에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구성, 해외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가. 주요 활동 내용

-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 해결 지원 및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방안 마련

나. 참석자

- 공관장 및 공관직원, KOTRA 무역관 등 공공기관 및 현지진출 지상사 대표, 동포단체 대표 및 경제전문가 등
 - 지원반 구성은 현지 사정에 따라 상이

다. 개최시기

- 공관별로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개최

라. 주요 논의 사항

- 한국 및 주재국 경제현황 분석, 업체 및 동포단체별 사업동향 점검, 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등

문 의 처

-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 전화 (02)2100-7666, 팩스 (02)2100-7982
 - ※ 홈페이지 : www.mofat.go.kr

5-2.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 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

가. 제공 서비스

- 현지 진출 투자 상담, 법률·경영 등 무료 상담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
(센터 직원, 고문변호사 및 컨설턴트)
- 정보조사 : 주간 투자뉴스레터, 투자진출기업 경영실태 조사, 투자속보
- 현지경영지원 :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경영세미나 개최
- 투자진출 지원, 투자조사단 활동지원, 정부/지원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나. 조직운영 개요

- 조직 운영 : KOTRA 무역관내 설치 운영
- 설치 지역 : 7개(2004~2007년) → 15개(2012년)
 - (2004~2012)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바르샤바), 캄보디아(프놈펜), 인도(뉴델리), 브라질(상파울루), 미얀마(양곤)
- 구성 : 센터별 3명 상근 및 고문변호사/컨설턴트 위촉 운영
 - 상근 : 센터장(무역관장 겸임), 전담직원(본사 및 현지직원)
 - 비상근 : 회계·법률·노동·마케팅·물류 등 분야별 고문컨설턴트

문 의 처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1, 팩스 (02)3460-7950
※ 홈페이지 : www.kotra.or.kr

5-3. 해외 공동물류센터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의 전문 물류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수출기업에게 창고 입·출고 및 창고보관, 내륙운송지원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관지원 등 현지물류에 대한 컨설팅과 A/S지원, 적기납품, 재고관리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

가. 사업 개요

- 조직운영 : 제3자 위탁·운영 방식
 - 실무 : 제3자 물류회사(수송, 통관, 보관, 배송 등)
 - 해외무역관 : 물류회사 관리·감독(섭외, 계약, 마케팅 등)

- 설치 지역 : 20개국 36개소
 - 북미지역 : 뉴욕,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토론토, 밴쿠버
 - 일본지역 : 도쿄, 후쿠오카
 - 중국지역 : 청두, 칭다오, 우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다롄, 시안, 충칭
 - 유럽지역 : 암스테르담, 런던, 브뤼셀,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 중남미지역 : 파나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 러시아·CIS지역 :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 아시아·대양주지역 : 싱가포르, 호치민, 뉴델리, 멜버른
 - 중동·아프리카지역 : 카이로, 나이로비

나. 지원내용

- 물류지원
 - 현지 물류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 현지 물류전문업체의 노하우 활용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보세창고 신축, 운·배송 시스템 구축비용) 경감

- 해외마케팅 지원
 - 물류위탁 계약 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참가업체 직원의 단기 출장 시 임시사무실 제공 등

다. 참가대상

- 현지 시장에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물류비 과다지출 및 신속한 납품 시스템 부재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기업

라. 사업 참가절차

- 1) 해외공동물류센터 인터넷 참가신청
- 2) 참가신청업체 적정성 심사 및 1차선정
- 3) 1차 선정업체 대상 물류코스트 시뮬레이션실시를 통한 참가업체 확정
- 4) 최종 선정업체 사업참가 계약 체결
- 5) 물류운영회사와 위탁운영 계약 체결

| 문의처 |

- KOTRA 시장개척팀 : 전화 (02)3460-7458, 팩스 (02)3460-7919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 해외공동물류센터

5-4.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기술제휴, 마케팅전략 수립, 시장정보 제공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가. 지원 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계획이 있는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및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신청 제한 ■

- 기업 또는 대표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

나.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 410업체 (2012년 기준)
- 지원 금액 : 프로젝트 소요비용(컨설팅)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원
 - 전년도 직수출실적 및 매출액에 따라 조정

| | |
|------------|--|
| 정부보조금 비율 | 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미만 : 70% 정부지원 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 : 50% 정부지원 |
|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 북미, 유럽, 일본, 러시아 등 : 업체당 월 2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등 : 업체당 월 150만원 |

- 지원방법 : 참여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 지원분야

– 해외진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
| 수 출 지 원 |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 세일즈 랩 활용 유통망 진출지원 등 |
| 현지투자지원 |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설립지원 |
| 해외유통망 진출 |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유통채널 진출지원 |
| 기술제휴지원 |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선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
| 해외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상담회 참가 지원 |
| 품목별 타겟진출 |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로개척 |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현황 : 43개국 132개사 지정('12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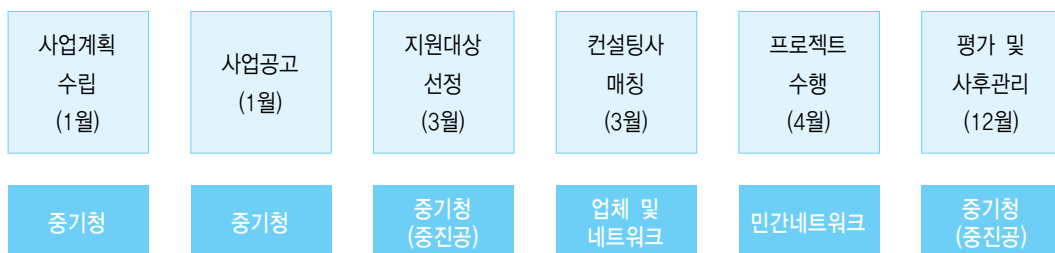
다. 신청 및 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인증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라. 처리절차(2012년의 경우)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전화 (042)481-4473, 팩스 (02)472-3293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전화 (02)769-6705, 팩스 (02)769-6959
- ※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5-5.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서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

가. 입주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광고 및 디자인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나.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 세계 11개국 17개 지역 252실

| 설치지역 | | 입주규모 | 설치지역 | | 입주규모 |
|------|-----|------|------|---------|------|
| 중국 | 베이징 | 21 | 미국 | 뉴욕 | 23 |
| | 상하이 | 26 | | LA | 23 |
| | 광저우 | 14 | | 워싱턴D.C. | 12 |
| | 청두 | 10 | | 시카고 | 18 |
| 베트남 | 호치민 | 12 | 멕시코 | 멕시코시티 | 10 |
| 일본 | 도쿄 | 15 | 브라질 | 상파울루 | 10 |
| 싱가포르 | | 11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15 |
| 인도 | 뉴델리 | 16 | 러시아 | 모스크바 | 10 |
| | | | UAE | 두바이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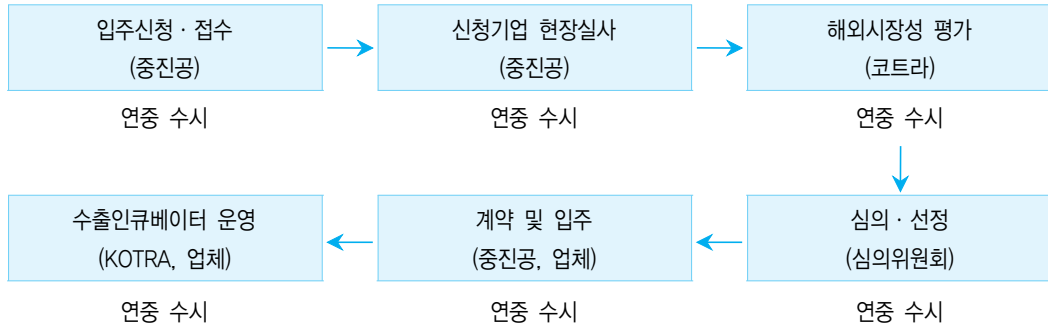
다. 주요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개별기업 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인큐베이터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예시 ■ 입주기업 부담금

- 입주보증금 : 300만원(졸업시 환급)
- 입주 1차년도(업체 부담율 20%) 지역별 평균 임차료
 - 광저우, 청두, 호치민, 시카고, 워싱턴D.C., 뉴욕 : 10~15만원
 - 상하이, 뉴델리, LA, 멕시코시티 : 15~20만원
 - 베이징, 두바이 : 20~25만원
 -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상파울루, 모스크바 : 25~30만원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라. 처리절차



* 업체 모집, 선정, 입주계약 등 전체적인 관리는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KOTRA 담당

마. 입주기간 : 1년(입주업체의 현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바.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사. 신청방법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상에서 온라인 신청

아. 제출서류(필수서류)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정 입주신청서(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파견자 이력서와 재직증명서(필요시 고용계약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입주활동계획서 및 업체 소개자료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전화 (02)769-6729, 팩스 (02)769-6720
※ 홈페이지 : www.sbc-kbdc.com → 온라인 신청하기 → 수출인큐베이터
- KOTRA 지사화물류팀 : 전화 (02)3460-7451, 팩스 (02)3460-7919
※ 홈페이지 : www.kotra.or.kr

5-6. 해외지재권보호 데스크(IP Desk)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본사를 포함,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호치민, LA 등 7개소에 설치한 지재권 보호 전담부서

가. IP-Desk 제공 서비스

| 업 무 | 내 용 |
|---------------|--|
| 지재권 정보 제공 | 지재권 정보 발굴 및 전파와 현지 진출 기업에 제도, 지식 및 지재권 보호 방법 전파 |
|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 진출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보호 실무 교육으로서의 설명회 개최 |
| 지재권 상담지원 | 전문 인력(전문직원, 고문 로펌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방지 및 해결 대책 제공 |
| 지재권 행정지원 | 자체 해결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재권 문제 해결 비용 지원 |
| IP협력채널 구축 | 현지 정부 지재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방법 모색 |

나. 조직운영 개요

- 성격 : KOTRA KBC 內 조직으로 운영
- 설치 지역
 - 중국 : 베이징(거점),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 미국 : LA
 - 베트남 : 호치민

문 의 처

- 특허청 국제협력과 : 전화 (042)481-5070, 팩스 (042)472-3459
 - ※ 홈페이지 : www.kipo.go.kr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8, 팩스 (02)3460-7950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5-7.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기술기반” 국내업체, 연구소, 대학의 성공적인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해외 현지 경험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GCC)와 EEN-KOREA를 통해 종합적인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가. 신청자격

-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로서
 - ① 해외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라이센싱 등)
 - ② 해외 합작법인 설립·투자 유치
 - ③ 설비·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 ※ 국제 특허(PCT)로 출원·등록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국외지역에서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지원

나. 신청 시기 및 비용지원 범위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컨설팅 지원
 - 수출 및 사업화 의뢰기업에 대해 해외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단계 컨설팅(시장조사, 마케팅자료 작성, 수요기업 발굴, 매칭) 지원
 - ※ 초기단계 후 센터별로 추가적인 지원 발생(고비용의 회계, 법률자문)시 기업과의 협의 하에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
 - 컨설팅지원은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는 현지 협력센터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GCC), EEN-KOREA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 ※ 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 중국, 일본, 동남아 구축
 -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KOREA 컨소시엄 : 유럽지역 구축
- 계약 성사 가능 기업의 경우 기업-센터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다. 지원건수 한도 및 기타사항

- 지원건수 : 연간 총 100건 내외
- 기타 지원사항
 - 수출 및 현지사업화 마케팅 추진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마케팅·홍보 준비지원과 수출국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인 ‘기술수출 상담회’ 참가 우선지원
 - 우수기술일 경우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 위주의 기술 로드쇼 참가지원

라.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1) 처리절차

컨설팅 추진절차

| 단 계 | 추진내용 | 주체 |
|-------------------|---|-------------------------|
| 사업 참가 희망 기업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우수 수출 및 사업화 대상 기술기업 접수 ○ 현지 협력센터를 통해 시장성, 해외진출가능성, 기술성 검토 및 평가 실시 | KIAT, 글로벌사업화 협력센터 |
| 기술수출 및 사업화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략자문 : 현지시장분석, 수요처 상세조사 ○ 마케팅 자료 제작 ○ 기술홍보지원 : 홍보물제작, 배포 | 글로벌사업화 협력센터 |
| 상담회/로드쇼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비즈니스 대상국 현지 파트너와 1:1 수출상담 매칭 지원 ○ 우수기술일 경우 해외 로드쇼(미국, 유럽 등) 지원 | 글로벌사업화 협력센터 |
| 거래성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성사 중개지원 ○ 계약협상 등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 | 글로벌사업화 협력센터, KIAT |

2) 심의기준(신청기술에 대하여 기술 우수성 및 사업성 위주로 평가)

- 평가항목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응용분야의 다양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특히 권리성(국내/해외), 국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센터별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실시

* 현지 센터별 평가결과 현지시장성 및 진출 가능성 미비 시 지원 불가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김은정 : 전화 (02)6009-3208, 팩스 (02)6009-321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임지현 : 전화 (02)6009-3212, 팩스 (02)6009-3219

※ 홈페이지 : www.kiat.or.kr

5-8. 중소기업 KOREA DESK

해외(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밀착지원을 위하여 현지 투자인허가 담당기관(베트남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MIDA, 인도네시아 BKPM)에 Korea Desk를 설치, 파견 직원이 상주하며 제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 이용대상

-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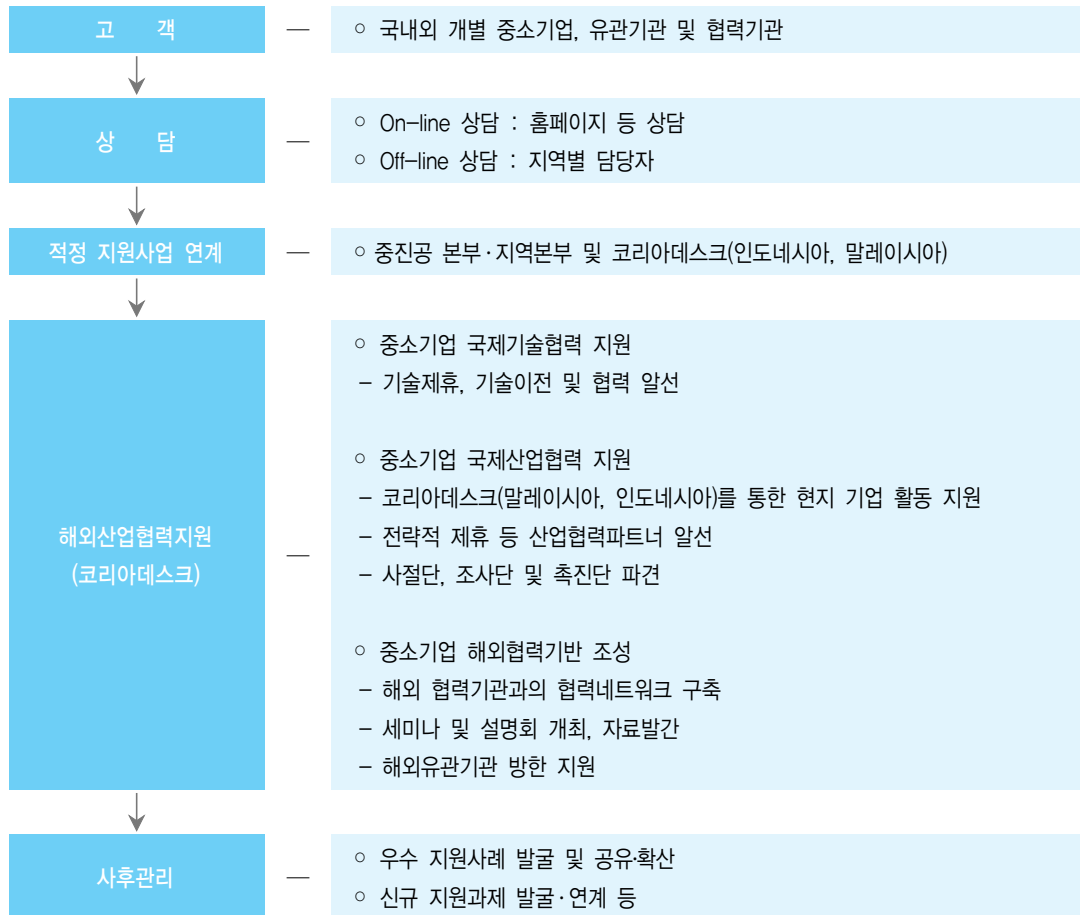
나. 설치지역 및 기관

| 구 분 | 설치지역 | 설치기관 | 운 영 |
|-----------------|-----------------|--|----------|
|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 베트남 하노이 |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 | 대한상공회의소 |
|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 (http://www.mida.gov.my/)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

다. 주요 지원내용

- 현지 진출기업 원스톱 상담 및 현지방문 지원
- 투자전략, 정책자문 등 전문상담활동 수행
- 투자환경 등 현지 진출관련 조사 및 자료발간
- 현지 투자와 관련된 정부 인·허가 지원
- 투자 기술협력 사절단 교환 및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 양국 중소기업 협력 파트너 알선 및 협상지원
- 현지 기 진출업체의 정착 지원
- 지역 상공회의소, 업종별 조합, 연구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 발굴

라.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 전화 (02)6050-3560, 팩스 (02)6050-3900
 - 베트남 사무소 : 전화 +84-4-3771-3681, 3719, e-mail : hkkim@korcham.net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전화 (02)769-6846, 팩스 (02)769-6959
 -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 전화 +60-3-2267-3403, Fax +60-3-2267-6776, e-mail : yhchon1998@gmail.com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 전화(Fax겸용) +62-21-5292-1302 e-mail : sbcwanhee@gmail.com, wanhee@sbc.or.kr

※ 이메일로 먼저 문의한 후 유선 상으로 확인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

5-9. 대중국 투자정보 및 경영상담

중국의 경제, 제도, 투자환경, 투자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상담 지원

가. 서비스 내용

- 중국경제정보 이메일 및 책자 발송
- 중국 관련 비즈니스 자료 비치 및 배포(중국경제법령집, 재중 기업 소개책자, 중국 관련 도서 등)
- 경영상담 및 대행업무(법인, 사무소 설립 등)
- 무료 경영상담 실시

나. 이용 시간

- 월~금요일 : 09:00~12:00, 13:00~18:00
- 상담방식 : 이 메 일 - china@korcham.net
웹사이트 - www.korcham-china.net(경영상담센터)

다. 장소

-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8호 현대기차대하 910실 우편번호: 100-027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 전화 (02)6050-3561, 팩스 (02)6050-3900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전화 +86-10-8453-9755~8, 팩스 +86-10-8453-9760
- ※ 홈페이지 : www.korcham.net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6-1.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정보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재권 피·침해상담 및 대응, 상표출원등록 지원, 브랜드네이밍 지원, 지재권 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조사비 지원

가. 지원 사업 안내

- 상표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개인·중소(중견)기업의 상표 출원비용 및 행정지원
- 디자인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개인·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권 출원비용 및 행정지원
- 세관 지재권 등록 :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해당 국가 세관에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진행 절차 지원
- 피·침해조사 : 피·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대하여 침해상황 조사 및 행정단속을 통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및 행정지원

나. 신청 대상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출원등록 사업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 기업(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침해조사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 기업(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전용실시(사용)권자 포함]에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문의처

- 특허청 국제협력과 : 전화 (042)481-5070, 팩스 (042)472-3459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8, 팩스 (02)3460-7950
※ 신청양식 다운로드 : www.kotra.or.kr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전화 (02)-2183-5896/5895

6-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우리기업과 경쟁업체간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을 통하여 분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가. 신청대상

- 국내·외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따름 |
|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인 기업 |

나. 신청 시기 및 지원내용

- 신청 시기 : 매년 2~7월경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비(보험료)의 최대 70% 지원
- * 보험료 지원 규모는 추후변경 가능합니다.

다. 보험 상품 내용

| 보장 상품 | 소제기(권리행사) | 방어(제품방어) | 보호(권리보호) |
|----------|---|---|---|
| 주요 내용 | 국내,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 비용 보장 · 권리행사 대리인 선임비용 · 법률검토(경고장)비용 · 라이선스 협상비용 · 행정조치(세관조치)비용 · 심판·소송비용 등 | 국내, 해외에서 경고장 수신, 피소 등을 당한 경우 제품 방어 비용 보장 · 권리방어 대리인선임비용 · 법률검토(경고장)비용 · 라이선스 협상비용 · 심판·소송비용 등 | 국내, 해외 등록지재권에 무효소송, 이의신청 등을 당한 경우 보호비용 보장 · 권리보호 대리인선임비용 · 라이선스 협상비용 · 심판·소송비용 등 |

자기부담금 20% 적용

문 의 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전화 (02)2183-5870, 5872~8 팩스 (02)2183-5899
- ※ 신청서 내려 받기 : www.kipra.or.kr → 사업공고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첨부파일(다운로드)

6-3.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국제특허분쟁 예방사업)

해외 기업과의 지재권분쟁 가능성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사전 분쟁예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가. 신청자격

-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어서 해외 경쟁업체와 지재권분쟁 가능성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따름 |
|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인 기업 |

나. 신청 시기 및 지원내용

- 신청 시기 : 매년 2~7월경
-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 분쟁예방 컨설팅 | 수출 분쟁예방 | 수출상품에 대한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 | 전시회 분쟁예방 | 해외 전시회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 분쟁예방은 특허권, 디자인권에 관련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 매칭비율

| 구 분 | 매 칭 비 율 (기업부담비율) |
|-------------|--|
| 분쟁예방 컨설팅 | 특허, 디자인 최대 4,000만원 컨설팅 비용 중 30% (단, 중견기업은 50%) |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다. 지원 절차

| 단 계 | 내 용 | 주 체 |
|----------------|--|------------------------------------|
| 신청서류 제출 | - 방문, 우편, e-mail 제출 | 신청기업 |
| ↓ | | |
| 선정심사/지원결정 | - 심사위원회(특허전문가 그룹) 심사로 지원 여부 결정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 ↓ | | |
|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계약 | - 지원결정된 기업은 분쟁대응전문가 풀(Pool)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 특허사무소 등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 선택 가능하나 해당 기관이 전문가 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자격 요건은 보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지원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컨설팅 수행기관 |
| ↓ | | |
| 컨설팅 수행 및 평가 | - 컨설팅 수행(컨설팅 수행기관) -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한 컨설팅 결과물 평가 (심사위원회) | 컨설팅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 상기 사업내용은 '13년도 사업 수행 시 변경 가능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전화 (02)2183-5870, 5872~8 팩스 (02)2183-5899
 - ※ 신청서 내려 받기 : www.kipra.or.kr → 사업공고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첨부파일(다운로드)

6-4.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및 산업기술 보호 지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해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산업스파이 및 산업기술 보호대책 등 신고상담을 지원

가. 산업기밀보호센터 소개

-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내 첨단산업기술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차단 등 국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 국·내외 첨단 산업기술 보유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스파이 색출 및 예방활동 수행

나. 주요 활동내용

-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신고상담
-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지원
- 산업보안 의식제고를 위한 세미나·간담회 지원
- 기타 산업기술 보호관련 정보자료 지원 등

다. 이용 방법

- 전화상담시 : (국번 없이) 111
-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 접속 후
 -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 '111' 콜센터
 - 산업보안 정보자료 열람 : 산업기밀보호센터

문 의 처

- 국가정보원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 111 콜센터
 - ※ 홈페이지 : www.nis.go.kr

7. 해외 건설 · 플랜트 · 환경 · 물류기업 지원

7-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업체가 해외건설 진출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국의 종합적인 건설정보를 다양한 수집채널로 입수하고 수집된 정보의 가치와 신뢰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해외건설 전문DB로 축적하여 정보를 제공

가. 홈페이지 주소 : www.icak.or.kr

나.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엄선된 정보와 현지 대사관 주재 국토해양관이 조사한 입찰정보, 해외건설분야 진출 관련 제도 및 해외건설업 신고절차 등 제공

| 원클릭 서비스 | 주요 내용 |
|---------|--|
| 국별환경 | -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건설시장 진출환경 조사정보 |
| 시장동향 | - 국가별 전문가에 의해 160개국 18,000여 건의 엄선된 해외 건설시장 최근 동향 |
| 건설통계 | - 1966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우리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한 수주활동, 계약보고, 시공 상황 등 준공자료 등 |
| 프로젝트 | - 세계 각국에서 발주예정인 공사정보와 국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차관공사 사전 입찰정보 |
| 재외공관 | - 해외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한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현지대사관에서 활동 중인 국토해양관이 획득한 생생한 발주·현지정보 |
| 정보네트워크 | -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7개 해외지부의 프로젝트 정보, 시장동향 정보 등 |
| 해외진출 | - 해외건설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제도, 해외건설업 신고안내, 해외사업 수행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시장개척 지원제도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 사항 세부정보 |
| 시사채널 | - 해외건설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사성 있는 공지사항 등 |
| 커뮤니티 | - 해외건설 정보서비스와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질문 및 자유게시판 등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 : 전화 (02)3406-1065, 팩스 (02)3406-1123
※ 홈페이지 주소 : www.icak.or.kr

7-2.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

해외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신규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 중 리스크가 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가. 대상 기업

-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기업

나. 지원사업의 범위

- 미 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단, 토목, 건축 용역 공중 수주실적 각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 포함
 - 단, 공사규모 2억불 이상의 플랜트 공종은 당해 공종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
- 중점협력국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다. 지원사업의 대상(단위 사업별 또는 포괄 지원)

- 타당성 조사사업
-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 방한 시찰 또는 연수(초청)
-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

라. 지원금액의 범위

- 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은 2억 원 이내
- 지원 비율은 총 사업 소요비용의 80%까지(중견기업은 최대 50% 이내)
 - 대기업 단독 : 미지원
 - 중견기업 단독 : 50% 이내
 - 중소기업 단독 : 80% 이내
 -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동 : 대기업은 30% 이내, 중견기업은 50% 이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 대기업은 30% 이내, 중소기업은 80% 이내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 중견기업은 50% 이내, 중소기업은 80% 이내

- 대기업간 공동 : 미지원
- 중견기업간 공동 : 50% 이내
- 중소기업간 공동 : 80% 이내
- 공기업 : 미지원
- 타당성조사사업 : 중견기업 70% 이내, 중소기업 90% 이내

마. 지원 절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 : 전화 (02)3406-1026, 팩스 (02)3406-1123
- ※ 홈페이지 : www.icak.or.kr

7-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추진 국내기업의 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수주 및 시장다변화를 확대하고, 수출파급효과가 큰 플랜트 수출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임

가.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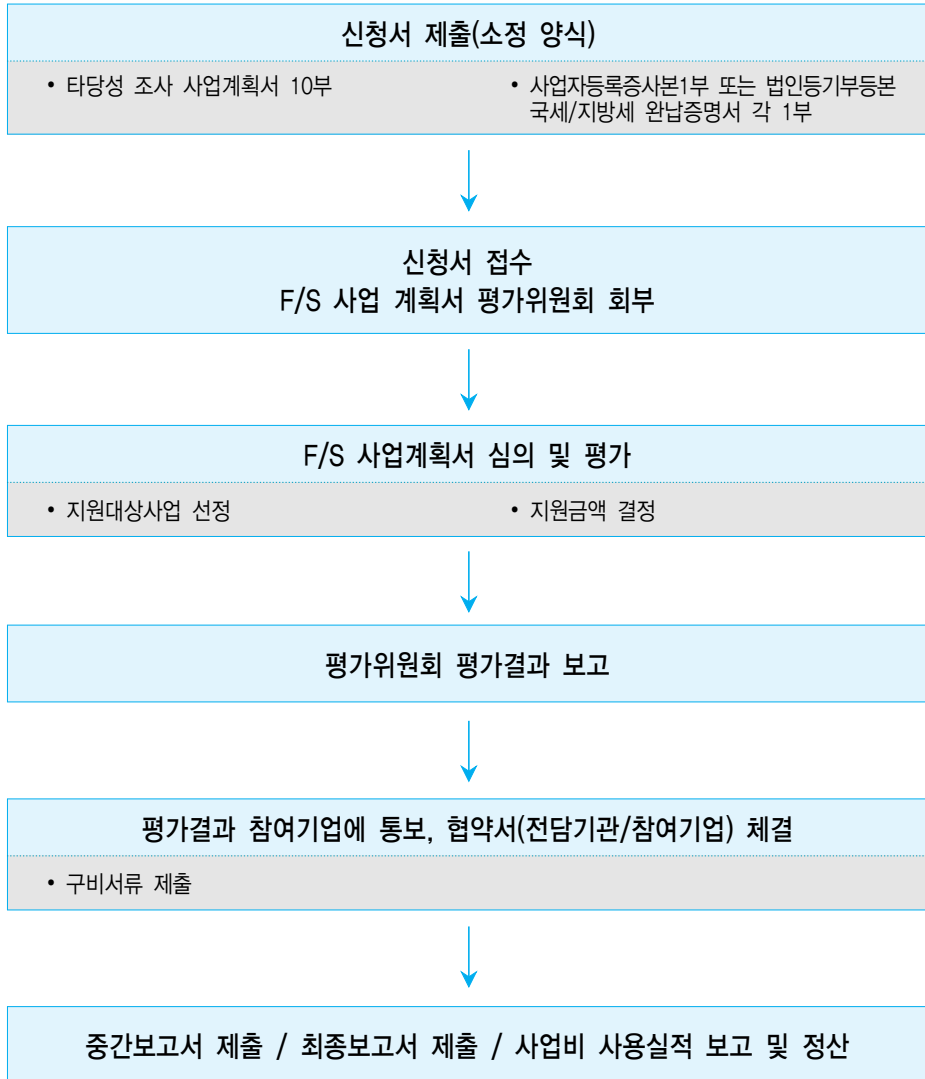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공정설비 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및 공정설비 프로젝트
- 발주예산기관과 신청기업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수행에 관한 양해각서(MOU), 또는 발주 예산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타당성 조사 수행을 요청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또는 서한(Letter) 중 1건 이상의 문서 제출

- ※ 플랜트 분야 : 석유화학, 오일 & 가스, 해양, 발전, 담수화, 시멘트, 제철, 운반/하역, 환경, 기타 산업설비 등
- ※ 공정설비 : HRSG 등의 보일러설비, 열교환기, 탈황설비, 반응기, 공조기, 가스압축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송배전설비, 계장설비, 전처리설비, 충전설비, 컨베이어 자동화 생산설비, 재활용 분리설비, 조립설비, 생활용품 제조라인, 철강임가공, 농수산 가공설비 등

나. 지원 내용 :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 : 70% 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60% 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
- 기타 : 50% 이내 지원

다.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FS사업팀 : 전화 (02)3452-7972~3, 팩스 (02)3452-6616
- ※ 홈페이지 : www.kopia.or.kr

7-4.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경험이 부족한 중소 및 신규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및 진출 활성화에 기여

가.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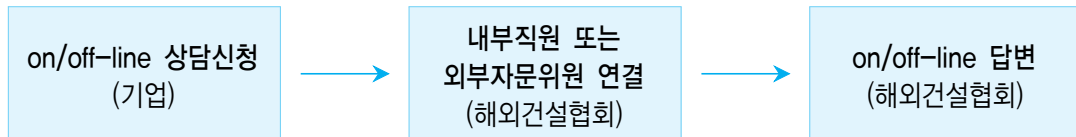
- 해외진출경험이 부족한 중소 해외건설업체
- ※ 2012년 지원 사업규모 : 5.26억 원

나. 지원 사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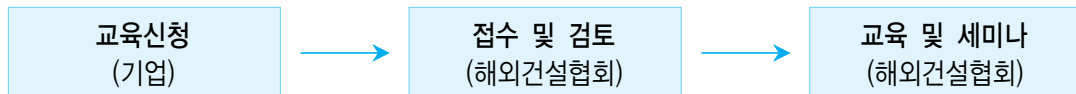
- 해외건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세미나
 - 정규과정 : 수주, 계약, 개발, 금융관리 등 실무교육
 - 특별과정 : 유명시장 설명회, 리스크 사전 예방 및 관리 등
- 해외진출 상담 및 실무지원
 - 계약/클레임/법률, 보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공중별 기술자문 등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 Pool 운영 및 무료상담 지원

다. 지원 절차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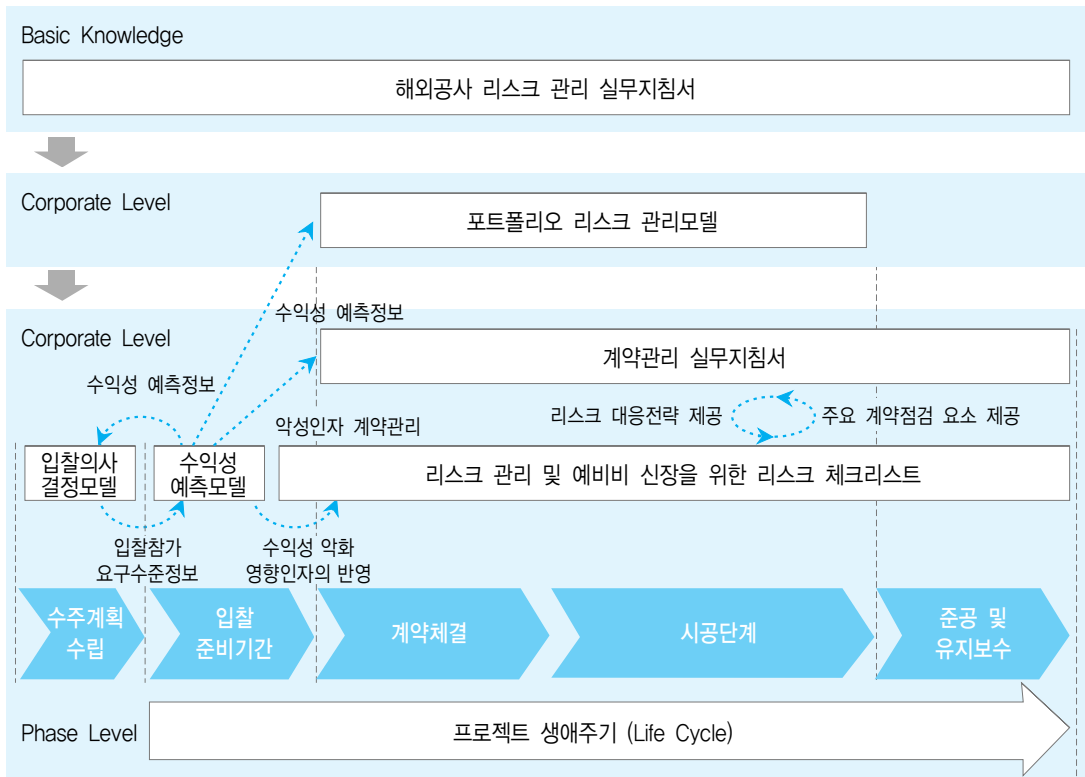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실 : 전화 (02)3406-1071, 팩스 (02)3406-1124
-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전화 (02)3406-1158, 팩스 (02)3406-1121
- ※ 홈페이지 : <http://smc.ica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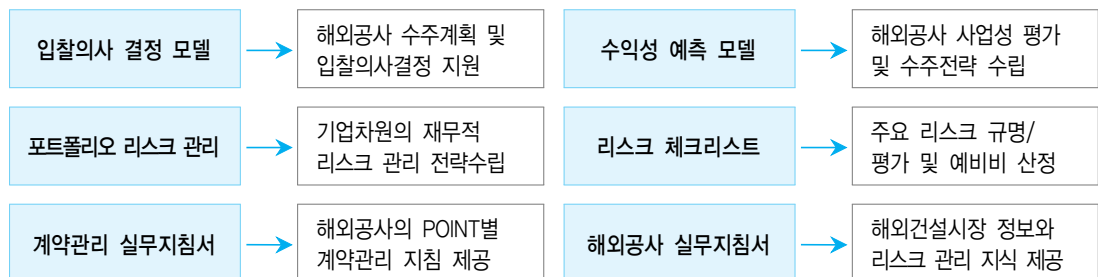
7-5.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기초적인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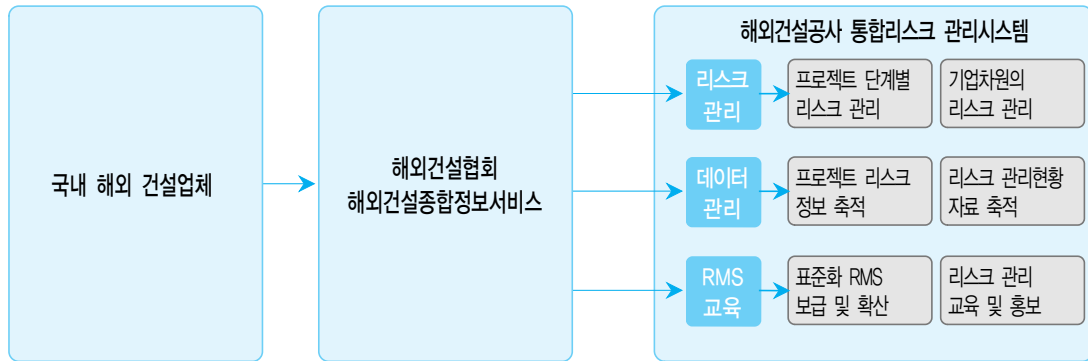
가.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활용 개요



나. 리스크 관리 모델 소개



다. 서비스 구성



라. 기업회원 가입 절차 : <http://rms.icak.or.kr>

| | |
|--------------------------|--|
| 1단계 기업별 관리자 등록 | 해외건설협회에 신청하여 각 업체별 내부관리자를 등록 |
| 2단계 기업별 사용자 생성 | 지정된 관리자가 기업내부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관리 |
| 3단계 사용자별 권한 설정 | 각 업체별 내부관리자가 지정된 내부사용자들의 프로젝트 접근권한, 모델별 접근권한 등을 설정 |

※ 개인회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시면 자동 승인 후 이용 가능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지원실 : 전화 (02)3406-1198, 팩스 (02)3406-1126
- ※ 홈페이지 : <http://rms.icak.or.kr>

7-6.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중소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등 취업 지원,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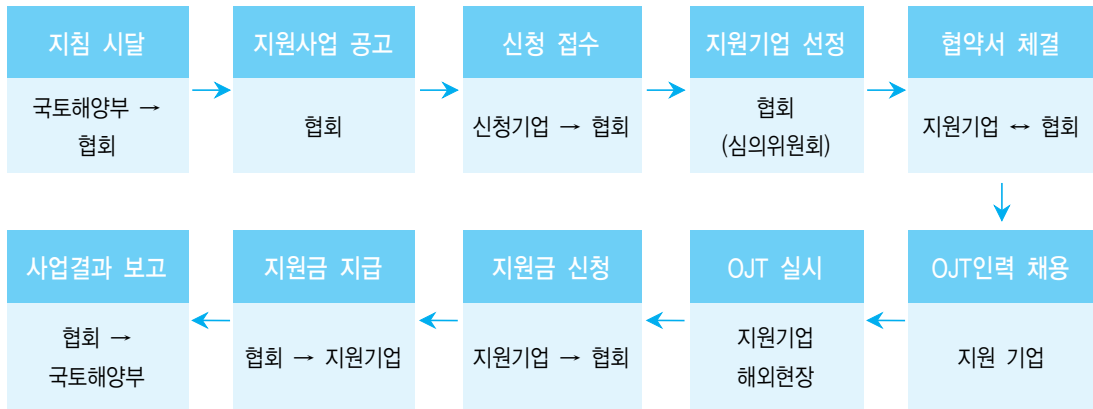
가.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된 중소기업으로서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

나. 지원내용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훈련지원금
 - 신입, 경력직 무관
 - 직종(기술직, 관리직, 기능직) 무관
 - * 매년 해외건설협회에서 OJT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되었거나 채용할 인원
- OJT 지원금
 - 파견비용 : 180만원 한도내*/인당(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 * 1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1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 지원
 - 훈련비용 : 80만원(월/인당)
- OJT 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 OJT 인원 :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다. 사업 추진절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인력센터 / 전화: 02)3406-1027, 팩스: 02)3406-1123
- ※ 홈페이지 : <http://www.icak.or.kr/main.php> → 해외진출 → 현장훈련지원

7-7. 엔지니어링기업 해외수주 지원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와 수주교섭 및 조사, 발주처 초청 등을 지원

가. 지원 대상 :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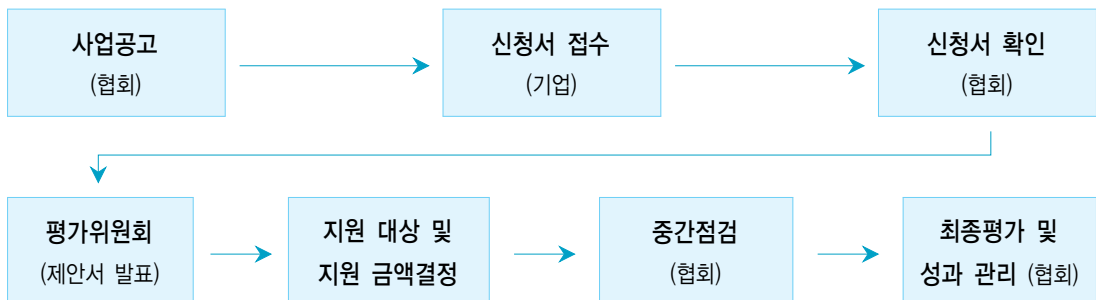
나. 지원 범위

-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발주처 등 인사초청 포함)

다. 지원 규모(1사 1프로젝트)

- 타당성 조사 : 건당 5천만 원 내외
- 주교섭 및 조사 : 건당 3천만 원 내외
- 프로젝트별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

라.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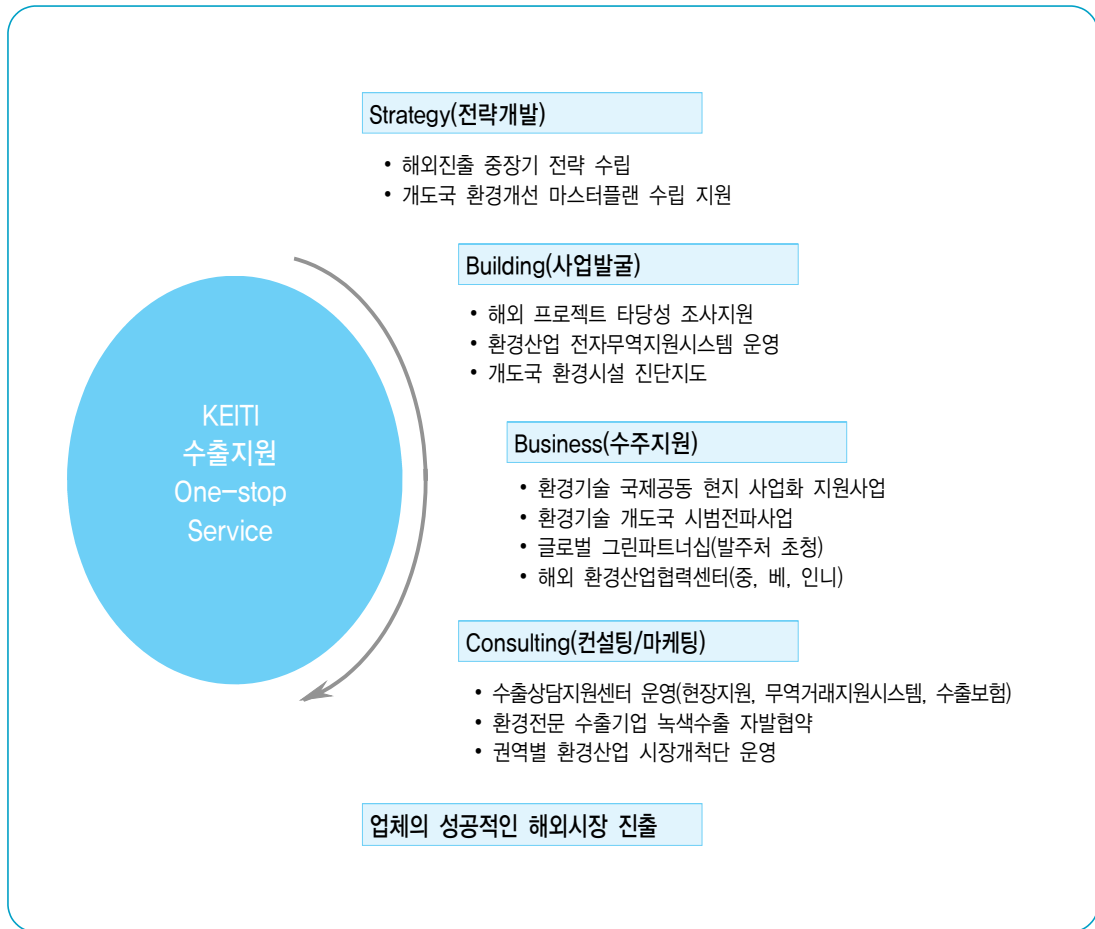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제팀 : 전화 (02)3019-3374, 팩스 (02)3019-3302
※ 홈페이지 : www.kenca.or.kr 및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정보자료실' 활용

7-8. 해외환경산업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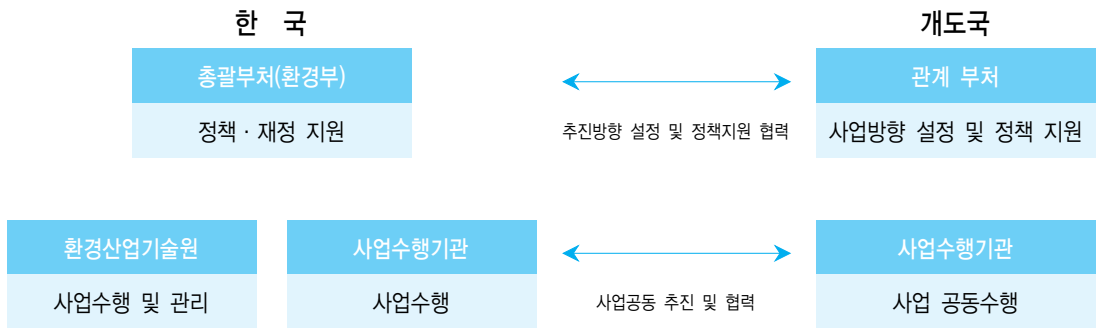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새롭게 열리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전략화 실현

해외 환경산업 진출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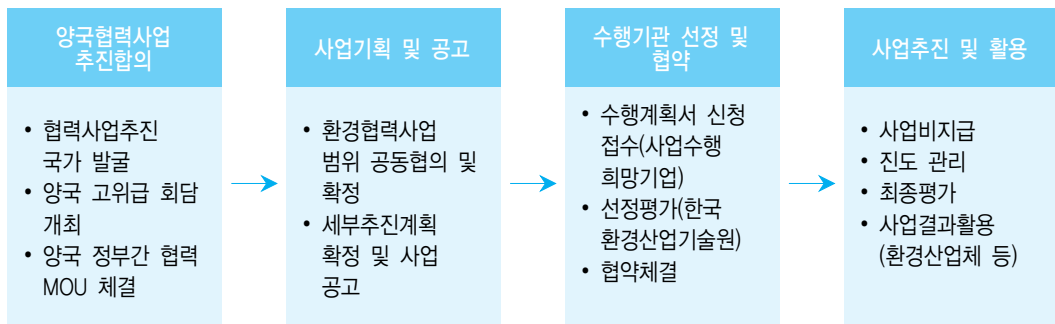


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지원 사업

- 목적 : 해외진출 유망 개도국의 환경여건 분석 및 그에 적합한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간 환경협력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하여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 지원내용
 - 사업기간 10개월 정도, 도시지역의 오염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개선전략 수립 및 환경사업 발굴
 - 국가 당 4~6억 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한국 측 사업수행기관과 개도국 측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 지급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절차



나.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 목적 : 국내에서 상용화된 유망 환경기술을 진출대상국 환경법규와 현지여건에 맞도록 개조 변형 등 현지 실증화를 통하여, 진출대상국 환경개선에 기여 및 환경기술을 공급함과 동시에 사업성과물을 현지 수출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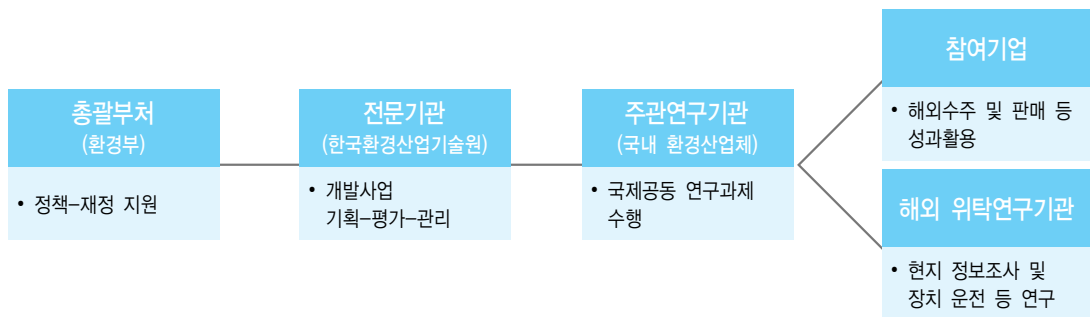
○ 지원 대상(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8개 분야의 실용화 기술
 - 맑고 안전한 공기, 만족도 높은 물, 하·폐수처리고도화, 환경 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온실가스 감축, 유해물질 대체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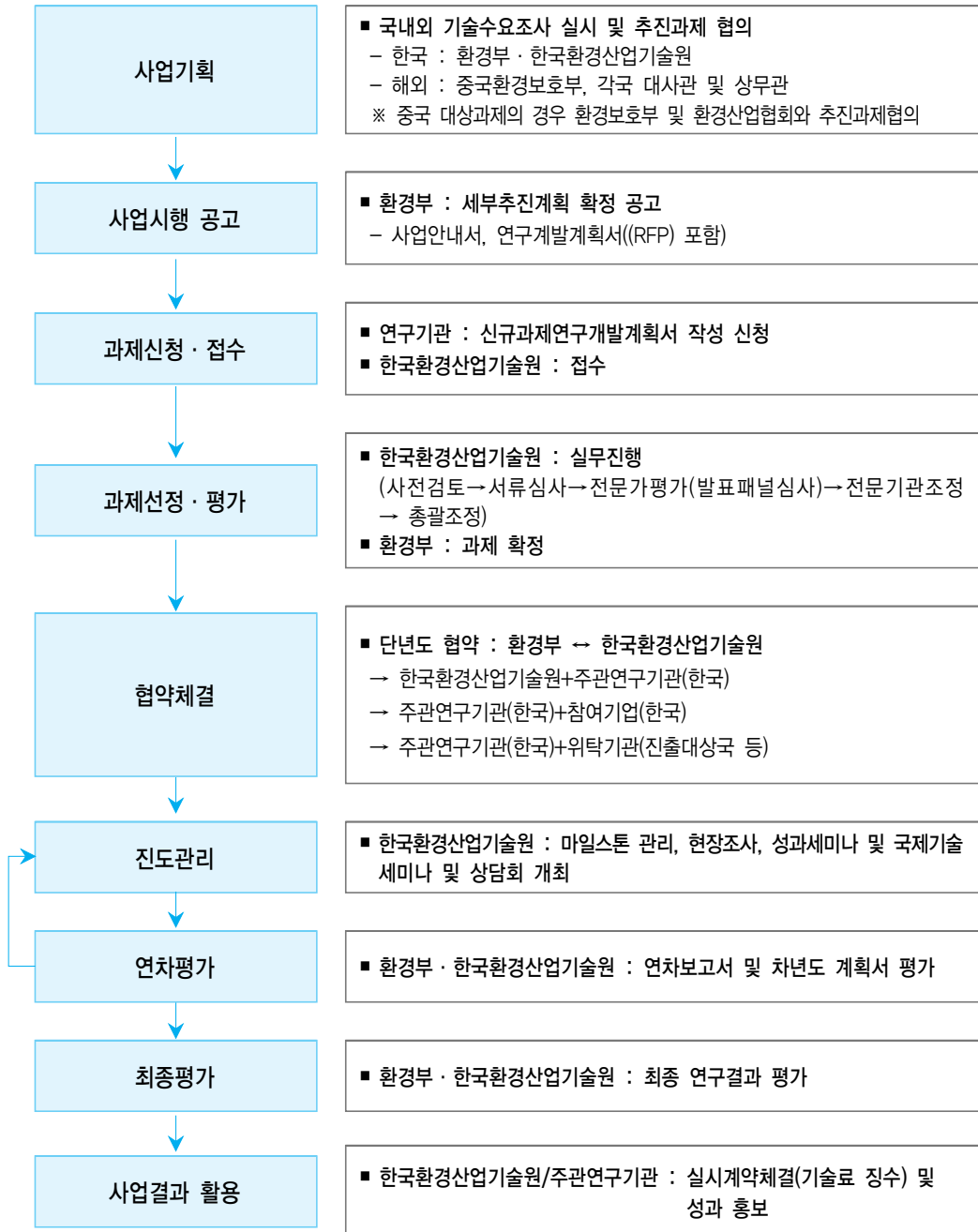
- 지원 대상국 : 전 세계
 - ※ '06년 이전 중국 → '07년 중국, 동남아국가 → '11년 전 세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 금액(정부출연금)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과제 등 대형과제는 3억원 이상 예산범위내 지원 가능
- 과제구분
 - 지정공모 : 중국, 베트남
 - 자유공모 : 전 세계(중국, 베트남 포함)
- 신청자격 : 기업체
 - 개발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은 “기업”(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
 - ※ 진출 대상국의 기관이 위탁기관 형태로 반드시 참여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지정공모과제에 한함)

※ 자유공모과제는 신청기업이 진출대상국 연구기관과 협약 등 체결 후 과제신청



다.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플랜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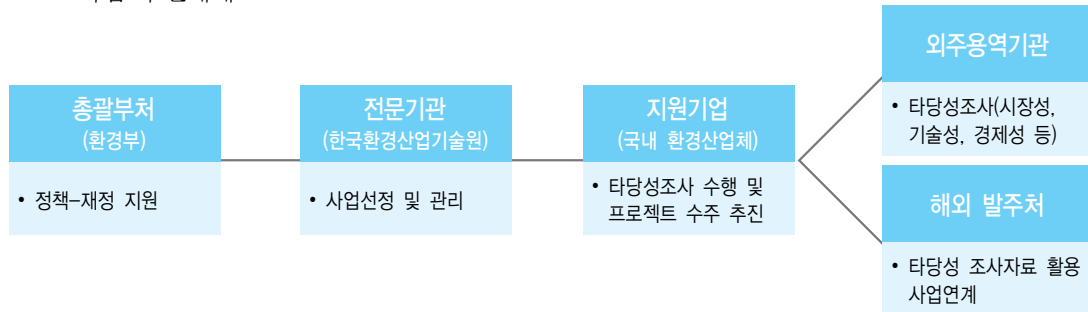
○ 지원 대상

- 수익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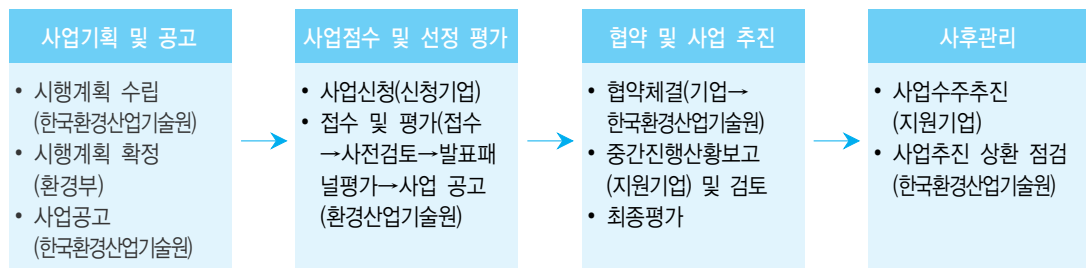
○ 지원 금액 : 프로젝트 당 최대 2억원 이내, 사업비의 50~70%

- 중소기업은 70% 이내
- 대기업은 50% 이내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70%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절차



라. 환경산업 수출지원 상담센터

- 목적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무역실무, 법률, TAX 등 무역거래 전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자문
- 지원 대상
 - 해외진출 및 수출을 이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상담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상담
 - 온라인((www.greenexport.or.kr, ARS 1599-1722), 오프라인(현장방문, KEITI 내원)
 - 해외진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제공

| | 실무전문가 컨설팅 | 전문자격사 컨설팅 |
|------|--|--|
| 구 성 | 국내외 무역전문가 55명 (국내 28인 / 현지 27인) | 법무법인 광장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
| 자문분야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알선 해외 현지 비즈니스 관련 자문 무역실무, 통관·관세 관련 자문 국제입찰, 해외투자 전략수립 | 해외진출 관련 기업법무 자문 국제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대응 국제조세, 관세, 회계, 해외직접투자 자문 국제 협상 및 수출 계약서 자문 |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연 2회)
 - 해외진출 경험/지식이 부족한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필수지식 및 정보,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제공

마. 해외 환경산업정보망 구축·운영

- 목적
 - 국내 환경산업체에 해외 환경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환경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해외 환경 시장 진출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주요 서비스
 - 개도국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체 정보

- 환경전문가, 지역별 정보 등의 전문정보
- 환경뉴스 및 정책자료, 환경시설정보, 입찰정보, 사이버전시관, E-mail 등
- 한·중 환경산업정보망('06. 2), 한·베 환경산업정보망('08. 12) 구축 운영 중
- 해외진출대상국가 다변화에 따라 중국 및 베트남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해외 환경산업 정보망을 통합하여 통합정보망 구축('09. 12) 운영 중
- 한·중 환경산업정보망 홈페이지
 - 한·중 홈페이지 : www.eischina.or.kr
 - 한·베 홈페이지 : www.eisvietnam.or.kr

바.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 목적
 - 해외진출 유망국과의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산업체 수출활동 현지 지원
 - 거점 센터('12년 현재) : 중국(북경),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지원내용
 - 주요 서비스
 - 유망 환경 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 맞춤형 시장 정보 수집·분석·제공
 - 수출 알선 서비스(법률 자문·교육, 통역, Secretary, 입찰정보 등)
 - 주요 발주처 및 Key Person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기업 알선
 - 공용시설 및 기기(회의실, 상담실, OA기기 등) 활용 등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연락처

| 구 분 | 한·중 환경산업협력센터 | 한·베 환경산업협력센터 | 한-인니 환경산업협력센터 |
|------|---|--|---|
| 소재지 | 北京市 中央商務區(CBD) 내 FULL 빌딩 20층(東三環中路) | Vietnam-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Office(VKECC) 15th Floor VIT Tower 519 Kim Ma Str. Ba Dinh Dist, Hanoi Vietnam | Indonesia-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Office(IKECC) 27th Floor K-Link 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59A, Jakarta, 12950 |
| 전화번호 | +86-10-8591-0998 | +86-10-8591-0995 | 62-21-2902-6930 |
| 팩스 | +84-4-220-8210 | +84-4-220-8211 | 62-21-2902-6920 |

사. 환경전문 수출기업 '녹색수출 자발협약'(신규)

○ 목적

- 국내 중소 환경전문기업 가운데 수출유망기업 발굴하여 '녹색수출 자발협약(Green Export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고 협약기업의 수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환경산업 해외수출성과 확대

○ 지원대상

- 기술력, 수출의지,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환경전문 수출기업(3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11.1~'13.12(3년)
 - ※ 년차평가를 통해 지원 계속여부 결정

○ 지원내용

- 협약사별 연차별 수출목표 설정 및 이행노력에 대하여 각 기업의 수출활동 단계 및 수요에 따라 협력기관을 통한 수출활동(해외특허, 기술거래컨설팅,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수출컨설팅, 해외인증규격 취득, 홍보자료 제작 등 세부사업) 지원
- 기업당 통합 20백만원/년 내외

| 문의처 |

- 환경부 환경산업팀 : 전화 (02)2110-7760~7763, 팩스 (02)504-4439
 - ※ 홈페이지 : www.me.g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전화 (02)380-0271~0280, 팩스 (02)380-029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전화 (02)380-0281~293, 팩스 (02)380-0290
 - ※ 홈페이지 : www.keiti.re.kr → 사업안내 → 수출지원

7-9. 국제물류 투자분석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글로벌 물류정보 제공과 기업별 장기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원활한 해외물류사업 추진 지원과 다양한 정보 제공

가. 지원 사업 및 신청대상 기업

- 국내물류기업 중 해외물류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 해외물류투자사업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
- 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자원, 제조, 건설, 플랜트 등)을 통한 해외투자사업

나. 지원사업의 범위

- 동향분석
 - 최신 국제물류동향, 국제물류기업 최신 투자사례, 주요 물류시장 동향 등 정보제공
- 해외 물류시설 및 국제물류 분야 투자 관련 법·제도 조사
 - 각 국가별 물류시설, 항만 및 자유무역지역 투자관련 법·제도 검토
 - 현지법인 설립 형태, 자본금 제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검토
 - 물류시설, 항만 및 관련 배후단지(FTZ 등) 개발 투자 시 외국인 투자제한, 투자절차, 진출방법, 인센티브 등에 대한 투자 관련 법률 조사분석
- 신규 사업 검토 및 예비조사
 -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Global Logistics Network: GLN) 투자대상 사업의 물동량 및 개략적 사업성 분석이 포함된 기초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 조사(FS : Feasibility Study)
 - 사업 대상국 경제 및 물류현황, 개발 프로젝트 등 조사
 - 투자비용, 운영수익, 연도별 물동량, 이용 선사 현황 및 선사별 물동량 등 사업 타당성 분석
- 해운·물류기업 협의회 운영
 - 세미나 형태로 외부 전문가 초청과 협의회 실무자 사례발표로 진행
 - 참여기업의 해외 진출사례, 해외사업 리스크 및 문제점, 글로벌 물류시장 주요 이슈 등 관련 정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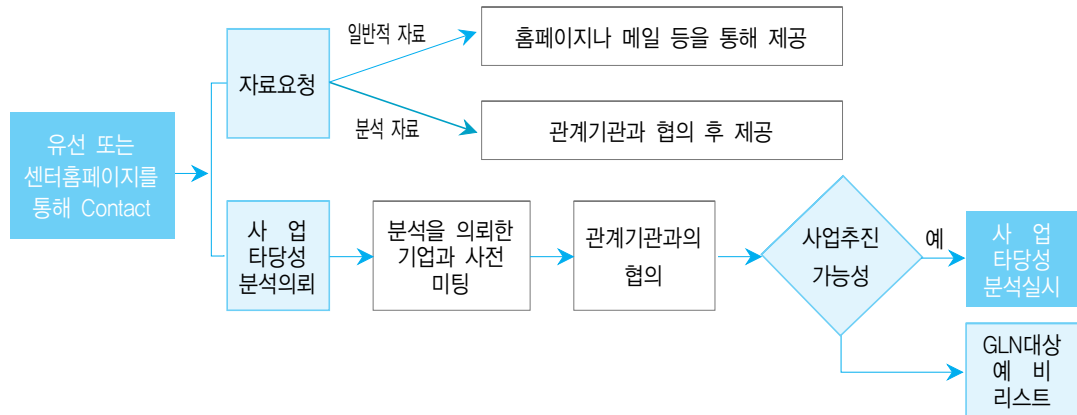
- 사업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국제물류투자협의회 및 관심 기업 대상 물류기업 동반진출, 자원연계 진출, 지역특화 진출 등을 주제로 관련 기관이나 해외기관과 해외진출 공동세미나 등 개최
- 해운정보망과 연동하여 국제물류 투자분석센터 정보 관리
 - 국제물류위클리, GLN동향분석, 사업설명회, 물류관련 법·제도, 편람, 기업별 장기 전문 컨설팅 자료 관련 DB 제공

다. 지원방안

- GLN 동향리포트, 국제물류위클리를 무료로 발간 제공
- 기업별 장기 전문 컨설팅 보고서는 정부와 협의 후 무료로 수행(단, 출장 등 제반비용은 실비로 청구)
- 기업의 요청에 의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유료로 제공

라. 이용방법

- 센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은 KMI 국제물류 투자분석센터에 연락을 통해 자료요청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하면, 기업들이 의뢰한 내용을 파악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보 제공
 - 매주 ‘국제물류위클리’를 국제물류 투자협의회 회원사에게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KMI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물류위클리’와 ‘GLN 동향분석리포트’를 제공



문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전화 (02)2110-8558, 팩스 (02)504-267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전화 (02)2105-2897, 2982, 2838
 팩스 (02)2105-2799 / ※ 홈페이지 : www.kmi.re.kr

7-10.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원자력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원자력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수출 관련 정보 및 해외시장정보조사·해외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관·연간 수출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통해 유기적인 해외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 국내 방사선이용(원자력기술) 기업

나. 사업 내용

- 원자력기술 수출정보서비스 및 해외시장정보 조사·제공
-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수출 애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
- 원자력 산업 및 기술기업 등 수출 관련 각종 실태조사·분석자료 제공
- 원자력기업에 대한 글로벌마케팅(해외전시, 해외홍보 등) 지원
- 원자력기술 수출지원 정보포털서비스 운영

다. 주요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지원
 - 사업목적
 - 가. 원자력기술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거래기회 제공 및 수출 촉진
 - 지원내용
 - 가. 개별참가 : 원자력 관련 해외전문전시회 참가비용(부스료, 장치비, 운송비 등) 중 500만원 이내 지원
 - 나. 공동참가 :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며, 전시장 부스 및 기타 운영비용 지원

- 원자력기술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
 - 사업목적
 - 가. 원자력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전시회, 글로벌마케팅, 해외시장정보제공 등 수출 육성기업으로 집중 지원
 - 지원내용
 - 가. 매년 기업 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
 - 나. 수출지원단 주관 해외전시회 및 해외공동전시회 우선 지원
 - 다. 해외전시회, 수출교육, 시장정보제공 및 해외홍보, 수출마케팅 등 다양한 세부사업 지원

- UN조달물자등록 지원
 - 유엔본부를 비롯한 40개 기구(IAEA포함)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등록서비스 지원
 - UN조달물자 등록 방법
 - 가.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홈페이지
 - 나. 수출지원단 홈페이지 → 수출가이드 → UN조달물자등록안내 → 등록과정 샘플보기

- 아톰엑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가. 원자력기술 수출노하우 공유를 통한 수출기업간 수출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출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 정책 건의
 - 지원내용
 - 가. 회원사 방문 견학, 리더십강화 워크숍,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수출로드쇼 등 활동 지원

- 수출지원 정보포털서비스 운영
 - 원자력분야 기술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정보포털사이트
 - 주요 정보서비스
 - 가. 수출가이드 : 해외홍보, 수출입절차, 무역가이드, 전략물자통제제도 등 소개
 - 나. 수출지원사업 : UN조달물자등록안내, 해외마케팅지원(전시, 홍보) 등
 - 다. 정보자료 : 전시행사, 수출지원사업 정보, 교육/세미나, 최신뉴스/동향, 각종 수출관련 보고서·정보, 뉴스레터 등
 - 라. 수출자문 : 수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수출자문 제공

문 의 처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수출지원팀 : 전화 (042)867-0193, 팩스 (042)867-0171
- ※ 홈페이지 : www.atomxport.com

7-11. 중국시장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단계별 중국 현지화 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출가능성 타진, 중국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잠재바이어 발굴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가시적인 수출성과 도출

가. 지원내용

- 현지 잠재바이어 대상 배포를 위한 마케팅 자료 및 중문 거래제의서 작성
- 현지 유관기관 리서치, 경쟁사 및 잠재바이어 대상 인터뷰 등 기초 시장조사 실시를 통한 시장보고서 제공
- 상담바이어 현황정보, 상담내용, 지원요청사항 등 월간 활동보고서 제공
- 지원기업당 5개 이상 구매가능 바이어 발굴
- 현지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서 작성 등 수출성사 단계까지 지속적인 무역대행 지원

| 문의처 |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수출지원팀 : 전화 (042) 867-0193, 팩스 (042) 867-0171
※ 홈페이지 : www.atomxport.com

7-12.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신수종·신기술·부품제품 등 전문화된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 전문가 해외연수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의 종사자(근로자)

나. 지원내용

- 해외시장 개척 및 기초조사부터 인증획득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 해외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획득 지원 :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해외인증 획득 시 소요 비용 지원
 - 해외시장개척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창구역할 수행
 - 신재생에너지 해외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 해외유망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추진 국내기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 지원분야 | 지원비율 | 지원기관 |
|---------------------|--|---|---------------------|
| 해외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 ○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전략분야 우선 |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해외시장개척 지원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자유공모 | ○ 참가비용의 50~75%이내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협회 * 수출지원 기업 공모 | ○수출 인프라구축 및 자문지원 ○수출금융·보험, 해외시장정보 | 신재생에너지 협회 |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 ○ 자유공모 - 수의계약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 - 공개입찰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 | ○소요사업비의 50~75% 이내 * 프로젝트당 3억원 이내 | 신재생에너지 협회 |

* 지원내용은 2012년도 기준(2013년 변경 가능)

다. 지원비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라. 사업절차

- 공고 → 신청서 접수(지원기관) → 평가·면접(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 및 검증(평가위원 또는 지원기관, 필요시) → 선정
- ※ 공고시기 : 매년 상·하반기 (사업별 수요에 따라 조정)

문의처

- 해외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54
- 해외시장개척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58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신재생에너지협회 해외진출지원센터 02-529-6493~6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협회 F/S팀 02-529-4054~5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8-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여건조사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개인)가 입수한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상의 부존 가능성 및 개발타당성을 예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

가. 보조대상 사업

- 해외자원개발 희망업체의 기술지원 요청 광산
→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부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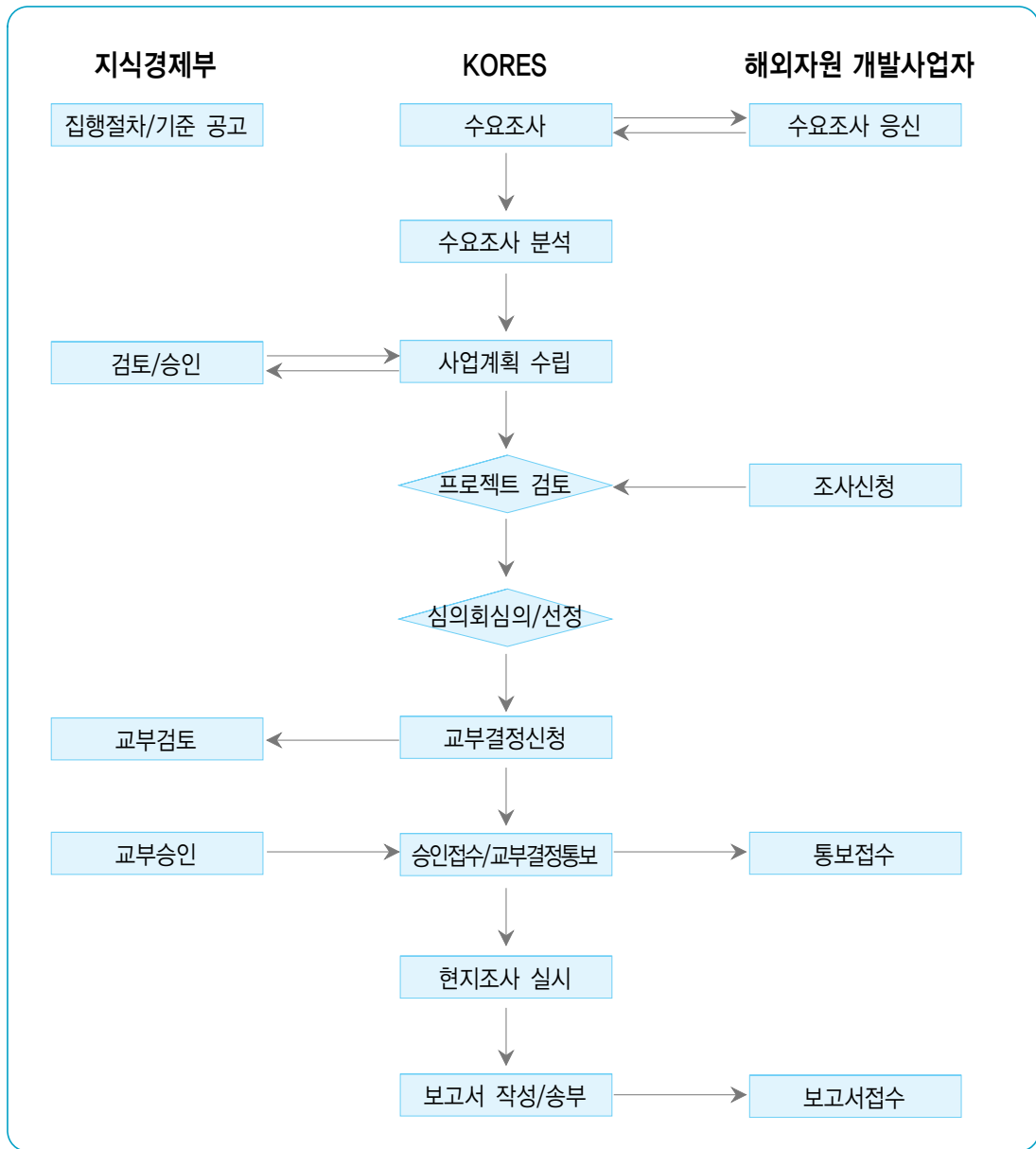
나. 보조대상 사업비

- 공사직원의 현지조사 출장비 및 조사비

다. 사업선정 검토기준(2013년 변경가능)

- 대상광물의 자주개발 필요성
-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 추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라. 업무 흐름도



문의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2)840-3522, 3530 팩스 (02)840-5888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사업안내 → 해외지원사업 → 조사지원

8-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기초탐사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개인)가 신청한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하여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가. 보조대상 사업

- 해외자원개발 희망업체가 지원 신청한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
 - 유망 탐사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획탐사
 - 정부 간 협력사업
 - 패키지형(자원-SOC) 자원개발사업
 - 공사 단독 혹은 민·관·공 공동추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
-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부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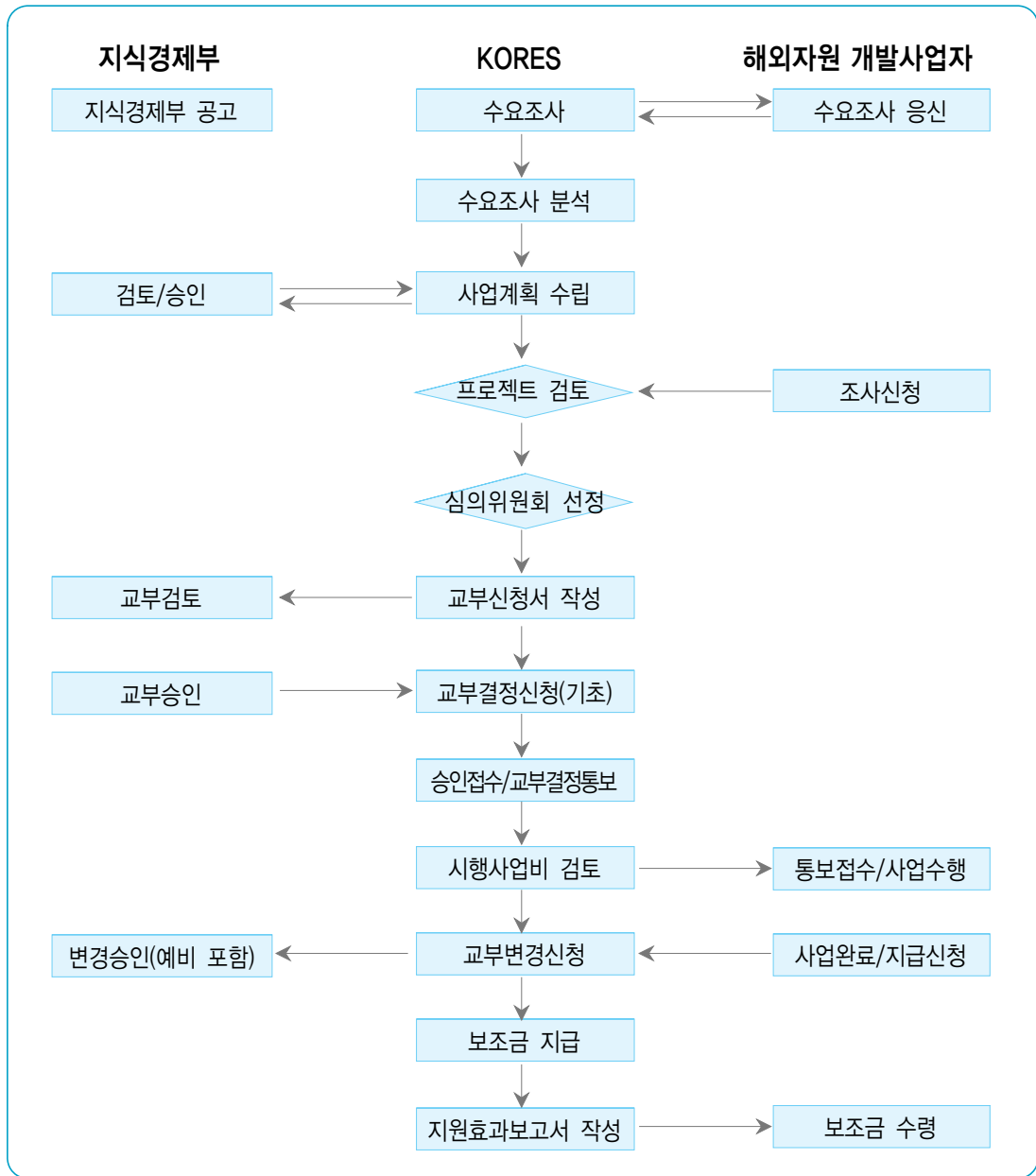
나. 보조대상 사업비

- 광산부존여부 확인을 위한 지질조사, 지구화학/지구물리탐사, 유망지역 광산 파악을 위한 트렌치, 시굴정 및 시험시추 등의 탐사비용
- 지원효율성 제고 및 적정 집행여부 관리 감독을 위한 광물공사의 사업관리 비용
- 유망 탐사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획탐사 비용

다. 사업선정 검토기준(2013년 변경가능)

- 대상광물의 자주개발 필요성
-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 기초탐사 지원필요성
- 추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라. 업무 흐름도



문 의 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략금속탐사팀 : 전화 (02)840-3536, 팩스 (02)840-5888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사업안내 → 해외지원사업 → 조사지원

8-3.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분인수타당성조사

해외자원개발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 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제공

가. 보조대상 사업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을 위한
 - 인수대상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사업타당성조사
 - 인수대상사업의 가치평가, 인수조건 및 법률검토
 -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부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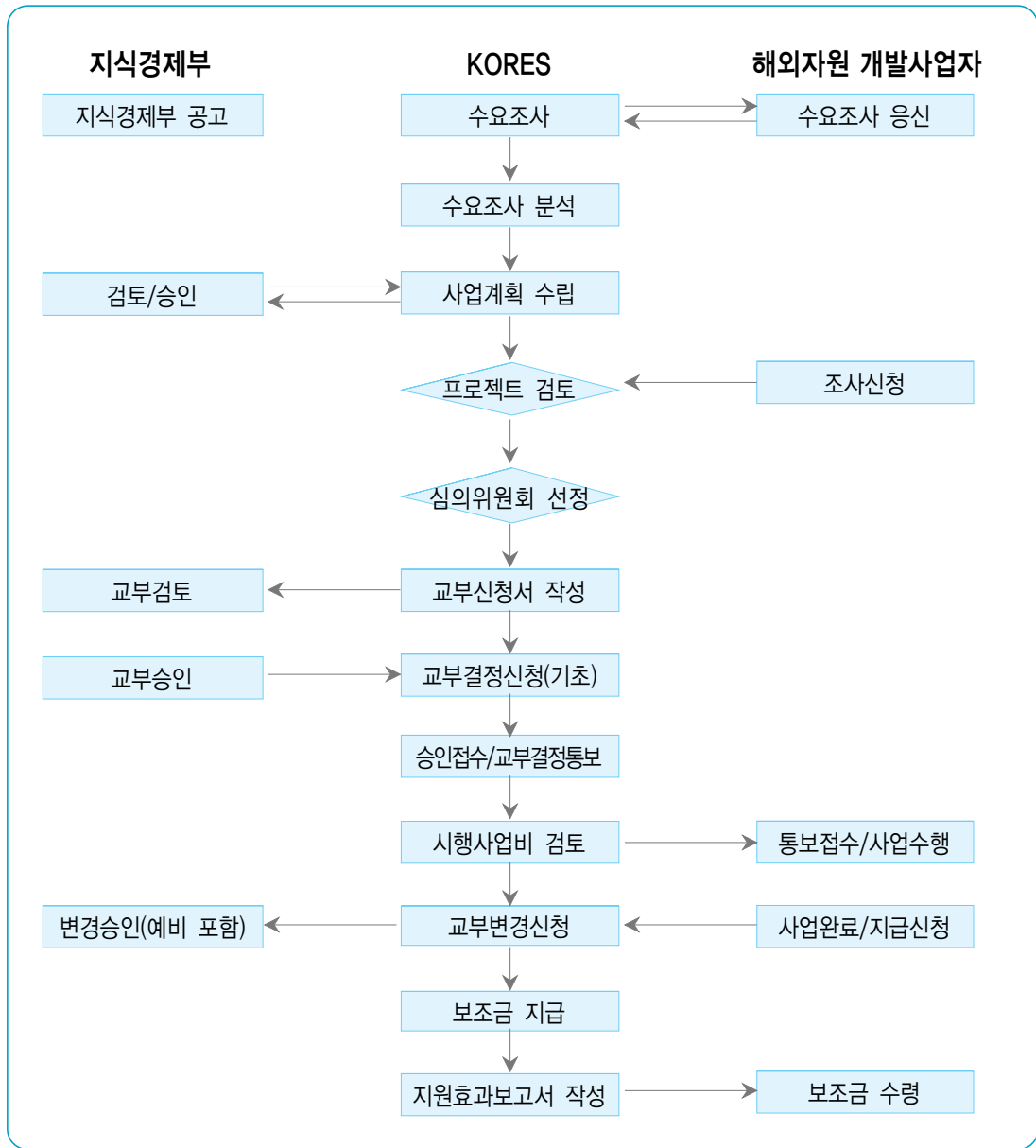
나. 보조대상 사업비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 파악과 적정 인수가 평가를 위한 기술, 회계, 법률 등 해당 분야의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 사업타당성 파악을 위한 현지실사 및 인수조건 조사비용
- 지원효율성 제고 및 적정 집행여부 관리 감독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관리 비용

다. 사업선정 검토기준(2013년 변경가능)

- 대상광물의 자주개발 필요성
-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조사연계성
- 추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라. 업무 흐름도



문의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2)840-3522, 3530 팩스 (02)840-5888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사업안내 → 해외지원사업 → 조사지원

8-4. 해외농업환경 조사 지원

세계 주요 농업지대의 농업환경과 투자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가별·권역별로 신뢰성이 높은 농업환경 정보망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시 활용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개발유망 및 조사희망지역에 대해 맞춤형 조사지원

가. 사업내용

1) 해외농업환경조사

- 지원 자격
 -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명시된 법인(비영리법인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보조 70% 이내로 조사유형별 차등 지원(30~70%)
 - 지원 대상 : 해외농업개발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여비, 전문가 인건비, 조사분석비)
- 지원 및 선정절차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국세청 납세증명,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지원 절차



- 대상자 선정 :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 실시 최종 선정
 - 서면심사 : 신청자의 재무상태 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면접심사 : 회사소개 및 환경조사 계획 등 심사

나. 조사결과 보고서 제공

- 해외농업개발서비스(OADS)에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게시
 - 홈페이지 주소 : (PC버전) www.oads.or.kr / (모바일버전) www.oads.or.kr/mobile

| 참고 | 해외농업개발서비스(OADS) 주요 내용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사업안내 | -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해외농업 진출현황 |
|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22개국) | - 주요내용 : 대상지역의 농업환경, 물류환경, 인프라, 법제도 등 - 대상국가 :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칼리만탄), 러시아(연해주),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터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스토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모잠비크 |
| 물류정보 (11개국) | - 주요내용 : 주요국가 물류현황 및 국내도입 경로, 비용 정보 - 대상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라질 |
| 가격정보 | - CBOT 제공 주요 곡물 일일 가격정보 제공 |
| 해외통신원 현지소식 (10개국) | - 주요내용 : 주요국가의 최신 농업관련 소식 제공 - 대상국가 : 미국, 브라질,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

| 문의처 |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 전화 (031)420-3293, 팩스 (031)423-6570
- ※ 홈페이지 : www.oads.or.kr

9. 노무관리 · 해외취업 지원

9-1. 노무관리 지원

글로벌 경제하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경영을 함에 있어 중요한 분야인 노동법, 노무관행, 합리적 노사관계 설립 등 노무관리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기 진출 기업의 원만한 경영을 지원

가. 대상 기업

- 해외에 진출한 모든 한국 투자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

나. 지원 사업

- 해외투자기업 지원
 - 진출국 해외 현지 노사관계 세미나 개최
 - 해외 진출 한국 고용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현지 노동조합 간부, 진출국 정부(노동부) 등 노무 및 노사관계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단체협상, 임금, 노동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등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토의하는 기회 제공
- 국가별 노무관리 설명회
 - 해외 진출한 한국 고용주 및 인사노무 관리자들에게 현지 최신 노동법 개정 등 환경 변화, 노무관리 관행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국내에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주로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위주에서 남미와 동유럽으로 범위 확대)
- 노무관리 지원단 파견(1년에 2-3개국 방문)
 - 고용노동부, 현지 고용노동관, 민간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 한국 상회와 협조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에 대해 조언

○ 해외조사 사업

－ 국별 노무관리 안내서 및 노동법령집 발간

- 우리나라 기업들이 집중 진출하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과 브라질 등 신규 진출국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보, 노동법령을 매뉴얼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투자 및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 대사관, 한국 상공회의소, 해외 현지세미나 등을 통해 배포

－ 해외노동정보 제공

- 각국의 노동 관련 현안 및 노동법, 노무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 (www.koilaf.org)를 통해 제공
- 관련 자료를 책자로 발간 및 배포

| 문 의 처 |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화 (02)2110-7437, 팩스 (02)507-4755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교류협력팀 : 전화 (02)6021-1074, 팩스 (02)6021-1483
- ※ 홈페이지 : www.koilaf.org

9-2.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 지원

KOTRA의 79개국 114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국내기업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고급인재의 발굴 및 채용을 지원. 인재 발굴, 채용 인터뷰 주선, 학력 및 경력 검증, 고용계약 지원, 비자추천(골드카드 발급), 한국어 교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서비스

○ 114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 및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국내 기업(중소기업 우선),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 이용 수수료
 -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무료
 - 2. 대기업: 1,100,000(VAT포함), 직종별 1명 채용 기준
- 유치 대상: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
 - * 경영자,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금융·의료·디자인·건설·첨단 산업 관련 전문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1(교수)~E-7(특정 활동) 및 D-8(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인재 (단,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일부 제외)
 -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또는 학사이면서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석·박사
- 지원절차
 - ① 발굴 신청 → ② 해외 KBC 인력발굴 → ③ 인재 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검증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온라인 비자 추천 → ⑧ 국내 정착 지원 및 사후 관리

나. 글로벌 인재 발굴 맞춤형 서비스(OPS)

○ 국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유료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인재 정보 조사, 해외출장 지원, 채용공고 지원, 채용 설명회 개최 지원 등
- 이용 수수료 : 상호협의 결정
- 계약주체 : 국내 기업과 해외 무역관

다. 골드카드(Gold Card) 발급

-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골드카드)를 발급하고,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하여 출입국상의 특혜 부여

- 골드카드 발급 대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학사 + 경력 1년, 석·박사
(단, 국내 학위 취득자일 경우 학사 이상)
- 지원 분야 : IT,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기술 경영 등 8개
첨단기술 분야
- 골드카드 특혜 내용 : 비자 발급 상한기간 최대 5년, 복수비자 발급, 영주권 발급 우대,
배우자 취업 허용, 가사보조원 동반, 이직 가능
- 골드카드 발급 절차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검증 조회
→ ⑤ 외부심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골드카드 다운로드 → ⑦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라. 글로벌 인재 정보 DB 구축 및 운영

- Contact KOREA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글로벌 인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제공

※ 모든 서비스는 Contact KOREA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를 통해 이용 가능

문 의 처

- KOTRA 글로벌인재사업단 : 전화 (02)3460-7373/7396, 팩스 (02)3460-7915
이메일 master@contactkorea.go.kr

9-3. 해외취업 알선

한국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고용주에게 고용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경력 및 언어능력을 갖춘 한국인재를 알선

가. 관련 홈페이지 : 월드잡(www.worldjob.or.kr)

- 채용정보 : 해외진출 기업체, 해외 현지 기업체 등의 한국인재 구인공고
- 인재정보 : 인재검색(직종별, 국가별, 상세조건검색), 맞춤형인재 조회

나. 업무추진방법

- 구인 상담 및 구인신청 접수 [구인업체 → 공단]
 - 구인(알선) 절차 및 방법 안내
 - 월드잡 기업회원 무료 회원가입 및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업로드
 - 채용조건, 자격조건, 근무조건 등이 명시된 구인신청 접수(월드잡 기업회원 무료가입 후 구인신청)
- 구인업체 및 구인사실 확인 [공단, 재외공관]
 - 취업국 재외공관의 해외취업담당관을 통하여 현지 구인업체 현황 및 구인사실, 취업비자 가능성 등 확인
- 구인공고 및 인력모집 [공단]
 - 월드잡 사이트에 게재하여 구인공고에 적합한 인력 모집
- 구인조건 해당자 알선 [공단 → 구인업체]
 - 구인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의 이력서 송부(월드잡 홈페이지 및 기업체 채용담당자 메일 송부)
- 선발 및 채용지원 [공단 → 구인업체]
 - 구인기업에서 서류전형 실시
 - 필요시 면접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면접장소 및 시설 등)
- 채용사실 및 근로자출국 확인 [구인업체 → 공단]
 - 채용확정 및 근로자 출국 후에 관련사실 통보
 - 재직증명서, 계약서 및 취업비자 사본 등 관련서류 송부(FAX, 스캔 후 이메일 등)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콜센터 : 전화 1577-9997, 팩스 (02)717-6358
 - ※ 홈페이지 : www.worldjob.or.kr → 사업소개 → 월드잡사업소개

9-4.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어학 및 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및 청년실업률 해소

가. 연수과정 개요

- 연수대상
 - 만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30% 내로 30세 이상 지원 가능)
 - 해외여행 및 해당국가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수기간 : 4~8개월
- 연수분야 : IT, 비즈니스, 호텔서비스 등 취업 가능한 전 직종

나. 연수과정 운영방법

- 민간알선기관, 교육기관 등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위탁 운영

다. 연수기관 자격요건

-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자
- 연수수료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의 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자
- 국내 또는 해당국가에서 연수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등을 확보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자
- ※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컨소시엄 체결·참여 가능)

라. 주요 취업국가

-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취업 연수사업 흐름도

| 사업주체 | 내용 | 세 부 내 용 |
|---------|------------------|--|
| 공 단 | 연수기관 모집 | ○ 공개 모집 - 일간지(신문, 무가지), 취업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등 |
| 연수기관 |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내용 - 해외수요처 발굴내역, 연수시설·장비, 연수생 선발·관리, 교과과정, 연수생 사후관리, 연수비용 등 |
| 공 단 | 연수기관 선정·통보 | ○ 연수기관 선정 방법 - 연수기관 선정위원회 개최(노동부·공단·학계 등 5명) - 심의내용 : 연수실시능력, 과거 연수실적 등 평가 |
| 연수기관 | 연수생 모집·선발 | ○ 연수생 자격 - 청년 미취업자,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대졸, 국민기초생활수급, 장기 실직자 등 우선선발 |
| 공단·연수기관 | 약정체결 (공단 ↔ 연수기관) | ○ 약정 내용 : 연수생 자격기준, 출결관리, 연수기관 점검, 연수비 지원, 취업률 부분(약정취업률 50%), 약정해지 및 제재조치, 연수비 환수(목표 미달시 10%) 등 |
| 공단·연수기관 | 연수과정 운영 | ○ 공단 - 연수비 지급, 연수기관 지도·점검(연수과정 중 1회 이상), 연수생 출결사항 점검 등 ○ 연수기관 - 연수생 교육, 연수생 상담, 해외취업 정보 제공 |
| 연수기관 | 연수생 해외취업 | ○ 연수생 해외취업 - 해외취업 알선, 구인업체 면접, 고용계약 체결 및 비자발급 지원 등 - 연수생 출국 지원 등 |
| 연수생 | 출 국 | ○ 해외 현지 업체 근무를 위한 출국 |
| 공단·연수기관 | 사후관리 | ○ 연수과정 수료자 현황보고(연수기관) - 수료 후 3개월, 6개월 시점 · 해외취업자, 미취업자 현황(국내취업, 진학 등) ○ 해외취업자 현황 점검(공단·연수기관) - 수료 후 12개월 시점 · 이직횟수(1회, 2회 이상), 국내귀국 현황(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해외취업자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콜센터 : 전화 1577-9997, 팩스 (02)717-6358
※ 홈페이지 : www.worldjob.or.kr → 사업소개 → 월드잡사업소개

9-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현지 교육 여건을 감안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식당 경영주·조리사·홀서빙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외국인의 한식 이미지 제고

가. 교육목적

-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로 외국인의 한식 이미지 제고

나. 교육기간 : 협약 시 ~ 11월말

다. 교육대상(안) : 9개국 13개 도시 / 2,500명 이상

- 중국(상해, 광저우, 연변, 칭다오), 일본(도쿄), 미국(LA, 애틀랜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영국(런던), 캐나다(토론토),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몽골(울란바토르)

라. 교육방법(안)

- 대상 국가별·교육대상별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시간 안배
 - 경영주 : 세미나 형식을 가미한 사례위주, 문제해결 위주의 교육
 - 조리사 : 참석 가능 시간대인 오전(09시-12시)·오후(2시-5시)를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가 높은 메뉴강좌를 개설하고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추진
 - 홀 서빙 :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능한 시간에 식문화·서비스 교육
 - 현지강사 : 식품·조리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향후 현지 한식강사로 육성

마. 교육비 : 국고부담

바. 주요 교육내용(안)

- 경영주 : 성공 한식당 사례, 한국의 한식 트렌드, 홍보 및 마케팅 기법 등
- 조리사 : 한식 조리 이론 및 실습 교육(현지 식재료 이용법, 위생교육 등)
※ 현지 교육생 니즈를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메뉴별 교육을 개설하고 수강생이 선택하여 수강
- 홀 서빙 : 식문화 및 서비스 교육(고객응대법, 테이블 세팅, 커뮤니케이션방법 등)
- 현지강사 : 한식강의법, 한식조리 심화교육, 한식 프로모션 행사 진행 기법 등

| 문의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외식진흥팀 전화 (02)6300-1754
- 농림수산식품부 : 외식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67
※ 한식세계화홈페이지 : www.hansik.org

9-6.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업계의 니즈를 반영한 커리큘럼과 현업 실무 강사진의 교육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플랜트 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플랜트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취업을 확대하고자 함

가. 교육대상

- 4년제 공과대학 졸업(예정)자(화공,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 플랜트업계 전직 희망자(실업자)

나. 강사진 : 플랜트 업계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현업 실무 강의

다. 교육일정 : 연 4기수 이상(12년 12월, 13년 3월, 6월, 9월, 12월) 교육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라. 교육특전 (※ 교육 참가비 : 국비무료 교육)

- 과정별 최우수수료자 지식경제부 장관상
- 우수수료자 ‘플랜트해외현장실무교육과정(해외인턴)’ 지원 시 가점부여
- 최대 12학점까지 소속 학교 학점 인정(학교별 상이)

마. 교육과정

| 구 분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
| A. 기본과정 | 3주 | - 플랜트산업 기본교육 / 타 전공이해 종합교육 |
| B. 전문과정 | 7주 | - 전공별(화공, 기계배관, 전기계장, 토목건축)현업 맞춤형 교육 실시 -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 프리마베라(공정관리 Tool), 3D Modeling, ProII 등 전산 실습교육 병행 실시 |
| 합 계 | 10주 | |

문 의 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PKC센터 : 전화 (02)6925-5213, 팩스 (02)527-7616
- ※ 홈페이지 : www.pkcc.kr

9-7. 플랜트 해외 인턴 지원

해외플랜트현장 및 지상사로 대학교졸업(예정)자를 인턴사원으로 파견하여, 참여기업의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료, 비자발급 및 해외상해보험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해외현장 및 지상사의 업무수행능력과 참가자의 취업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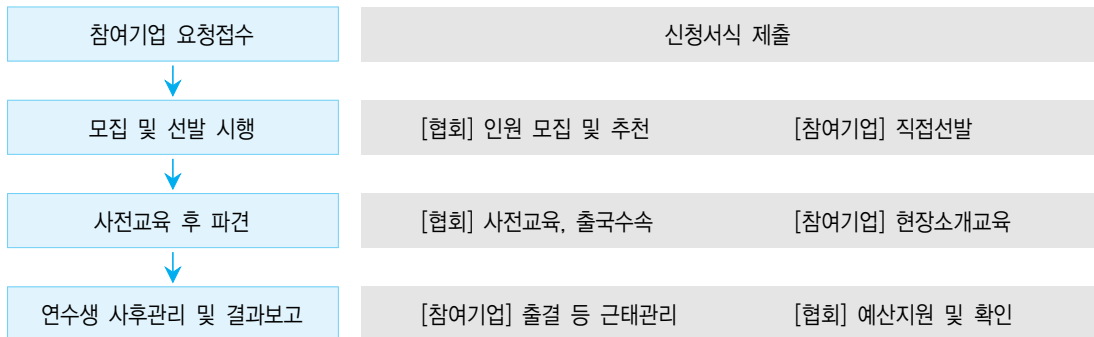
가. 지원대상

- 해외플랜트 시공현장 및 해외운영플랜트
 - 해외 영업 지/상사 및 유관기관 해외 지사
- 대학졸업(예정)자 중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참여기업 요청전공자

나. 지원내용 : 최대 2개월 간 파견비용 전액

- 국비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용, 해외상해보험비용 전액
 - 해외체재지원수당(25,000원~30,000원(日) / 참가자본인에게 직접지원)
- ※ 해외현장숙식 및 교통지원은 참여기업 지원

다.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PKC센터 : 전화(02)6925-3455, 팩스(02)3452-6616
- ※ 홈페이지 : www.pkcc.or.kr

9-8. 해외사업 퇴직전문인력 채용박람회

해외사업 유경험 퇴직 전문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중소기업 매칭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 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유경험 전문인력부족 현상해결 및 해외투자진출 활성화 도모, 조기 퇴직한 해외 전문 인력에게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

가. 사업내용

- 국내 중견·대기업 등에서 퇴직한 해외사업 및 해외근무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문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해외투자 진출희망 중소기업과 매칭지원

나. 전문인력 및 채용희망기업 조건

- 전문인력
 - 자격요건 :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해외근무 유경험자 및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한 간부급 직원으로 현지법인(사무소)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기준 : 해외근무 및 업무경험분야 서류전형 및 채용 예정 기업 면접(1차, 2차)
- 채용희망기업
 - 신규 해외투자 진출희망 국내 중소기업
 - 기 진출 해외투자기업 중 추가인력 채용희망기업

다. 채용박람회 개최(2012년도 기준)

- 박람회명 : 해외진출기업-퇴직전문인력 채용 박람회
- 개최규모 : 총 부스 46개
 - 채용희망 참가기업 : 46개사
 - 취업희망 전문인력 : 330명
 - 채용인원(추산) : 52명 (채용희망기업 업체 설문결과에 근거)
- ※ 2012.6.11.(월)~12(화) COEX A3,4홀에서 개최
- 2013년 개최시기 : 5월경(예정)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전화 (02)3460-7358, 팩스 (02)3460-7950

10. 법률 지원

10-1. 해외진출기업 상사중재제도 활용 지원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 또는 본국 기업과의 거래상의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알선,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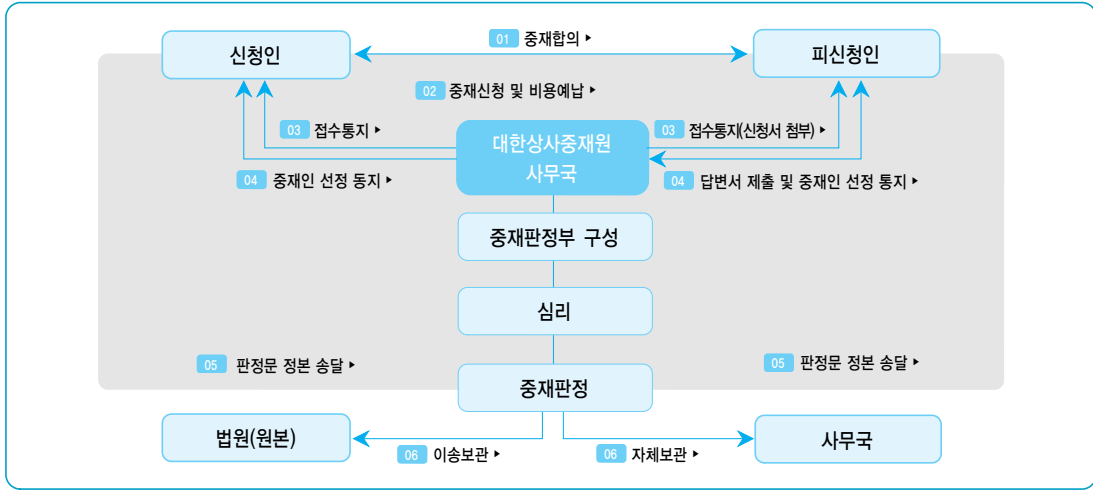
가. 중재의 개념

- 당사자 합의하에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

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 국내외에서의 효력 보장
 - 중재 판정은 국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가지며, 뉴욕협약에 의해 147개 가입국에서 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
- 전문가에 의한 해결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림.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는 무역·건설·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1,239여 명(국제중재인단 218명 포함)이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절차의 비공개
 - 중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 분쟁의 신속·저렴한 해결
 - 중재는 한 번의 판정에 의하므로 분쟁의 해결이 신속하며, 분쟁해결 비용도 절감됨
-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가 지속 가능

다. 중재 이용 절차



-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분쟁에 대한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면 편리
- 국문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1명/3명] 중재지[도시/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언어]
- 영문중재조항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라. 분쟁 무료 상담

-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들의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지도, 분쟁해결방법안내 등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내방, 전화, 홈페이지 통한 상담 모두 가능)

문의처

- 대한상사중재원 : 전화 (02)551-2000, 팩스 (02)551-2020
※ 홈페이지 : www.kcab.or.kr

10-2. 해외진출기업 투자분쟁제도 활용지원

최근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의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국제투자분쟁 모니터링센터 설치

가. 투자분쟁의 개념

-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ISD : Investor-State Dispute)이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중재)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

나. 투자분쟁의 개요

- 투자분쟁의 대상 :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
 - 투자분쟁은 투자협정(FTA, BIT 등)상의 의무 위반을 기본 전제로 함.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규정을 투자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협정에 규정된 절차(중재 등)에 따라 분쟁을 회부
-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 의무 규정의 예 :
 - 1)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2)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4) 보상 없는 수용 금지(Expropriation)
 - 5)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
 - 6) 고위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금지
 - 7) 자유로운 송금보장
 - 8) 이행요건 부과금지

- 투자유치국 정부의 보호 규정 위반 예 :
 - 1)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승인·인허가 번복
 - 2) 자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차별적 대우
 - 3) 부당한 관세, 법인세 부과
 - 4)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상 없는 수용(몰수)
 - 5) 내전 및 폭동 등으로 인한 투자 손실

- 투자분쟁 절차 : 투자협정에서는 복수의 중재절차를 두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이 모두 ICSID협약의 체약국이고, 당해 분쟁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
 -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 중재
분쟁당사자가 임의의 장소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 ICC 혹은 기존 상설 중재기관 중재

다. 국제투자분쟁 모니터링센터의 역할

- 정보 수집 및 제공
 - ISD 세미나 개최 및 참석
 - 투자중재판정사례집 및 국제투자분쟁연구 발간, 뉴스레터 발송

- 투자분쟁 관련 컨설팅
 - 투자유치국과 우리나라 간 투자협정 체결 여부 및 보호조항 확인
 - 투자 유치국내의 구제절차 안내
 - 투자분쟁해결 관할 확인 및 ICSID 및 기타 중재기관 규칙·절차 안내
 - ADR을 통한 소액투자분쟁 해결방안 상담

문 의 처

- 대한상사중재원 : 전화 (02)551-2069, 팩스 (02)551-2020
※ 홈페이지 : www.kcab.or.kr → 투자중재센터

10-3. 해외 법령정보 지원

세계 각국의 기본법, 경제법, 일반법을 포함한 주요 법령과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대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법제 전문서비스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world.moleg.go.kr>

나.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 주요 국가(2012년 현재 80개국, EU, UN)의 법률정보,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주요 검색사이트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구 분 | 주요 내용 |
|--------|---|
| 세계법제정보 | EU,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80개국의 법률정보, 연구보고서, 최신동향을 국가별로 취합하여 제공 |
| 테마검색 |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자원개발 관련 법제 및 선진 법제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자료 등을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분류·가공하여 제공 |
| 세계법제뉴스 | 최신 세계법제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 각종 보고서 등을 제공 |
| 관련 사이트 | 주요 국가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를 링크 |

문의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과 : 전화 (02)2100-2654, 팩스 (02)2100-2776
※ 홈페이지 : www.moleg.go.kr

10-4. 해외 세무정보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출국의 세정 및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안내

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 외국의 세제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자료실 → 발간책자 등

나. 국세청 발간책자 현황

(2012. 8월 현재)

과테말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캐나다, 태국, 터키,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일본, 영국, 폴란드,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화 (02)397-1407~8, 팩스 (02)723-9976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1. 청산 및 해외환류기업 지원

11-1. U턴기업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KOTRA에 U턴기업 지원센터 및 U턴기업 지원데스크를 설치, 정보제공 및 전문 컨설팅 실시

가. 목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전·철수 및 청산, 국내 정착 등)을 위한 전담창구를 국내외 설치·운영
- 국내복귀지원제도 안내 및 관련정보 제공, 상담 실시
- 정부, 지자체,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국내 복귀 지원

나. 주요 내용

- U턴기업 지원센터 및 지원데스크 설치운영
 - 설치장소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및 6개 해외무역관(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호치민, LA)
- 정보제공 상담컨설팅 및 수요발굴
 - 지자체, 산단공, FEZ, 업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순회 설명회 개최
 - 해외무역관, 해외 상의 등과 연계된 IR 개최(중국, 미국)
 -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및 리플렛 제작·배포
 - U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전화 (02)3460-7354, 팩스 (02)3460-7950
※ 홈페이지 : www.kotra.or.kr

11-2. 산업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환류 하는 경우에는 산업 단지 내 임대용지 분양 시 다수인과 경쟁하는 경우 최우선 순위부여

※ 산업단지는 973개소에 총 1,353km²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개발 중('12.6월말 기준)

가. 청약신청 및 선정 절차

-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가능여부 확인필요
 - 국가가 임대용지로 지정하고 개발자(정부 투자기관)가 임대청약공고를 하므로 동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접수 후 다수인과 경쟁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청약결과 당첨된 경우 개발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임대계약 체결
- * 국내기업에게 적용하는 제도이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턴기업은 완화 적용

나. 경쟁 임대 분양시 해외환류기업에 최우선 순위부여

- 청약접수 후 다수인과 경쟁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해외환류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부여

다. 임대용지 공급방법

- 대상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장기임대용지
- 임대기간 : 최장 50년 임대
- 연간임대료 : 조성비의 1~3%

라. 산업단지 임대분양 관련 홈페이지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www.ilis.kr
- 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임대산업단지: www.nbpark.or.kr

문 의 처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전화 (02)2110-8905~8, 팩스 (02)503-8952
※ 홈페이지 : www.mltm.go.kr
- 각 시·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11-3.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항만배후단지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기업, 수출입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가. 우대기업 범위 및 선정 절차

- 해외환류기업,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 항만공사 등 배후단지 관리주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임대면적은 150,000㎡ 이하임

나. 인센티브

| 구 분 | 주요 내용 |
|--------|--|
| 입주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해외환류기업 - 국내외 물류기업 |
| 조세감면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천만\$ 이상 - 관광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
| 조세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소득세: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법인세율: 1억이하 13%, 1억 초과 25% - 지방세: 8~15년 |
| 관세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3년간 면제 |
| 임대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신항 기본 월 281원/㎡ (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43원, 106원, 168원/㎡ 차등 적용) - 광양항 기본 월 200원/㎡ (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30원, 75원, 120원) ※ 청도항 보세항구 1,440원/㎡, 대련항 보세항구 625원, 천진항 보세항구 850원 (2008년 10월 현재) |
| 임대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50년 |

다. 항만배후단지 기업입주 안내

- 부산항만공사 : www.busanpa.com
 - (중앙상단)항만운영건설 → 신항 선택 → (우측)신항 항만배후단지 BDIS 배너 선택
- 인천항만공사 : www.icpa.or.kr
 - (좌측)IPUS 인천항포탈 → 정보서비스 → 항만건설정보 선택
- 여수광양항만공사 : www.ygpa.or.kr
 - (중앙상단)여수광양항 → 광양항 배후단지 → 배후물류단지

문 의 처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 (02)2110-8534, 팩스 (02)504-7306
-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 : 전화 (051)999-3164~7, 팩스 (051)988-8003
-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마케팅팀 : 전화 (032)890-8218, 팩스 (032)8866-406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마케팅팀 : 전화 (061)797-4388, 팩스 (061)797-4380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2-1. KOTRA 글로벌연수원

국제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해외진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교육목적** : 우리나라의 무역진흥과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는 KOTRA의 교육연수 전문기관으로, 글로벌 시대의 생생한 현장 정보전달을 통하여 참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나. **교육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기관 관계자

다. **강사진** :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강사진

라. **해외진출과정** : 신흥시장집중분석, 중국내륙시장진출, 해외투자진출실무 등 연간 60여회

| 문의처 |

- KOTRA 글로벌연수원 : 전화 (02)3497-1184/1192, 팩스 (02)3497-1622
※ 홈페이지 : www.kotraacademy.com

12-2. 해외건설협회

가. **교육목적** : 건설기업 임직원의 해외건설·플랜트 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글로벌 건설시장에 적합한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나. **교육대상** : 해외건설·플랜트산업 종사자 및 취업 희망자, 유관기업·기관 임직원

다. **강사진** : 해외건설·플랜트 업계 및 금융·컨설팅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라. 교육일정 및 과정

| 구분 | 과정명 | 주요 내용 | 시기 |
|-----------------|----------------------|--|-----|
| 재직자초급 과정 | 해외건설 입문과정 | 신입직원의 해외건설 직무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절차를 비롯한 견적, 계약 및 클레임, 보증 및 금융, FS 등 교육 | 3월 |
| |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기초 실무과정 | 건설기업 임직원의 건설비즈니스 영어(Construction Business English) 구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주 및 공사관리 실무, PT 및 협상 기법 등 영어 교육 | 4월 |
| | 해외건설 공정관리 기초과정 | 프로젝트의 공기 준수를 위해 중요한 공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공정관리 절차 및 기법, CPM(스케줄링 등), EVMS(실적관리, 측정 및 분석 등), 공정관리 Tool에서의 Primavera, 프로젝트 Planning·Executing·Reporting 등의 이론 및 실습 교육 | 9월 |
| | 해외건설 영어문서 작성과정 | 해외건설 업무수행을 위해 중요한 영어문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해 건설용어 이해, PQ 및 BID 영문 다큐먼트 분석 및 해설, 영문 계약서 분석 및 해설, 공사수행 관련 감리자·발주자 영문서식 해설 및 문서 작성·해설 등 교육 | 10월 |
| 재직자 중급 과정 | 해외 철도프로젝트 실무과정 | 해외 철도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철도 운영·투자자금 조달·리스크분석 사례 등 교육 * 철도협회와 공동 개최 | 3월 |
| |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건설 금융 조달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PF 조달 및 리스크 관리, 외환관리, 수출보험, ECA 자금지원 제도 등 교육 | 5월 |
| | 해외프로젝트 타당성분석 실무과정 |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FS 관련 이론, 사례 분석 및 실습 교육 | 5월 |

| 구분 | 과 정 명 | 주요 내용 | 시기 |
|--------------|-------------------------|--|---------|
| |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과정 | 국제표준 건설계약서의 전반적 이해를 통한 계약 및 클레임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를 위해 건설계약서 분석, Claim 실무, 내전지역 계약관리 방안, 부동산 개발사업 법적 이슈 분석, 프로젝트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사례 등 교육 | 7월 |
| |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가 과정 | 해외엔지니어링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및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재무분석 및 타당성분석, 프로포잘 작성 및 사례분석, 엔지니어링 계약관리 및 사례 등 교육 | 8월 |
| 재직자 고급 과정 | 해외건설 계약전문가 집중과정-3회 | 계약 및 클레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 건설계약서 분석 및 해설 교육 | 3·6·12월 |
| |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전문가 과정 |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FS 관련 이론, 사례, 금융리스크 분석 및 관리, PF사업 평가 및 사례 연구, 경제성 및 재무분석 실습 등을 통한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 위한 교육 | 9월 |
| | 해외건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과정 |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능력 배양 및 PM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PM 이해, 외자재 조달 관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금융리스크 관리, IT 활용 프로젝트 관리, 공정관리 사례 분석, 인적자원 및 안전위험 관리, PM 의사소통 등 교육 | 11월 |
| 재직자 소수 집중 과정 |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 집중과정(I) | 건설기업 임직원의 건설비즈니스 영어(Construction Business English) 구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문서 작성 핵심, 협상·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에 대해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 | 5월 |
| |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 집중과정 |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FS 이론, 재무분석, 경제성분석, FS COMFER 실습 등에 대해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 | 7월 |
| | 해외 건설자재 조달 실무 집중과정 | 적기 준공에 필수적인 해외 건설자재 조달 관련 조달절차, 해외공급선 발굴, 원가계산, 대금결제 및 보험, 조달 시물레이션 등에 대해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 | 7월 |
| | 해외건설 금융 외환관리 보증 실무 집중과정 |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외환관리, 보증보험 관련 지식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금융 이해, 해외 PF 사례 및 적용 금융상품, 수출금융제도 및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해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 | 9월 |
| | 해외건설 공정관리 심화과정 | 프로젝트의 공기 내 완성을 위해 중요한 공정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소수를 대상으로 프리마베라 활용(모듈 및 운영프로세스 등), 성과측정 및 분석(EVMS 적용방법 등) 등을 실습 위주로 심도 있게 교육 | 10월 |
| | 해외건설 리스크분석 실무과정 | 프로젝트 리스크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위험관리 프로세스,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식별, 모니터링 및 통제 등에 대해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 | 10월 |

| 구분 | 과 정 명 | 주요 내용 | 시기 |
|-------------------|--------------------------|---|---------|
| |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 집중과정(II) | 건설기업 임직원의 건설비즈니스 영어(Construction Business English) 구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문레터 작성 및 계약조건 사례 등의 실무영어 이해, 감리자 및 발주자 대상 영문레터 작성, 협상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에 대해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 | 11월 |
| 관리자인력 양성 사업 | 해외건설 실무학기제 과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건설·플랜트 신규 인력 양성 및 공급을 목적으로 대학(원)생 소수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입문, 견적 및 수주·계약 관리, 금융조달, 건자재 조달, 공정관리 프로그램 실습 및 건설비즈니스 영어, 아랍어 기초 등에 대해 학기 중 교육 | 9~11월 |
| | 대학생 해외건설·플랜트 인력양성 과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건설·플랜트 신규 인력 양성 및 공급을 목적으로 대학(원)생 소수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입문, 견적 및 수주·계약 관리, 금융조달, 건자재 조달, 공정관리 프로그램 실습, 플랜트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사례, 건설 비즈니스 영어 등에 대해 방학기간 중 교육 | 하·동계 방학 |
| | 해외건설·플랜트 전직·전환 취업과정 | 해외건설·플랜트 분야로의 전직·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경력자에게 해외건설 및 관련 분야에서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건설 관리실무, 플랜트/토건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현장실무 능력 및 공정관리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교육 | 4~6월 |
| | 해외건설 PM 전문가 양성과정 (중앙대) | PM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업계 전문가와 자체 전공학과의 교수진을 활용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해외건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일반, 국제금융, 건설PM, 해외건축, 해외토목/플랜트 등 5개 모듈별 이론 및 실습 교육 | 5~12월 |
| 재직자 컨소시엄 사업 |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과정 (충북대) | 계약관리와 클레임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업계 전문가와 자체 전공학과의 교수진을 활용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해외건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사업관리, QS, 분쟁해결 및 클레임 등 7개 과목에 대해 이론 및 실습 교육 | 6~11월 |
| |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과정 (한양대) | 건축기술 및 건설사업 관리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업계 전문가와 자체 전공학과의 교수진을 활용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해외건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 관리 및 개발전문가 과정의 CCM 과정, 첨단 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PSE 등에 대해 교육 | 5~12월 |
| 계 | 25과정 | | 28회 |

※ 상기 교육과정은 시기·사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 및 조정될 수 있음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전화 (02)3406-1079 팩스 (02)3406-1121

※ 홈페이지 : www.icak.or.kr

1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가. 교육목적 :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흥경제부상국들에 대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도모

나. 교육대상 :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의 교육 대상국 지역 담당자, 기타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한 자

다. 강사진 : 국내 및 현지의 교육 대상국 전문가

라. 교육과정

| 구분 | 과 정 명 | 시 기 | 주요 내용 |
|--------------------------|---------------------|----------|--|
| 정규과정 (국내교육 및 현지연수) | 러시아 전문가과정 | 2005.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과정은 국내 및 현지교육으로 구성(연2회) ○ 각 국가별로 현지협력기관의 협조 하에 진행 ○ 국내교육(4~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한 학기 분량의 개론적인 지식을 쌓는 기회 제공 ⇒ 국가 개황, 무역·금융 등 산업사례, 법률 및 노무 관계 등 기타 ○ 현지연수(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가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현지 주요 기관 방문 및 세미나, 그룹 활동, 현지 최신 동향 파악 -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 지속적인 정보교류 |
| | 브라질 전문가과정 | 2006. 5 | |
| | 인도 전문가과정 | 2006. 9 | |
| | 베트남 전문가과정 | 2007. 3 | |
| | 러시아 전문가과정 | 2007. 9 | |
| | 중앙아시아 전문가과정 | 2008. 4 | |
| | 인도네시아 전문가과정 | 2008. 11 | |
| | 중앙아시아 전문가과정 | 2009. 6 | |
| | 동유럽 전문가과정 | 2009. 10 | |
| | 중원 메갈로폴리스 전문가과정(중국) | 2010. 6 | |
| | 중남미 전문가과정 | 2010. 11 | |
| | 몽골 전문가과정 | 2011. 6 | |
| | 아프리카 전문가과정 | 2011. 11 | |

| 구분 | 과 정 명 | 시 기 | 주요 내용 |
|-----------------------|----------------------------|----------|---|
| 이슈별 집중과정 (국내교육) | 베트남 이슈별 집중과정 | 2007.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는 신흥경제국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국내교육(연 2~3회) ○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최소 연1회는 지방에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및 경제 현안 최신정보 - 산업 진출 사례 - 금융, 세무 및 법률 등 기타 |
| | 베트남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 2007. 11 | |
| | 인도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 2007. 11 | |
| | 베트남 이슈별 집중과정 | 2008. 7 | |
| | 중양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 2008. 10 | |
| | 동유럽 이슈별 집중과정(서울) | 2009. 4 | |
| | 동유럽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 2009. 4 | |
| | 중양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 | 2009. 6 | |
| | 이슈별 집중과정 'FTA 활용방안'(서울) | 2010. 3 | |
| | 이슈별 집중과정 'FTA 활용방안'(부산) | 2010. 4 | |
| | 몽골 이슈별 집중과정 | 2010. 9 | |
| | 아프리카 이슈별 집중과정(서울) | 2011. 4 | |
| | 아프리카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 2011. 4 | |

※ 상기 교육과정은 2005~2010 기준이며, 2011년은 변동이 될 수 있음

문 의 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협력팀 : 전화 (02)3460-1042, 팩스 (02)3460-1043

※ 홈페이지 : www.kiep.go.kr

12-4. 전시사업자 교육

가. **교육목적** : 실질적인 해외전시회 참가기획 및 전략수립, 부스관리요령 등의 교육을 통한 해외전시회 참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 **교육대상** :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업체 임직원

다. **교육시기** : 연 1회, 2일간 교육 (추후 변경 가능)

라. **교육내용(안)**

| 일 정 | 교 육 내 용 |
|-----|---|
| 1일차 | - 국내외 전시산업 현황 - 마케팅 수단으로서 전시회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 |
| 2일차 | - 해외전시회 선정 요령 및 사전·사후 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제도 - 전시회 현장 부스, 인력 운영 및 홍보활동 - 해외전시회 참가 성공 사례연구 |

문 의 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화 (02)574-2024, 팩스 (02)574-2696
※ 홈페이지 : www.akei.or.kr



조세제도

1. 내국세
2. 관세

1. 내국세

1-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가. 세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1), 2) 중 선택 적용)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

$$\text{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면제} \cdot \text{감면비율})^*}{\text{법인세과세표준}}$$

*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으로 함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2)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절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당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가.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 체결국
 - 그리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방글라데시,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2014.12.31까지), 체코,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태국, 튀니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필리핀, 튀지 (29개국)
 - * 실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는 경우 조세조약의 관련내용(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 상당액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동일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가.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자회사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포함)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세조약의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
 - 종전에는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begin{array}{c}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
 \text{사업연도 법인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left(\begin{array}{l}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text{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 \text{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 \text{외국 납부세액} \times 50\%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종전에는 (1)의 방법만 적용하였으나 2008.2. 이후 지급받는 수입 배당분부터 (1) 또는 (2)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용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text{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frac{\text{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text{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란 자회사국가에서 다음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회사와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있는 경우 : 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납부세액공제
 - 자회사와 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 국외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1-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일정금액을 비과세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가.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나. 비과세급여의 한도

- 월 100만원(단, 원양어업 선박·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2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다.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계산

- 비과세급여는 월급여액과 한도액(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비교한 후 적은 금액을 비과세 하며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비과세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하며, 국외근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문 의 처

- 국세청 원천세과 : 전화 (02)397-1842~4, 팩스 (02)730-4340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5.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산출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함

가. 적용대상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나.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제3의 외국법인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다. 정상가격의 정의

-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며, 이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됨
-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 * 다만, 재해, 사업상위기, 기관의 압수,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미도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한차례 연장 가능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7~8,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121조의 2, 제121조의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 제출서식 및 대상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모든 내국법인
-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 '②'의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 '②'의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임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영)문 서식은 국세청 국(영)문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 국문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관련서식 → 법인세법상 제출서식
- 영문 ⇨ Resources → Tax Law/Treaty → NTS Notice

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인세법 제121의3)

▶ 위 개정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외국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 해외지사(연락사무소 포함)를 설치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 제출서식 및 대상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를 한 모든 거주자(당해사업연도 중 현지법인 청산·폐업 포함)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위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 공동투자자 각각 이 요건 충족 시 각각 제출대상임

○ 해외지사 명세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국외에 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거주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영)문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가능

- 국세청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관련서식 → 소득세법상 제출서식

문의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8.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가. 관련법

- 특례에 대한 일반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2조에서,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나. 종류 및 내용

| 종 류 | 내 용 |
|--|---|
| ①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12. 31까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
| ②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이 2012.12.31까지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③ 해외자원개발투자 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단,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 5% 적용 |
| ④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법인세법§57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에 5% 이상 직접 출자한 내국 법인 -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

| 종 류 | 내 용 |
|---------------------------------|---|
| ⑤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 15)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문 의 처

- 국세청 법인세과 : 전화 (02)397-1822~4, 팩스 (02)722-2483
 - 국세청 원천세과 : 전화 (02)397-1846~8, 팩스 (02)732-4340
 - 국세청 소득세과 : 전화 (02)397-1743~5, 팩스 (02)722-2482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외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적용대상자

- 경과세국에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2011.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나. 특정외국법인 및 경과세국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개념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경과세국”이라 함)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다. 경과세국의 개념

-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라.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개념 및 범위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범위는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마. 법인의 부담세액

-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세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바. 업종별 경과세국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적용

-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에 따라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가 달라짐

| 업종 | 규정 | 특정외국법인의 고정시설 유무 | |
|---|------------------------|---|---------|
| | |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 제조, 건설, 농축수산업, 광업, 소매업, 정보처리업 등 | 국조법§ 18① 본문 | 배당간주 안함 | 배당간주 과세 |
| 도매,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제외) | 국조법§ 18①1 |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또는 매입 거래 비율이 50% 이상시 배당간주 *단, 도매업의 경우 동일지역 비특수관계자에게 50% 이상 매출 시 배당간주안함 | 배당간주 과세 |
|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 국조법§ 18①2 국조법§ 18의2 | *배당간주 과세 *단, 지주회사가 4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 중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이 90% 이상시 배당간주 안함 | |

사. 경과세국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하한선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을 년으로 환산하여 2억 원 이하이면 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참고■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경우의 처리

-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경우 국조법§1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시키는 경우에는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과세이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조법§1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국기법§14 및 법법§4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합산과세하여야 함(재국조46017-102, 2000.7.27)

문 의 처

- 국제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1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가. APA의 목적

-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불확실성 제거
-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가능
-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른 보상조정을 통하여 이중과세문제 해결

나. 승인대상 거래

-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

다. 진행 절차

- 사전상담
 - APA를 공식 신청하기 전 AP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납세자와 APA 실무팀간 진행되는 회의로, APA 신청배경·신청자의 적격성 여부·주요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
- 신청서 제출
 - APA 대상기간, 대상거래, 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를 APA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제청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 ※ 소급적용 신청의 경우 쌍방 APA는 5년, 일방 APA는 3년 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 가능
- 심사
 - 일방적 APA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내 처리
 - 쌍방적 APA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일로부터 5년(최장 8년)내 처리

○ 사전승인의 효과 및 절차

- 신청인은 APA가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승인 내용대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는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로 간주
- 쌍방 APA의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계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 단,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당초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봄

○ 연례보고서의 제출

-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①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 ②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 ③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④ 기타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사전승인의 취소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①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② 거주자가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 ④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신청인의 권리보호

- APA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 또한 신청인이 APA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APA의 심사 및 사후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세무조사 등 기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함

문의처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화 (02)397-1406~8, 팩스 (02)723-9976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1-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음에 유의
 -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 또는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과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나. 신고대상 계좌 및 자산

-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기관에 보유된 은행계좌(예·적금) 또는 증권계좌로서, 파생상품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음
- 본인 명의의 계좌 외에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한 계좌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계좌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자산은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기 때문에, 증권계좌에 보유된 상장주식과 예수금은 신고대상 자산에 포함되지만, 채권, 펀드 및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다. 신고내용과 방법

- 신고기간은 신고대상연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은 신고기한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입증하는 증빙 등 별도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음

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내(매년 6월)에 해당연도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됨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부과기준 |
|--------------|--|
|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4% |
| 20억원~50억원 이하 |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
| 50억원 초과 |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

※ 20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율 3, 6, 9%를 적용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감경

| 구 분 | 과태료 감경비율 |
|---------|---|
| 수정 신고 | 6개월 이내 :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
| 기한 후 신고 | 1개월 이내 :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8-6363~6367,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개인), 법인세과(법인)
- ※ 홈페이지 : www.nts.go.kr

1-12.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신고의무

해외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는 지급보증이라는 용역의 대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

가.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지급보증이란 채권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함
- 지급보증은 채무보증과 이행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보증기관의 유무에 따라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됨

나.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기업 간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결정
 - 채무보증의 경우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각각의 은행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대출이자율의 차이(이행보증은 지급보증요율)를 정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정상요율(범위)을 신고 안내하고 있음

채무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결정(예시)

| 특수관계인 | 신용등급 | 대출이자율 | 정상가격 |
|-------|------|------------|-------------------|
| 모법인 | 3 | Libor + 2% | 차입금액 × 1% (3%-2%) |
| 해외자회사 | 5 | Libor + 3% | |

* 지급보증으로 얻는 자회사의 편익을 모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로 보는 방법

다. 채무보증 대가 제출서식 및 계산방법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8호(을)서식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text{지급보증 대가} = \text{차입금액(원)} \times \text{차입일수} \div 365 \times \text{정상요율}$$

* 기간별로 차입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적수방식으로 연평균 차입금액을 계산

라. 지급보증 대가의 세무조정 방법

1) 직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과소)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2) 간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국내 모기업의 보증의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대출은행에 보증신용장 등을 발행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정상대가 미(과소)수취분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료(Stand-by L/C 개설수수료 등)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문 의 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7~8,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2.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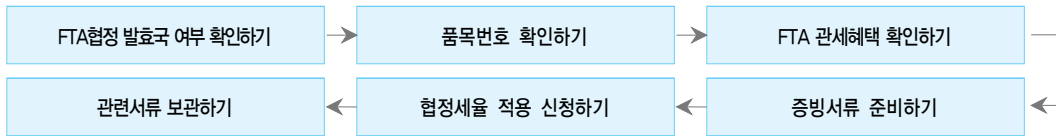
2-1. 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수입활용)

FTA 무역체제에서 협정 양 당사국의 당사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철폐(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가 규정됨.

- 수입 : 협정 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절차
- 수출 : 협정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제공하는 절차

가. 기본절차 : 상대국 수출자가 작성 또는 발급하여 보내준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 신청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 기본요건

| | |
|---------|--|
| ① 거래요건 |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
| ② 품목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
| ③ 원산지요건 | 원산지규정(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것 |
| ④ 운송요건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 (예외사항 확인 필요) |
| ⑤ 절차요건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

- 수입자는 기본요건 ①~⑤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확인 필요
- 특히 ⑤ 절차요건에 있어서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서식, 내용 등이 적절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 필요

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

- ① 우리나라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 증명서상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서류로 신고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수입자가 보관하다가,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② 수입통관 시 사정이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수입 신고하여 물품을 통관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일선 통관지 세관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필요 (한미FTA와 한-페루 FTA 적용대상 물품은 사본 제출도 가능)
- ③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인정받은 물품
 - 무역관계자가 수입물품 수입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 미화 1천불 이하 소액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 다만,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액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필요
- ④ 관세할당(TRQ)품목 협정세율 적용방법
 -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품목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관세율할당물품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세관에 제출
 - TRQ 품목은 별도 추천기관에서 공매 또는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 선착순방식에 의하여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추천기관과 추천방식, 한도 물량 등 확인 필요

※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가능 (메인화면 - 수입활용)

문 의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전화 (042)481-3202~6, 팩스(042)481-775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전화 1577-8577 (해외에서 82-2-3438-5199), 팩스 1577-8578
홈페이지 www.customs.go.kr

2-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수출활용)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가.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과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종 류 | 적용국가 |
|--|---------------------------|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나. FTA 수출활용 기본절차

- 기본절차 : 상대국 수입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하는 절차



- 기본요건

| | |
|---------|---|
| ① 거래요건 |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
| ② 품목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
| ③ 원산지요건 | 원산지규정(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을 충족 할 것 |
| ④ 운송요건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예외사항 확인 필요) |
| ⑤ 절차요건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

- 수출자는 기본요건 ①~⑤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확인 필요
- 특히 ③, ⑤번 사항의 요건에 있어서 수출자가 생산·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재료와 가공 공정을 검토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함

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① 기관발급의 경우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FTA)
 - 발급기관 : 세관(<http://fta.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
 - 필요서류 : 수출신고 수리필증/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 * 선적 후 발급 : 사유서와 선하증권 사본(수출물품 선적사실 입증서류)
 -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출력 가능
 - * 한-페루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자율발급 가능
- ② 자율발급의 경우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FTA)
 - 발급권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발급가능)
 - 필요서류 : 원산지 증빙자료 등을 발급권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 * 발급권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과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자체 비치 필요

라.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한-인도 | 한-EU | 한-페루 |
|--------|------------|--|----------|-----------------------------------|-----------------------|--------------------------------------|------------------|--|
| 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기관증명(5년간), 자율증명 |
| 증명주체 | 수출자 |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수출자 | 기관 ▶ 한국 : 세관 · 상공회의소 페루 : 통상관광부 자율 ▶ 수출자 |
| 증명서 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간 각자증명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통일증명서식 - AK서식 | 정형화된 양식 없음 | 통일증명서식 - KIN 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기관 ▶ 통일증명서식 자율 ▶ 송품장 신고방식 |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6개월 | 4년 | 1년 | 1년 | 1년 |
| 사용언어 | 영어사용원칙 | | | |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 영어사용원칙 | 유럽공동체 당사국 언어, 한글 | 영어 |

- ※ 1) 한-아세안 FTA 발급기관 : ① 브루나이-브루나이 외교통상부 ② 캄보디아-캄보디아 상무부 ③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통상부 ④ 라오스-라오스 상무부 ⑤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⑥ 미얀마-미얀마 상무부 ⑦ 필리핀-필리핀 세관 ⑧ 싱가포르-싱가포르 세관 ⑨ 베트남 통상부 ⑩ 태국-태국 상무부
- 2) 한-EU FTA의 경우 수출물품의 가격(인보이스상)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신고서 발급 가능(필수조건으로 미인증시 6,000유로 초과물품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권한이 없음. 한-EU FTA 원산지지정서 17조)
- 3) 한-페루 FTA의 경우 수출물품의 가격(인보이스상)이 2,000\$ 초과인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미인증시 기관발급 신청가능(발효 5년 후에는 자율발급)

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가능

문 의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전화 (042)481-3202~6, 팩스(042)481-775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전화 1577-8577(해외에서 82-2-3438-5199), 팩스 1577-8578
- ※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2-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FTA 특혜관세는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됨

가.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 예컨대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

나.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 우리나라가 맺은 협정에 따라 품목별(HS6단위별)로 각각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사용
 - ① 일반기준, ②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③ 분야별 특례로 구분

① 일반기준 :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 | |
|------|--|
| 원전생산 |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ex: 우리나라 영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
| 역내생산 |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계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 기본원칙(단, 협정별로 역외가공 허용조항이 있음,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생산물품) |
| 충분가공 |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 직접운송 |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원칙 |

- ②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과 이들의 선택 또는 결합조건
- ① 일반기준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협정에서 HS6단위별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 | |
|--------|---|
| 세번변경기준 |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
| 부가가치기준 |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자동차의 경우 RVC50%, MC50%) |
| 특정공정기준 |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의류의 재단·봉제기준) |

* 결합기준 : CTSH(6단위 세번변경 기준) + RVC35% (한-인도 CEPA 일반기준)

* 선택기준 : CTH(4단위 세번변경 기준) or RVC40% (한-아세안 FTA 일반기준)

- ③ 분야별 특례 : ① 일반기준과 ② 품목별 기준이 충족된 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해주는 기준(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②단계에서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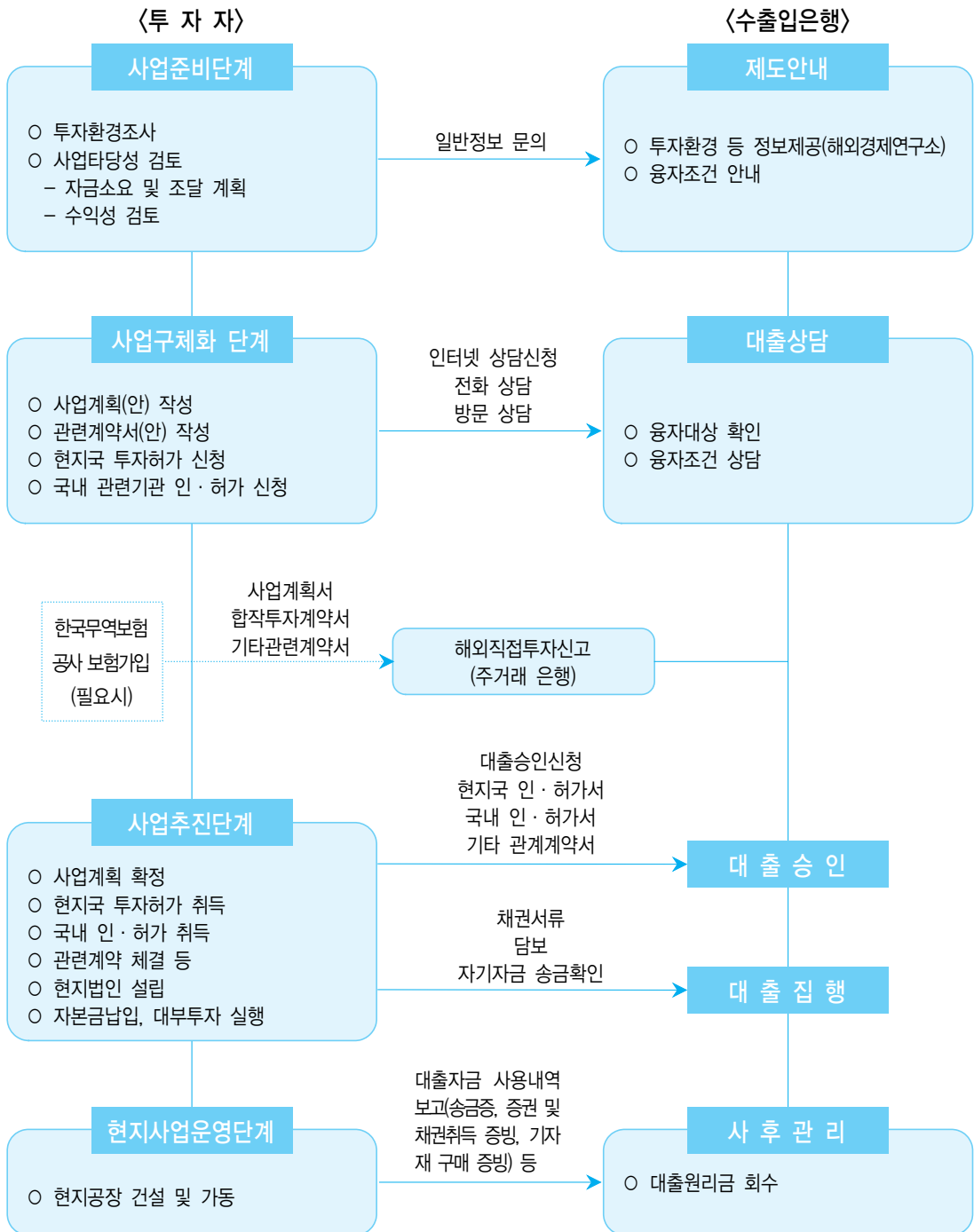
| | |
|--------|--------------------------------------|
| 누적기준 |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아국 원산지재료로 간주 |
| 미소기준 |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를 일정 금액(중량) 허용 |
| 대체가능물품 | 특성이 동일하나 원산지가 상이한 대체가능 재료는 재고관리기법 활용 |
| 부속품 |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은 세번변경기준 시 고려하지 않음 |
| 세트물품 | 세트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
| 포장/용기 | 소매용 포장 및 용기는 세번변경기준 시 고려하지 않음 |

다.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가능(메인화면 - 원산지 결정기준)

문 의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전화 (042)481-3202~6, 팩스(042)481-775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전화 1577-8577(해외에서 82-2-3438-5199), 팩스 1577-8578
- 홈페이지 www.customs.go.kr

해외직접투자 및 대출절차 개요(예시)



※ 해외직접투자신고 사후관리 업무는 투자신고를 한 주거래 은행에서 담당



금융 및 보험 제도

1. 금융
2. 보험

1. 금융

1-1. 해외투자자금 대출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

가. 대출 대상기업

- 해외투자 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 ※ 대출제한 해외투자사업
 - ① 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의 해외투자
 - ② 단순히 배당금, 시세차익, 이자 등만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의 증권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간접투자

나. 대출한도

- 중소기업 및 지식경제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 : 소요자금 총액의 90% 범위내
- 대기업 : 소요자금 총액의 80% 범위내
- 자원개발사업 :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 (기업규모 무관)
- ※ 단, 탐사사업은 신용도 및 대상광종에 따라 소요자금의 70~100% 범위내

다. 대출기간 : 30년 이내

-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단, 대출기간 7년 이상의 대출로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고려하여 5년까지 가능
-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10년 이상의 대출로서 7년까지 가능

라. 대출통화 : 외화 또는 원화

마.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 구 분 | | 적 용 금 리 |
|------|-------|-----------------------|
| 고정금리 | 원화 대출 | 수출입금융채권수익률 + 가 산 율 |
| | 외화 대출 | 통화별 Swap Rate + 가 산 율 |
| 변동금리 | 원화 대출 | KORIBOR + 가 산 율 |
| | 외화 대출 | 통화별 LIBOR + 가 산 율 |

바.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다만, 대출기간 3년 이하로서 차주 등의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사. 채권보전

- 차주(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도 또는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 기타의 경우는 적격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 취득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 : 전화 (02)3779-6429, 팩스 (02)3779-6749 (대기업)
- 중소기업금융부 : 전화 (02)3779-5316, 팩스 (02)3779-6744 (중소·중견기업)
- 부산지점 : 전화 (051)817-5050
- 창원지점 : 전화 (055)287-6830
- 대전지점 : 전화 (042)489-9715
- 대구지점 : 전화 (053)754-1021
- 수원지점 : 전화 (031)259-6600
- 광주지점 : 전화 (062)232-6944
- 울산지점 : 전화 (052)274-5276
- 인천지점 : 전화 (032)235-6114
- 청주지점 : 전화 (043)237-0475
- 전주지점 : 전화 (063)271-6134

1-2. 해외사업자금 대출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주요자원개발사업, 해외 운송사업(외항선박 구매) 등의 해외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국내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

가. 대출 대상기업 :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나. 대출한도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다. 대출기간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라. 대출통화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마. 대출금리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바. 상환방법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사. 채권보전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 : 전화 (02)3779-6429, 팩스 (02)3779-6749 (대기업)
- 중소기업금융부 : 전화 (02)3779-5316, 팩스 (02)3779-6744 (중소·중견기업)
- 부산지점 : 전화 (051)817-5050
- 창원지점 : 전화 (055)287-6830
- 대전지점 : 전화 (042)489-9715
- 대구지점 : 전화 (053)754-1021
- 수원지점 : 전화 (031)259-6600
- 광주지점 : 전화 (062)232-6944
- 울산지점 : 전화 (052)274-5276
- 인천지점 : 전화 (032)235-6114
- 청주지점 : 전화 (043)237-0475
- 전주지점 : 전화 (063)271-6134

1-3.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직접투자자금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출하는 제도

가. 대출 대상기업

-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자회사 및 손회사)

나. 대출한도 : 소요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직접투자자금) 총액의 100% 범위내

다.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이상 3년 이내
- 시설자금 : 1년 이상 30년 이내 (거치기간은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라. 대출통화, 대출금리, 상환방법, 채권보전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마. 기타

- 이증과세방지협정상 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하는 대출금 이자는 현지국에서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아 차입비용이 절감됨
 - 원천세율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0%, 미국 12% 등
 - 이증과세방지협정 발효국가는 부록이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법령 → 조세조약 참조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 : 전화 (02)3779-6429, 팩스 (02)3779-6749 (대기업)
- 중소기업금융부 : 전화 (02)3779-5316, 팩스 (02)3779-6744 (중소·중견기업)
- 부산지점 : 전화 (051)817-5050
- 창원지점 : 전화 (055)287-6830
- 대전지점 : 전화 (042)489-9715
- 대구지점 : 전화 (053)754-1021
- 수원지점 : 전화 (031)259-6600
- 광주지점 : 전화 (062)232-6944
- 울산지점 : 전화 (052)274-5276
- 인천지점 : 전화 (032)235-6114
- 청주지점 : 전화 (043)237-0475
- 전주지점 : 전화 (063)271-6134

1-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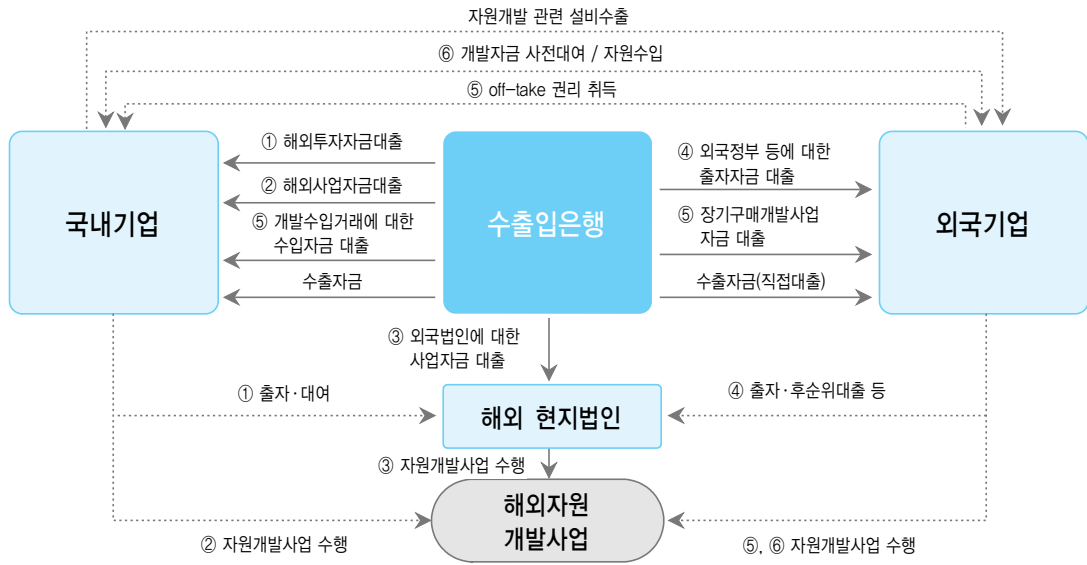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당사자 앞 사업 전 과정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기업 : 현지법인 출자 및 대부투자자금, 비법인형태의 해외사업자금
 - 외국기업 : 현지법인 앞 운영 및 시설자금, 합작파트너 앞 출자자금, off-take 계약대상 기업 앞 개발자금
 - 자금용도 : 탐사·개발·생산 전 과정 소요자금

나. 대출제도

○ 자금종류

| | |
|-------------------|---|
| ① 해외투자자금 |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하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앞 출자 및 대부투자자금 지원 |
| ②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 ③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자원개발을 위해 출자한 현지법인 앞으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 ④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 주요자원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후순위대출 등 준자본금 성격의 대여 포함)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앞 지원 |
| ⑤ 장기구매개발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지분출자 없이 장기구매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국외 자원개발 사업자 앞 사업자금 지원 |
| ⑥ 개발수입거래에 대한 수입자금 | 주요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자가 해외수출자에게 사전에 대여하고 그 상환의 방법으로 개발된 주요자원을 수입하는 거래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

※ 수출자금 : 국내기업이 출자하거나 또는 신규로 장기 자원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설비(육상 및 해상 시추·채굴·생산설비, 원유·가스처리설비, 파이프라인, 가스액화설비 등) 수출거래 별도 지원



- 대출조건 :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등에서 우대지원
 - 대출한도 : 소요금액의 100%이내
(단, 탐사사업의 경우 70~90%이내, 수입자금의 경우 80% 이내)
 - 대출기간 : 30년 이내(거치기간 7년 이내)
(단, 수입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자원개발금융을 전략여신분야로 지정)

다. 보증제도

-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주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수출입은행이 해당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것을 보증

| | |
|------|-------------------------------|
| 보증통화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통화 |
| 보증금액 |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범위 이내 |
| 보증료율 | 보증대상 거래위험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 보증기간 | 해당거래의 대출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 이행성 보증 : 대외거래의 수주를 위해 필요한 수주 단계별 이행성 보증 지원
 -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등

라. Project Finance

-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하여 project company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

■ P/F 지원대상거래 ■

-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사업성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거래
- 사업주, 차주 등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들의 사업수행경험이 풍부하고, 신용이 양호하며, 사업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는 거래
- 사업주 등의 출자액이 총 사업비용의 15~25% 이상인 거래
- 다른 ECA, 국제개발금융기구, 국제상업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거래
- 사업소재국 정부 등의 사업지원확약이 있는 거래

마. 매장량기초금융(Reserve Based Financing)

- 개발·생산단계 광구의 매장량을 평가하고, 동 광구 생산물의 미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

바. 지원현황

- 지원실적

| 구 분 | '09년 실적 | '10년 실적 | '11년 실적 | '12.8월 실적 |
|-----------|----------|----------|----------|-----------|
| 지원액(집행기준) | 14,073억원 | 33,604억원 | 19,418억원 | 9,580억원 |

※ 주요 지원 사례

-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 페루, LNG 개발사업
- 예멘, LNG 개발사업
- 영국, 석유기업 M&A 사업
- 브라질, 철광석 개발기업 지분인수사업
- 미국, 멕시코만 생산유전 매입사업
-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
- 오만, 8광구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사업
-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 개발사업
- 브라질, 니오븀 개발기업 지분인수사업
- 호주, 철광석 광산 개발사업
-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업
- 미국, 유가스전 지분인수 및 개발사업

○ 2012년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조 8,000억원(대출 2조 5,000억원, 보증 3,000억원)
- 지원전략
 - 대형 M&A 및 지분인수사업 적극 지원
 - 대규모 사업에 대한 PF 지원 강화, 매장량기초금융 방식의 금융지원 등 금융서비스 고도화
 - 아국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접금융서비스 활성화

| 문의처 |

- 한국수출입은행 자원금융부 : 전화 (02)3779-6424, 팩스 (02)3779-6775

1-5.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자금 용자

국내외 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가. 지원 대상

- 국내외 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나. 지원조건

-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 포함 15년 상환
- * 국고채 3년물 금리 : -2.25%, 국내는 1.25%

다. 지원한도

- 투자금액의 90% 이내
- ※ 자원협력 사업,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중소기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등 우대 지원
- 국내 대륙붕개발의 경우 사업특성 및 개발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원

라. 용자대상 사업

- 조사(탐사) 사업 : 성공불 용자(석유·광물), 일반 용자(광물)
- 개발·생산 사업 : 일반 용자

마. 성공불 용자

- 지원대상 : 사업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사업실패시 원리금 감면*,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징수**

* 감면조건 : ①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② 경영상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용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수익금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부과(유전 15%, 광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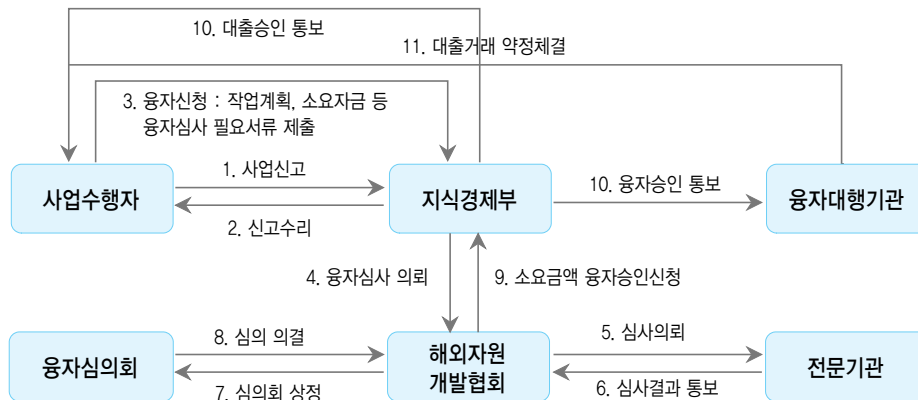
바.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석유개발사업 | 357,557 | 357,600 | 289,800 | 240,900 | 221,700 |
| 해외광물개발사업 | 68,400 | 68,400 | 68,400 | 68,400 | 68,400 |
| 계 | 425,957 | 426,000 | 358,200 | 309,300 | 290,100 |

- 석유개발 지원사업수 : 211건
 - 성공불 용자 : 187건(회수완료 5/회수중 10, 탐사진행 116, 감면 56)
 - 일반 용자 : 24건(회수완료 19/회수중 5)
- 해외광물 지원사업수 : 99건
 - 성공불 용자 : 16건(회수완료 1/탐사진행 15)
 - 일반 용자 : 83건(회수완료 44/회수중 39)

사. 지원절차



* 용자업무 대행기관 : 석유개발-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원개발-한국광물자원공사

* 자원개발 전문기관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의처

- 해외자원개발협회 석유가스팀 : 전화 (02)2112-8728, 팩스 (02)2112-8704
광물자원팀 : 전화 (02)2112-8722, 팩스 (02)2112-8704
- ※ 홈페이지 : www.emrd.or.kr → 정부위탁사업 → 용자심의회

1-6.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용자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

가. 용자지원대상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나. 용자대상사업

- 해외농업개발사업
 - ※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사업

다. 용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라. 용자조건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 지원조건 : 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용용도

| 구분 | 용도 |
|-----|---|
| 농장형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및 영농비(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
| 유통형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
| 해외농업개발용자 | 21,000 | 21,000 | 25,192 | 30,000 |

사. 지원절차

- 사업공고(농식품부) ⇒ 용자신청(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용자심의(용자심의회, 사업계획 평가, 현지확인)* ⇒ 약정체결(농어촌공사·용자대상결정자) ⇒ 자금집행 ⇒ 사후관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 용자심의회 개최(해외농업개발분야 전문가 12명 구성)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 전화 (031)420-4202, 팩스 (031)423-6570
※ 홈페이지 : www.oads.or.kr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용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용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가.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지원대상자 :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사업계획 심사 :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과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적용 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용자신청/접수 → 용자심의회 심사 → 용자지원액 결정 통보 → 대출취급기관에 용자 신청/대출

나. 용자요령

| 사업명 | 금리 | 모조율(%) | | | | 용자한도 | 용자기간 (거치/상환) |
|----------------------|-----------|--------|-----|-----|-----|---------|-----------------|
| | | 국고 |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 |
| ○ 해외산림투자 | 1.5% | | | | | | |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 - | - | 100 | | 직접사업비 | 7/3 |
| | 속성수(기타지역) | - | - | 100 | | 직접사업비 | 10/3 |
| | 장기수(열대지역) | - | - | 100 | | 직접사업비 | 17/3 |
| | 장기수(기타지역) | - | - | 100 | | 직접사업비 | 25/3 |
| | 고무나무 | | | 70 | 30 | 직접사업비 | 7/3 |
| 바이오조림 | 팜유나무 | - | - | 70 | 30 | 직접사업비 | 7/3 |
| | 자트로파 | - | - | 70 | 30 | 직접사업비 | 2/3 |
| 해외조림지 매수 | | | | 70 | 30 | 20억원 이내 | 10/3 |
| 임산물가공시설 | | | | 70 | 30 | 20억원 이내 |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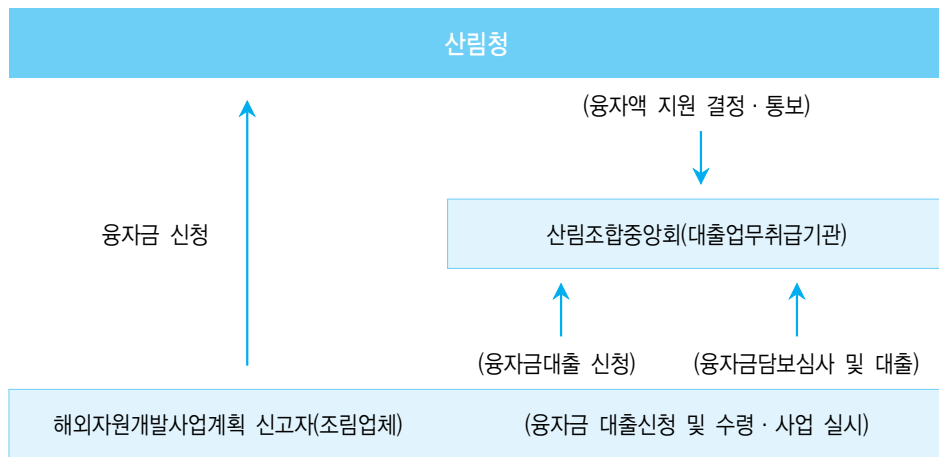
- 1) 육림사업 용자기간은 당초 용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용자기간 이내로 적용
- 2)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 3) 용자액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 포함
- 4) 해외조림지 매수 :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토지

- 지원방법 : 산림청장이 결정한 용자금을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을 통하여 국내담보 설정 후 지원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 산림청(조림실적 사후관리), 산림조합중앙회(용자금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절차 : 사업추진실적보고에 의한 사업비 결산과 조림지 현지점검

라. 사업추진 체계



문의처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 전화 (042)481-4089, 팩스 (042)481-8884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 전화 (02)3434-7223, 팩스 (02)3434-7239

1-8. M&A Financing 및 금융(협조용자) 주선

국내기업의 해외 M&A사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M&A Financing을 제공하고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를 주선

가. M&A Financing

- LBO(차입인수)방식 대출(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선순위 담보로 대출)
- 기타 주식·자산 및 영업 양수도 관련 대출

나. 금융주선

- 사업주와 주요 대주단간 금융조건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신디케이션 단계부터 사업자금 중 차입금을 책임지고 조달하는 서비스
 - IM(금융주선안) 작성 및 상업은행 등 대출참여은행 모집
 -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 지원(운영·시설자금)
 -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 주선(Syndicated Loan 등)
 - 맞춤형 해외투자프로젝트 Consulting 등(Structured Finance 포함)

다. 금융자문

-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주와 주요 대주단간 금융협의를 성사되기까지의 단계에서 사업주가 성공적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 국제투자팀 : 전화 (02)3779-6431, 팩스 (02)3779-6749
금융자문부 : 전화 (02)3779-5231, 팩스 (02)3779-6721
- ※ 홈페이지 : www.koreaexim.go.kr

1-9. 해외 매출채권 담보대출

해외현지 대기업(또는 우량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 협력업체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업체는 매출대금 만기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 금융을 이용하여 원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 확보 가능

가. 대출 대상기업

- 해외현지 중소기업으로서 해외현지 대기업 또는 우량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기업

나. 대출한도

- 해외현지 중소기업과 해외현지 대기업 또는 우량 중소기업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현지 대기업 등이 발행한 납품대금 결제예정통지서의 결제예정 대금 범위내

다. 대출기간

- 해외현지 대기업 등이 발행한 납품대금 결제예정통지서의 결제예정 기한까지 대출 가능하며, 1년 단위로 포괄 한도약정도 가능

라. 대출통화 : US\$ 또는 현지국 통화

마. 대출금리 : 해외현지 기준금리 + 스프레드 적용

바. 기대효과

- 해외에 동반진출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최적의 상거래 결제 프로세스 구축으로 결제업무의 효율성 및 상생협력 지원

사. 업무흐름

- 해외현지 중소기업은 기존 평균 48일 걸리던 납품대금 결제를 본 해외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하여 간단한 약정으로 3일 이내 필요자금 조달



문 의 처

- KOTRA 해외진출컨설팅팀 외환은행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78, 팩스 (02)3460-7945

1-10. 대외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신흥개발국가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가. 우리나라의 ODA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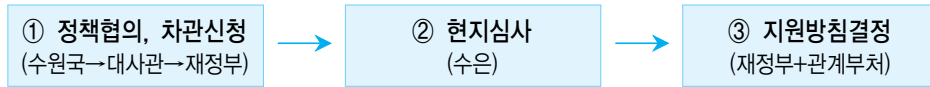
| 구분 | 협력 형태 | 실시기관 | 주무부처 |
|-----------------------|--|-------|-------|
| 양자간 (Bilater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형 및 프로그램 원조 ○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원조, 긴급 재난구호 및 NGO지원 등 | KOICA | 외교통상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성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 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
| 다자간 (Multilater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 | 기획재정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OECD 등 | | 외교통상부 |

나. 양허성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 - 한국수출입은행

- 목적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 증진 등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설치('87. 6월 업무 개시)
 - 관련 법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86. 12월) 및 동 시행령('87. 4월)
- 운용체계
 - 기획재정부 : 운용주체로서 주요 정책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 재정부, 외교부 등 총 12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장으로 구성
 - 수출입은행 : 기금의 운용·관리 실무담당(심사·집행·사후관리 등)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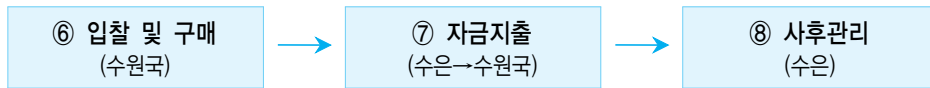
- 지원결정



- 협정 및 계약 체결



- 자금집행



※ 입찰 및 구매는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하므로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원국 사업실시 기관으로부터 얻게 되나, EDCF는 국내기업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DCF 홈페이지 www.edcfkorea.go.kr 참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개도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사업

- 대상국가

-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인구규모, 부존자원 보유현황 등 향후 경협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우선 지원
- 중점 지원국가(26개국)와 일반 지원국가(38개국)로 구분

- 대상사업

- 선정기준 :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서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및 수출효과가 양호한 사업을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녹색성장, 농업, 교통, 에너지, 보건, 인적 자원개발, 정보통신

- 지원방식 :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 : 인프라 구축 등 개발사업 소요자금 지원
- 민자사업차관 : 민자사업 실시예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 기자재차관 : 특정산업 및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조달 소요자금 지원
- 기금전대차관 : 개도국 금융기관을 통한 국산 기자재 수입자금 지원
- 물자차관 : 개도국의 국내경제 안정에 긴요한 물자 수입자금 지원

○ 기금의 특징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 지원 조건 : 연 0.01~2.5%(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상환기간 40년 이내
 - 지원 대상국가 : 1인당 국민소득 약 6,925불 이하의 개도국
 - 지원 대상사업 : 교통, 통신, 교육, 환경 등 경제·사회 인프라 사업
- 구속성 차관(Tied Loan) 방식을 원칙으로 운용하나 비구속성도 지원
 - EDCF 소득그룹 V그룹 대상 비구속성 차관 우선 추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국가 분류

| WB 1인당 GNI('11) | EDCF 소득그룹 | OECD 소득그룹 | 구속성 원조 적격기준 | |
|-----------------|-----------|------------------|----------------|-----------|
| - | I 그룹 | 저소득국(LIC) | 구속성 원조 적격국 | |
| 1,025이하 | II 그룹 | | | |
| 1,026~1,195 | III 그룹 | 하위중소득국(LMIC) | | |
| 1,196~1,945 | | | | |
| 1,946~4,035 | | | | |
| 4,036~7,035 | V 그룹 | 상위중소득국 (UMIC) | 구속성 원조 부적격국 | |
| 7,036~12,475 | 부적격 | | | 고소득국(HIC) |
| 12,476~ | | | | |

대외경제협력기금 표준 지원조건

| 구분 | 대개도국차관 |
|--------|--|
| 융자한도 | 총사업비용 범위내 (단, 최빈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언타이드 차관은 85%이내) |
| 이자율 | 연 0.01~2.5%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 서비스 소요자금은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 |
| 상환기간 | 25~40년 이내 |
| 거치기간 | 7~15년 이내 |
| 원금상환방법 | 연 2회 정기분할 |
| 이자징수방법 | 매 6개월 후취 |
| 담보 | -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 담보 면제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급 보증 |

다. 무상원조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목적

-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
- 관련법령 : 국제협력단법(1991. 1월) 및 동 시행령(1991.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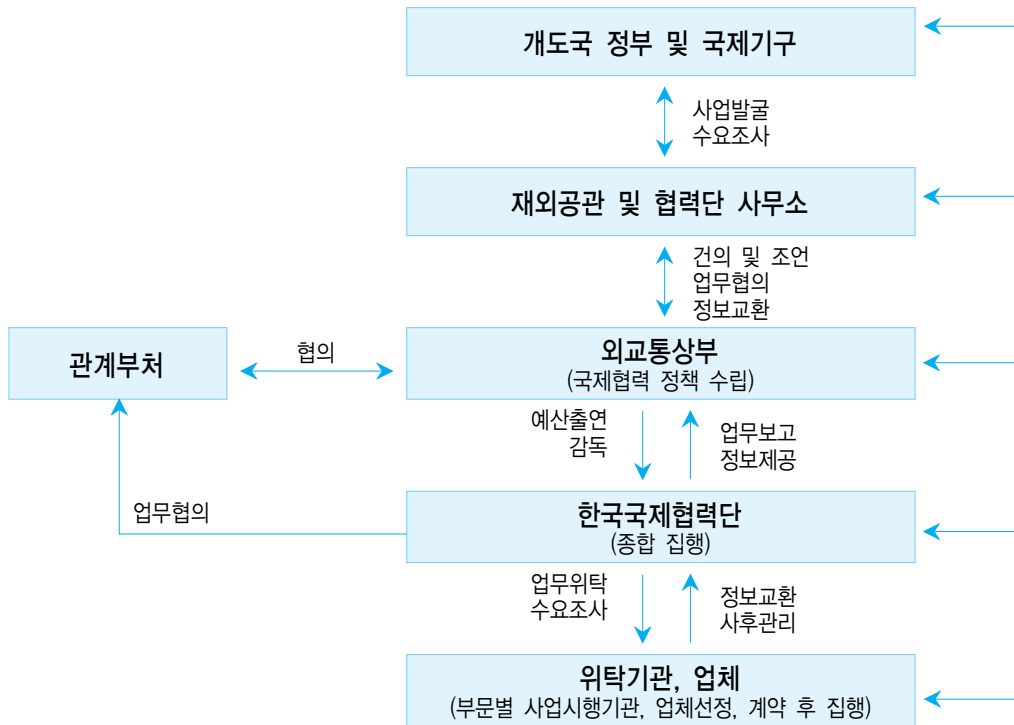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국 : 26개 협력대상국 위주
 - OECD 기준 최빈국(LDC), 저소득국(LIC) 및 중저소득국(LMIC)으로서 상주 공관이 설치된 국가 우선 지원
 - 기타 정치경제적, 인도주의적으로 필요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CIS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선택적 지원
- 지원대상분야
 - 사업선정기준 : 개도국이 요청한 사업으로서,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심
 - 중점지원분야 :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등
- 지원방식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개발 과제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형 사업
 - 기술협력사업 : 개발조사사업, 연수생초청사업, 전문가파견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
 - 기타지원 :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및 NGO 지원 등

※ 무상원조 협력사업 지원절차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 참조

※ 해외건축·용역 등 입찰정보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ebid.koica.go.kr 참조

○ 지원절차



라. 무상원조 기술협력사업 중 개발조사사업 지원

○ 목적

- 개발도상국의 각종 공공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컨설팅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개도국 정보를 선점하게 됨에 따라 수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 제고
- 개도국의 교통인프라 건설 및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설계, 지질도 등의 기초자료 작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긴요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파견을 통해 컨설팅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업
 -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 국토개발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
 - 수원국정부의 정책개발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 사업선정 절차

- 수원국 정부의 사업요청서 접수
-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내용, 현지사업 추진여건,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
-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지원 대상사업 중 차년도 신규사업으로의 반영여부는 예산확보 계획 및 국가별배분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대상사업선정 기준

- 수원국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상 우선순위 및 아국 비교우위, 기술력 확보 여부, 사업 추진 타당성 및 파급효과, EDCF 연계 가능성(개발조사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문 의 처 |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 전화 (02)2150-2651~4, 팩스 (02)503-9077
- 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 전화 (02)3779-6715, 팩스 (02)3779-6777
- ※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공지사항

무상원조 관련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 전화 (02)2100-0176, 팩스 (02)2100-8359
-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예산실 : 전화 (031)7400-165, 팩스 (031)7400-657
- 한국국제협력단 경제개발팀 : 전화 (031)7400-241, 팩스 (031)7400-698
- ※ 홈페이지 : www.koica.go.kr

2. 보험

2-1.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입자, 해외투자 합작기업 등 외국기업의 신용조사를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 무역보험공사가 제휴 중인 세계 각국의 신용조사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

가. 이용 절차

- 공사 사이버영업점(인터넷)에서 신청

■ 신청 방법 ■

- ① 공사 사이버영업점 접속 : 홈페이지 www.ksure.or.kr → 사이버영업점 로그인
※ 사이버영업점 회원 가입 문의로는 아래 문의처 참조
- ② 외국기업 신용조사 신청
- ③ 신청기업 앞 조사보고서 제공(통상 2-3주 소요, 이메일 송부 또는 사이버영업점 조회)

나. 이용 수수료(부가세 포함)

- 요약 보고서 : 33,000원
- Full report + 요약 보고서 : 110,000원

다. 대상 지역

- 전 세계
- Full Report는 일부 지역 제외

■ 문의처 ■

-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 : 전화 1588-3884, (02)399-6800
※ 홈페이지 : www.ksure.or.kr

2-2. 해외투자보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가. 해외투자보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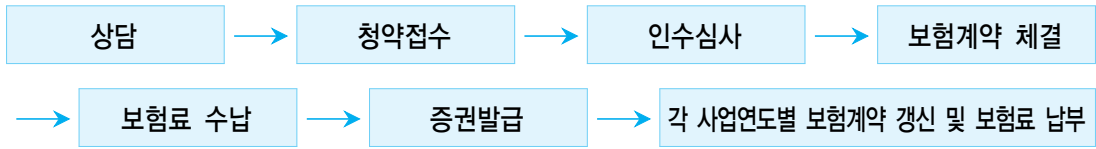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세부 종목 | 부 보 대 상 해 외 투 자 |
|---------|---|
| 주 식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
| 대 출 금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 |
| 보 증 채 무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외국인의 2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면제하는 보증채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나. 담보 위험

| 세부 종목 | 담 보 위 험 |
|---------------|--|
| 수 용 위 험 | 외국정부 등의 주식 또는 배당금(이자) 지급 청구권 박탈,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 정지, 광업권·소유권의 박탈 등 |
| 전 쟁 위 험 | 해당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의 손해에 따른 사업 불능 |
| 송 금 위 험 |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으로 2월 이상 국내로의 송금 불능 |
| 약 정 불 이 행 위 험 | 외국정부 등이 피보험투자 상대방의 사업수행상 중요한 약정(공사가 인정한 것에 한함) 불이행에 따른 사업 불능 |
| 불 가 항 력 위 험 | 피보험자 상대방이 불가항력적 사태나 국제연합 등에 의한 경제제재에 따른 사업 불능 |

다. 이용 절차



라. 보험금액

- 해외투자금액의 95%~100% 이내
 - 부모일은 해외투자보험(주식)의 경우 95%이내, 해외투자보험(대출금) 및 해외투자보험(보증채무)의 경우 100% 이내에서 공사가 결정

마. 이용 방식

- 최초 신청 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보험가입 승인을 받되,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용
 - 실질 투자 잔액으로 보험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운용방식
- 보험계약기간 중 투자금액 변동(증액·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실 통보 후 보험금액 변경 처리가 필수적

바.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 및 투자상대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단위로 갱신

| 문의처 |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사업부 : 전화 (02)399-7073, 팩스 (02)399-6929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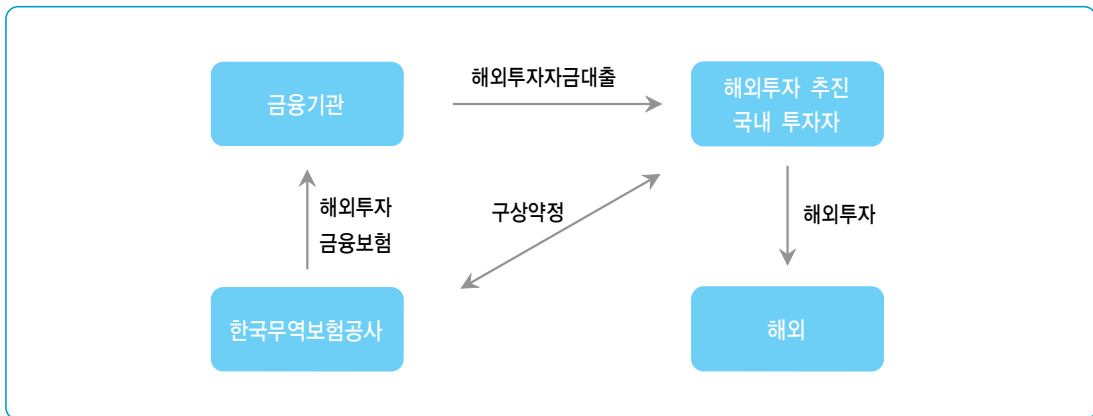
2-3.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체결한 금융계약 지원

가. 제도 개요

- 국내기업 앞 해외 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보험 구조



나. 금융 지원 대상

- 국내사업자의 해외 자원개발, M&A 등 해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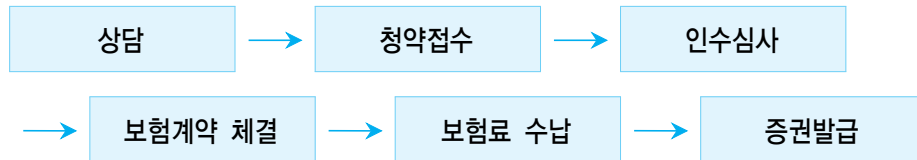
다. 담보 위험

- 비상위험
 - 전쟁, 수송, 송금제한, 불가항력 및 투자국 정부의 약정불이행 등
- 신용위험
 - 해외투자자(국내기업) 및 해외투자 상대방의 파산, 채무불이행 등. 단, 신용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는 투자자 앞 구상

라. 보험 금액

- 해외사업 소요자금의 100% 이내
 - 투자업종에 따라 변동되며, 비제조업의 경우 현저히 낮아짐

마. 이용 절차



바. 보험료

- 투자상대국 등급 및 투자기업(수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 문의처 |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사업부 : 전화 (02)399-7073, 팩스 (02)399-6929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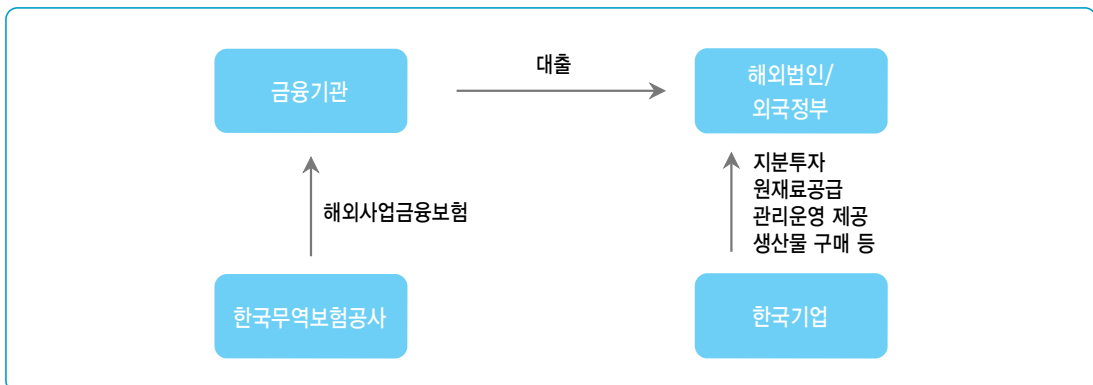
2-4.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가. 제도 개요

-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특정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전체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임

보험 구조



나. 금융 지원 대상

- 내국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주식 등 지분 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 해외사업 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 해외사업 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 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
-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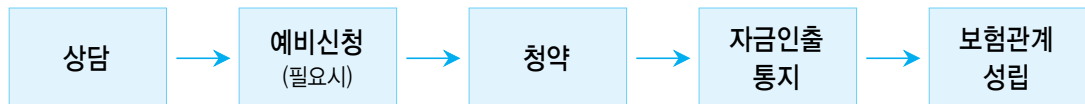
다. 담보 위험

- 비상위험(차입국 위험)
 - 모라토리움, 채무감면협정 체결
 - 송금지연, 상환의무 종결 법률 채택
 - 전쟁, 내란, 수용, 혁명, 소요, 파업, 태풍 등 불가항력 사태
- 신용위험(차주 위험)
 - 파산,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라. 보험 금액

-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100% 이내(K-sure가 정함)

마. 이용 절차



바.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을 준용하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국제금융기관의 가산금리 수준, 국별 신용도 및 차주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할증, 할인율을 가감 적용

| 문의처 |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사업부 : 전화 (02)399-7073, 팩스 (02)399-6929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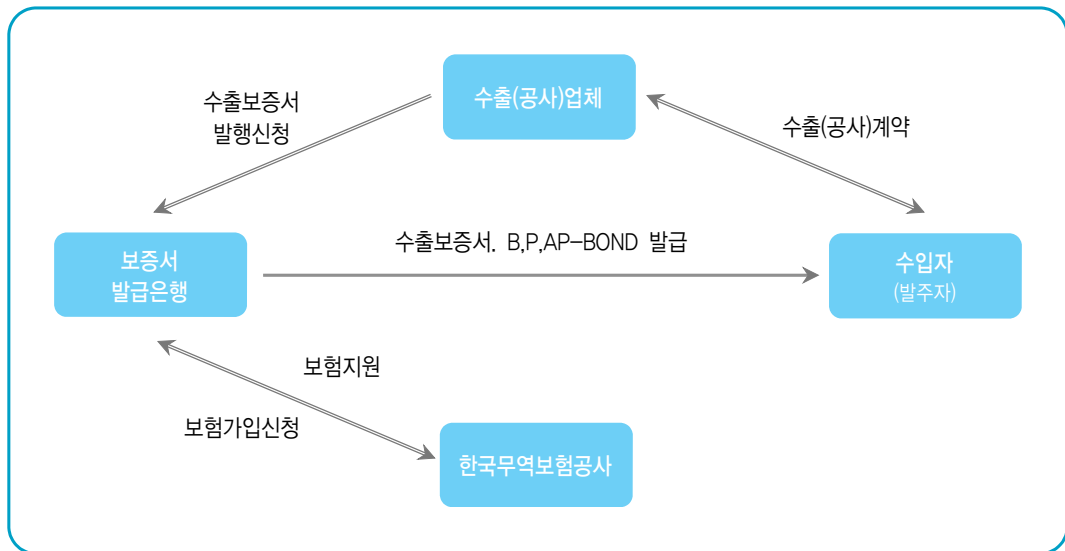
2-5.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가. 제도 개요

- 국제거래시 수입자는 자신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로서 신용장을 제공하고, 반대로 수출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을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임

보험 구조



나.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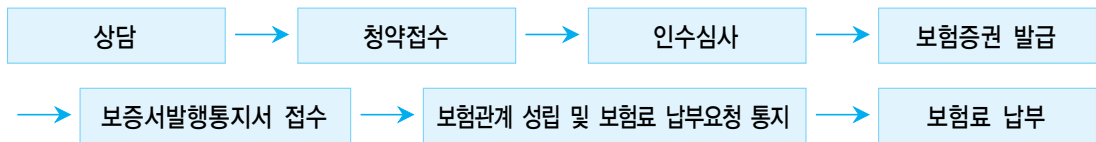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제외)

○ 기타 서비스 용역 수출

수출보증서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입찰보증 (BID-Bond) | • 입찰방식 거래에서 입찰자가 낙찰 후 수출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
|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Bond) | • 산업설비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
|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Bond) | •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동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 |
|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Bond) | •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동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서 |
| 하자보증 (Maintenance-Bond) | • 산업설비의 설치 또는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완공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

다. 이용 절차 : 업체별 한도책정 방식으로 운용



라.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출자 등급 및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마. 수입자 신용도 조사

○ 보험 인수 심사 전 수입자의 신용도 조사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앞 수입자 신용도 평가가 필수절차임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사업부 : 전화 (02)399-6954, 팩스 (02)399-6577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2-6. 해외 미수채권 추심대행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대외채권이 계약서 등 약정서상 변제기일 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

가. 이용 절차 및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으로써 미수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 추심의뢰서
 -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 증빙서류
- 공사가 서류검토 후 위임승낙통지서 발송

나. 추심업무 진행

- 공사 자체망, 해외 채권추심기관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 앞 채권추심활동을 진행
 - 추심 진행상황에 따라 일반적 추심절차 외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다. 이용 수수료 : 회수금의 20% 내외

- 성공불 기준 : 실제 회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 ① 공사계좌 입금 후 성공수수료 차감 후 의뢰채권자계좌에 입금
 - ② 의뢰채권자계좌에 입금 후 공사계좌로 약정 수수료 납부
- 채권위임 승인 시 해당 수수료율 사전 통지

라. 추심 종결처리

- 전액 회수처리 또는 일부 회수하였으나 추가적인 추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추심 자체가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 : 전화 1588-3884 팩스 (02)399-5793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1. 조세제도
2. 금융제도
3. 무역보험제도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5. 해외건설 진출제도

1. 조세제도

1-1. 국내제도

-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2)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모법인과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면 되나요?
- 3)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 4)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국내에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5)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6) 개인이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은?
- 7) 개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8) 개인이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요?
- 9) 개인이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10)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11)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12) 개인이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13)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리나라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1-2. 조세조약

- 14) 조세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15) 해외현지법인이 모법인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때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16)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문의처 |

- 국내제도 및 조세조약
 - KOTRA 해외진출컨설팅팀
 - 국세청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80, 팩스 (02)3460-7934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1-1. 국내제도

Q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에 대하여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국내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체결국으로서 조세조약상에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소비세·증치세·영업세·매출세 등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등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 발생소지 없음) 또한, 가산금·가산세도 공제 가능한 외국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Q 2)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지에 해당되고 모법인과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면 되나요?

-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한편 당해 거주자는 모법인과 현지법인으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3)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현지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인 급여 등은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동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조세조약 및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각 조세조약상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동 소득에 대해 용역수행지국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에 의거,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과세우선권을 인정하여 한국에서의 납부할 세액에서 현지에서 납부한(할) 세액에 대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파견직원에 대해 한국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지급하든지 현지자금으로 지급하든지에 관계없이 직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대해 현지에서 과세되게 됩니다. 파견된 직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이므로 한국 본점에서 급여를 지급 할 때에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Q 4)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국내에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¹⁾를 한 경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상속·증여세,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 항 제16호)

○ 취득단계

- 해외직접투자자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가 번 소득으로 투자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유단계

- 해외직접투자자를 이용하여 외국법인²⁾ 등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등 지분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해외개인사업체³⁾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분단계

- 해외현지법인⁴⁾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해외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는 증여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2)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3호)

3) 해외개인사업체라 함은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4) 해외현지법인은 해외직접투자자를 통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 구 분 |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 분 단 계 | |
|----------|------|-------------------|---|--|-------------------|
| 관련세목 |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사업정리) 양도소득세(투자주식 처분) | 증여(상속)세 |
| 내 용 | | 취득자금 증여 | 이자, 배당, 사업 | 사업, 양도소득 | 증여(상속)가액 |
| 적용 세율 | 내국세법 | 10%~50% (누진세율) | 이자, 배당 : 14% 또는 누진세율* 사업 : 6%~38% (누진세율) | 종합소득 : 6%~38% (누진세율) 양도소득 : 20% 또는 10% (단일세율) | 10%~50% (누진세율) |
| | 외국세법 | 거의 적용 없음 | 거의 적용 없음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효과 | | 과세해당분전액 | 과세해당분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해외직접투자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신고의무

| | |
|----------------------------|--|
| 취 득 단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
| 보 유 단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 처 분 단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

Q 5)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해외직접투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예: 이자·배당·사업소득)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또한 국내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 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 원인 갑과 을의 국내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 원, 6백만 원 경우 적용되는 소득 세율은 24%(누진세율)와 6%로 다르므로 세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 3억원 초과 | 9,010만원+3억원 초과액의 38% |

-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통상 25% 이상) 지분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통상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 내용 확인 가능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각 국과의 조세조약

5)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5%로 유지하되,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구간을 신설하여 38%의 세율을 적용함(소득세법 55조 제1항 : 2012. 1. 1.)

Q 6) 개인이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은?

-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후 해외현지기업(해외현지법인 및 해외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취시 이자 소득으로, 해외현지기업인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류(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Q 7) 개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⁶⁾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text{공제한도} = \text{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면제} \cdot \text{감면비율})^*}{\text{종합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를 항상 당해 과세기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6)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57-1). 따라서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2팀-991, 2007.5.23)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8) 개인이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현지기업이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경영상의 애로 등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제3자에게 매각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⁷⁾
- 폐업 또는 해산일까지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산(지분양도) 내역을 작성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청산(지분양도)일 현재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익년 5. 1~5. 31)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폐업·청산을 하고도 그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안내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9) 개인이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 하단의 청산(지분양도) 일자에 지분 양도일을 기입하고 양도 가액을 회수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매년 5.1~5.3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2억 원(지분 100%)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2012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지 법인 지분 전체를 3억 원에 양도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지분 양도일을 기재하고 지분 양도일까지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 2013년 5.1~5.31 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미국에서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8의8조가 개정(법률 제 10900호, 2011.7.25)됨에 따라 201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 10)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직접투자의 경우)

| 구 분 |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 분 단 계 | |
|----------|------|-------------------|-----------------|-------------------------|-------------------|
| 관련세목 |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상속)세 |
| 내 용 | | 취득자금 증여 | 배당 | 주식 양도소득 | 증여(상속)가액 |
| 적용 세율 | 내국세법 | 10%~50% (누진세율) | 14% 또는 누진세율※ | 20%(중소기업 10%) (단일세율) | 10%~50% (누진세율) |
| | 외국세법 | 거의 적용없음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효과 | | 과세해당분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8) 직접투자란 거주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투자란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의 경우)

| | |
|----------|--|
| 취득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 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
| 보유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 처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

Q 11)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직접 투자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 비과세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 포함) 소유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유가증권시장 : 지분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 * 코스닥시장(벤처기업 포함) : 지분을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
| | | | 과세 |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중소기업주식 : 세율 10% · 대주주요건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 세율 20% 또는 30%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 과세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 (중소기업주식 ⁹⁾ 은 세율 10%) | |
| | | 간접 투자 | | 비과세 |
| 과세 | · 비상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분배금 | | | |
| 과세 | 과세 | | | |
| 과세 | 과세 | | | |
| 역외 펀드 ¹⁰⁾ (배당) | | 과세 | 과세 | |
| | | 과세 | 과세 | |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9)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10)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합니다.

Q 12) 개인이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3)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리나라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먼저, 우리나라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 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우리나라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세조약

Q 14) 조세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 공식명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조세조약의 원문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taxinfo.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법령 → 조세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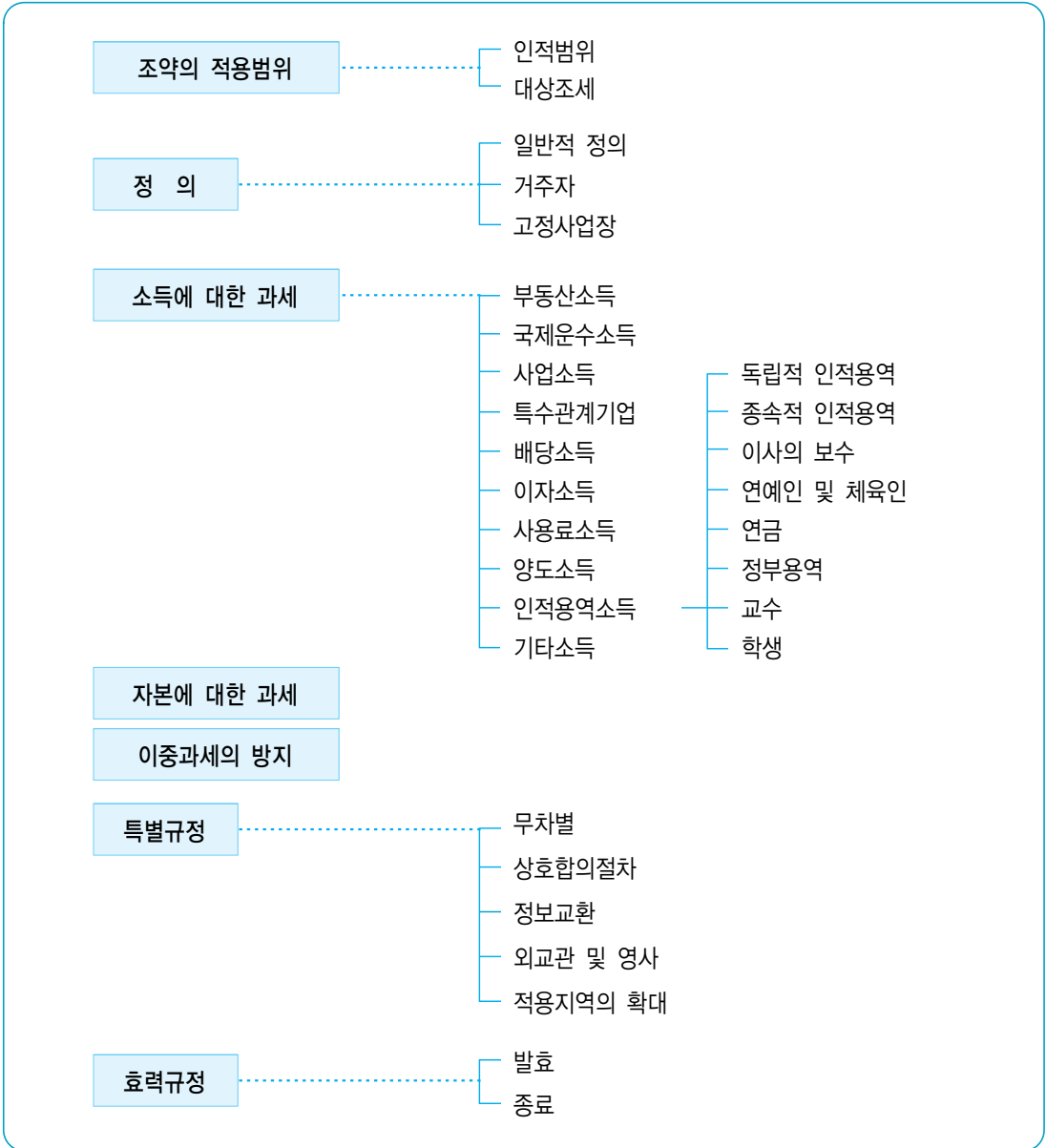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외국법인 등 납세안내 → 국내 원천소득 과세안내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2년)

-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전문(preamble)·본문·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정서의 내용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 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Q 15) 해외현지법인이 모법인에게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때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조세조약상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해당국의 세법상 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 등의 수취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 세율은 통상 10~15%입니다.

다만, 동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베트남 현지법인이 국내 모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세법상 원천 징수세율(0%)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0%)보다 낮으므로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은 【부록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6)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모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에 의거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 구 분 | | 국 가 |
|------------------------|--|--|
| 원천지국 과세가능 (49개국) | 부동산 주식 ¹⁾ (26개국) |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중국, 카타르, 핀란드, 필리핀 |
| | 부동산 주식 과점주주 주식 ²⁾ (16개국) | 독일, 멕시코,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 아랍에미리트(10%),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칠레(20%), 캐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프랑스 |
| | 부동산주식 비상장주식(1개국) | 카자흐스탄 |
| | 과점주주주식(1개국) | 이탈리아 |
| | 1년 이하 보유 주식(1개국) | 터키 |
| | 모든 주식(4개국) | 룩셈부르크, 브라질,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
| 거주지국 과세 (29개국)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³⁾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⁴⁾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헝가리 | |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

4) 아이슬란드 : 주식이나 권리의 양도 전에 최근 5년 중 우리나라 거주자였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2. 금융제도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 1)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2)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싶는데 그 절차는?
- 3)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 4) 해외직접투자 신규투자자와 증액투자 시 신고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 5)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현지국의 공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6) 현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7) Software를 현물로 투자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기술이전료, 상표권 등으로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8) 한국인이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9)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는?
- 10)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와 대부투자를 동시에 행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은?
- 11) 국내투자자가 외화대부채권 취득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계약서에 대한 공증의 제한이 있나요?
- 12) 석탄,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때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총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요자금에서 개발된 자원의 판매금액을 제외한 순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2-2. 투자제한

- 13)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한은 있나요?
- 14)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금융채무불이행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투자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 15)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 공동투자한 후 증액투자 시 어느 일방이 불량거래처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은 증액투자가 가능하나요?
- 16)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2-3. 내용변경

- 17) 당초 현금출자로 신고한 내용을 현물출자로 변경하거나 자금조달처를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18)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2-4. 사후관리

- 19)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고 환율변동 때문에 자본금 항목이 송금한 액수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외화증권취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1) 외화대부채권취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2) 해외투자자금의 송금과 현물의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3)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 여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의 절차는?
- 24)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2-5. 지원제도

- 25) 해외직접투자 시 어디서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6)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무엇인가요?
- 27)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현지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8)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한도 및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29)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며 이자납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 30)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31)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2) 지역별·업종별 진출현황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반 통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문의처 |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제도
 - KOTRA 해외투자상담팀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72
 -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77
 - 외환은행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78
 - 주거래 외국환은행
-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 KOTRA 해외투자상담팀
 - 외환은행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78
 - 주거래 외국환은행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Q 1)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 채권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외화증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
 -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
 -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 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외화대부채권취득은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Q 2)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싶는데 그 절차는?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해외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아래에서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추가 제출서류」 및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한 후 신고기관에 제출·신고하고 투자하면 되며,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Q 3)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 공통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추가 제출서류

- 대부투자 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 시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관련서류 → 제재 조치 완료 후 신규에 준하여 사후 신고
-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 시 납세증명서 1부(기 청구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징구 생략)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전문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 보완서류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개인인 경우 동 개인) 납세증명서 및 신용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 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광물, 농축산물, 임산물)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앞 해외건설업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Q 4) 해외직접투자 신규투자자와 증액투자 시 신고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즉,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투자(증자)는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했던 소정양식(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과 기타 제출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를 작성·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로 가능하나, 해외투자 금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 없이 신규 투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 신고를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Q 5)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현지국의 공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공관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공관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실제로 영위하는지,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지역 내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대부투자 시의 금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종전에는 현지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1.부터 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기관의 공증만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7. 12. 17.부터는 공증도 받을 필요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Q 6) 현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해외직접투자는 통화 등 지급수단 외에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대한 권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자본재와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주식의 출자에 의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도 가능합니다.
- 현물투자 시에는 신고 시 공통 제출서류 외에 현물투자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현물투자 명세서를 간인하여 첨부해야 하고, 첨부된 현물투자명세서에 근거하여 세관통관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독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명시 한 현물투자명세서를 첨부하여 투자신고를 해야 하고, 합작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물의 구체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합작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현물투자금액은 국내에서 평가된 원화표시금액을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매매 기준율)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 한편, 현물투자명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데, 이때 유의사항은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제품이라도 규격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완료한 후 부득이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7) Software를 현물로 투자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기술이전료, 상표권 등으로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이 경우 기술을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협의하여 인정받은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외국인 에게 양도·제공하는 경우 그 실시에 관한 권리를 일정금액을 대가로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목적물은 현금이외에 기계설비 등 현물이나 기술 또는 용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합작투자 시 이러한 기술이나 상표권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는 합작투자 파트너와 협의하여 인정받은 그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8) 한국인이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는 공동투자에 해당됩니다. 공동투자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 및 투자자 확인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Q 9)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는?

- 국내투자자가 기 설립된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대부 채권의 투자는 현지법인 지분취득 후 또는 증권취득과 동시에 반드시 금전으로 해야 하며, 그 상환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다른 것은 금전을 빌려주는 국내 투자자와 금전을 빌리고자 하는 현지 법인 간에 대부금액·이율·상환조건 등을 명시한 대부계약(LoanAgreement)을 작성해야 하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 이외에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투자자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 신고 후에는, 신고서 원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신고한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관계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당초 계약한 상환계획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리금 회수 시에는 즉시 신고은행에 동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Q 10)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와 대부투자를 동시에 행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은?

- 현지법인에 자본금출자와 대부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은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증권취득과 외화대부채권취득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밟으면 가능합니다.
 -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대부투자는 외화대부 채권취득의 방법으로 신고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한 건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두 가지 투자방법을 동시에 표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취득과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동시 투자 시에는 사업계획서·대부계약서·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와 국내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 신설 예정인 외국법인에 대부 투자하는 경우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으며, 이때에는 대부계약서(안)를 제출하고 추후 법인 설립 후 확정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 준수사항에 확정 대부계약 체결 후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 대부투자자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Q 11) 국내투자자가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 계약서에 대한 공증의 제한이 있나요?

○ 2007. 12. 17.부로 공증 받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Q 12) 석탄,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때 해외 직접 투자 신고금액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총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요자금에서 개발된 자원의 판매금액을 제외한 순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금액에 일치시켜 총액개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자금의 송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즉, 투자에 소요되는 순액개념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총액개념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경우 개발된 자원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판매대금이 국내로 회수되면 그 중 투자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자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 만큼 신고금액 및 투자금액에서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완료한 날(장기투자의 경우 신고서에 명시된 투자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송금 등을 완료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투자금액 송금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동 유효기간 내에 송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투자종료 예정일까지 신고유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사업인 경우 대체로 매년 일정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신고서 준수사항에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명시하고 연도별로 분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당연도 미 투자 분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총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 변경 신고를 하여 연도별 금액만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2. 투자제한

Q 13)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한은 있나요?

- 1993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고, 1996년 6월에는 해외투자의 제한 업종을 폐지하여 자기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보다 폭넓게 투자 업종을 선택하여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었습니다. 투자 국가별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4)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투자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및 조세채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신고 및 송금시점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망에 의한 전산조회로 확인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법인(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를, 개인인 경우 개인을 각각 조회 합니다.
- 한편,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 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채권협의회 포함)의 결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15)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 공동투자한 후 증액투자 시 어느 일방이 불량거래처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은 증액투자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 특정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개념과는 달리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주체로 보기는 곤란하며, 투자자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동투자의 경우 통상 투자자 모두 연명으로 신청하는데 이는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연명신청이 신청인 모두를 합쳐서 하나의 투자 주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액투자 시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분류된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Q 16)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의 지분참여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외국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간접투자에 해당합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한 투자방법별 요건은 바로 이 경영참가의 요건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로 정의되지 않는 10% 미만의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국내투자자와 실질적 경제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때(이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함)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중요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

따라서 경영참가 요건이 이미 충족(투자지분율 10% 이상 기출자)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현지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하거나, 투자지분율이 10% 미만이라도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여 경영상 영향력이 있는 외국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를 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3. 내용변경

Q 17) 당초 현금출자로 신고한 내용을 현물출자로 변경하거나 자금조달처를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사업 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 당초 신고서 사본, 변경사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2절 참조). 내용변경 신고서 발급 시 이중송금·자금유용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은 당초 신고서 원본 상에 변경내용·문서번호·신고조건 및 변경일자를 기재하고 신고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현금출자를 현물출자로 바꾸는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현물출자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물투자명세표 1부는 내용변경 신고서에 첨부하는데 신고조건으로 “본 신고금액은 붙임 명세의 현물로 투자하며, 투자 후 즉시 동 사실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 국내조달에서 해외조달로 바뀐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서 상의 신고조건으로 “본 신고금액은 필요한 신고 등을 필하고 투자한 후 즉시 동 사실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 한편, 반대의 경우(현물출자 → 현금출자, 해외조달 → 국내조달) 신고기관은 당초 신고서의 원본 상에 상기의 절차에 따라 변경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투자국의 투자허가 신고서의 내용도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송금은 항시 신고은행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Q 18)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투자자명 · 투자비율 · 투자목적 · 투자대상국가 및 투자금액 등 당초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현지법인이 자회사나 손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수리서 내용 중 “투자금액” 항목은 감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고 신규투자 신고에 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현지 법인명 및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서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2-4. 사후관리

Q 19)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고 환율변동 때문에 자본금 항목이 송금한 액수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관은 해외 현지법인이 신고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및 문제점 등의 파악을 위하여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금전대여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지 공인회계사가 확인 또는 감사한 결산서(소규모 기업인 경우 현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시 현지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중 평균 환율을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 또한 투자자금을 당초 미 달러화로 송금하였을 경우 결산일의 자본금을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해외투자자금 송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가 신고내용을 준수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내용이 환율에 의하여 변동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 달러화로 환산한 자본금이 당초 송금액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Q 20)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외화증권취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기관에서는 신고내용대로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자금이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0호)를 징구·심사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회사설립 내용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이나 공증서(중국의 경우)와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내용을 나타내는 주식 사본(원본은 따로 제시)을 첨부하여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 국가에 따라서는 법 제도에 따라 증권발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베트남, 중국, 독일, CIS 등). 이런 경우 증권 대신에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및 협자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21) 외화대부채권취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기관에서는 신고내용대로 투자자금이 현지법인의 대부 자금으로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채권)취득 보고서(현지법인 설립보고서 포함)(지침 서식 제9-10호)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는 대부투자를 실행하였을 경우 대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여자금 공여 후 6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첨부되는 증빙서류로는 현지법인이 투자자 앞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또는 대부자금영수증서 등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 또한, 대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있는 경우 원리금 회수 후 즉시 신고기관에 원리금회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그리고 송금보고서는 송금 즉시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 등으로 송금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음

Q 22) 해외투자자금의 송금과 현물의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된 내용대로 해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현지법인 계좌 또는 정당한 수취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하여 수출 형식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출 시에 작성해야 하는 E/L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 수출 담당자는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일반 수출과 구분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투자자는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현물출자)하였을 경우 송금 증명서류나 수출 면장을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즉시 송금(현물출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투자자금은 해외투자 유효기간(1년) 내에 송금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므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 7) 유효기간 내에 송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측 사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23)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 여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투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의 절차는?

- 해외투자 신고 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현지 경제 여건의 악화 또는 국내투자자의 기업사정 등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당해 신고조건에 따라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4호)를 신고기관에 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청산 후의 분배잔여재산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보고를 필한 후 해외에서 운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외투자 신고 후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신고수리 유효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실효됩니다.

(참 고)

해산개시일 : 현지법인의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한 날

청산종료일 : 해산등기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현금수취를 종료한 날

보고대상 잔여재산 회수내역

-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
- ② 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청산손익
- ③ 회수되어야할 재산: (①±②) × 한국 측 투자비율
- ④ 회수재산 내역: 회수일자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
- ⑤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부속서류

- ① 등기부 등본 등 청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청산 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 전 대차대조표
- ③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 매입증명서(송금처 명기), 현물회수인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Q 24)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재조치

- 해외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고조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 시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 (2011. 4. 30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제재조치

-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 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 「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금융질서 문란정보
 - 구분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 등록사유 :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도한 자
 - 해제사유 :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 기록보존기간 : 5년
 -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2-5. 지원제도

Q 25) 해외직접투자 시 어디서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요자금 총액의 80% 이하(중소기업의 경우 90%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사업과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금융지원 종류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투융자자금,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기금 등이 있습니다.
- 민간은행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해외 현지기업을 위하여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26)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무엇인가요?

- 해외현지기업 간 원활한 물품대전 결제를 위하여 은행은 구매업체(대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량 중소기업)와 판매업체(현지 중소기업) 간에 체결한 납품 계약서를 근거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결제대전을 대금 수령 일까지 판매 기업에 우선 대출 지원하고 구매업체로부터 결제 기일에 결제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매업체의 신용도에 기인한 매출채권 대전 지급확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으로 구매업체의 협조가 필수요소인 상품입니다.

Q 27)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현지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구매업체(대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 물품(용역)을 납품하는 판매업체(현지 중소기업)는 현지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승인여부는 구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8)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한도 및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판매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간 납품 금액이나 납품계약서상의 계약액, 대금 결제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상채권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도거래로 운용하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1/4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도 내 건별대출 금액은 판매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 내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내로 취급합니다.

Q 29)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며 이자납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 판건별 대출실행일의 “해당국 대출 기준금리 + 스프레드”의 금리로 산정하며 대출 이자는 건별 대출금 만기일까지 선취하고, 결정된 이자율은 건별 대출금 만기일까지 변경 없이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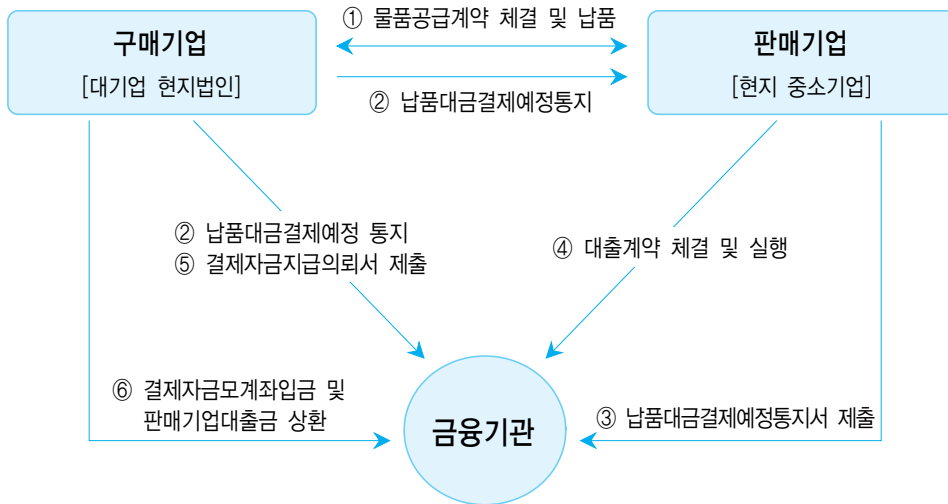
Q 30)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판매업체에 대한 한도 약정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며 한도 내 건별 대출금의 상환 기일은 '납품대금 결제예정 통지서' 상의 해당 건별 대출금에 대응하는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 이내로 하되 최장 180일로 합니다.

Q 31)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



- ① 구매 및 판매업체 간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실시
- ② 납품실적 매월 말 집계 후 익월 10일경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를 해당 금융 기관 및 차주사에게 통지
- ③ 판매업체는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
- ④ 3자간 현지 외상채권 대출계약 체결 및 판매업체 한도 약정 후 판매업체가 제출한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 구매업체 제출본과 대조, 일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건별 대출 실행
- ⑤ 구매업체가 자금결제일 3일 전까지 '결제자금지급의뢰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⑥ 구매업체가 자금결제일 前 영업일까지 해당 결제자금 모계좌 또는 차주사 결제 자금 납입계좌로 직접 입금 후 대출금 상환

Q 32) 지역별·업종별 진출현황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반 통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반 통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keri.koreaexim.go.kr>)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통계정보(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투자통계)를 구할 수 있으며, 국가별 투자환경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 분석 자료는 지역별·업종별 해외투자현황이 있는 ‘해외직접투자 동향’(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투자통계 → 해외투자 동향분석)과 매년 말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해외직접투자 경영 분석’(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발간물 → 단행본) 등이 있습니다.
- 필요시, 한국수출입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앞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화 02-3779-6667, 6678)

3. 무역보험제도

- 1) 해외사업을 위해 자금 및 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2) 해외투자 및 무역보험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3) 수입자평가를 의뢰하면 수입업체가 의뢰한 수출업체 상호 명을 알게 되나요?
- 4) 이미 거래를 진행 중인 수입업체가 인수나 합병되어 업체명이 바뀌면 재조사의를 해야 하나요?
- 5) 차주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6)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7)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거래유형은 무엇인가요?

| 문 의 처 |

수출보험 제도 안내

- KOTRA 해외투자상담팀
 -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협력관 : 전화 (02)3460-7477, 팩스 (02)3460-7945
-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고객센터 : 전화 1588-3884

Q 1) 해외사업을 위해 자금 및 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 목 | 목 적 | 보험 계약자 |
|-----------------------------|----------------------|------------------|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사업 촉진(해외사업용 금융지원) | 국내외 금융기관 |
|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 해외투자 촉진(해외투자용 금융 촉진) | 국내외 금융기관 |
|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 해외투자 촉진(국내투자자 보호) | 국내투자자(기업 · 금융기관) |

–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사업금융보험 또는 해외투자보험(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사업이 특정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경우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Q 2) 해외투자 및 수출보험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 분 | 해외사업 금융보험 |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 해외투자보험 (주식, 대출금, 보증, 채무, 부동산) | 중장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 |
|--------------|--|---|--|--|
| 제도개요 | 해외사업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외국법인 또는 외국정부 앞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함 으로써 해외사업을 지원 하는 제도 |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자 앞 해외투자 대출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거액의 자본투자를 요하는 자원개발 · 인수합 병 · 기타 해외투자의 소요자금 조달을 지원 하는 해외투자 지원제도 | 해외투자 후 투자상대국 의 국가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하는 상품으로, 전쟁 · 송금 · 약정불이행 등 순수 Country Risk를 담보하는 해외투자 지원제도 | 수입자(처주)가 대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경우 금융 기관의 손실을 보상함 으로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해당프로젝트 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보험 계약자 | 국내 · 외 금융기관 | 국내 · 외 금융기관 | 국내투자자 | 국내 · 외 금융기관 |
| 담보위험 | 비상 · 신용 위험 | 비상 · 신용 위험 | 비상위험 | 비상 · 신용위험 |
| 보험대상 대출원금 | 해외사업을 위한 총 차입금 범위내 | 해외투자사업 소요자금 범위내 | 해외투자금액 | 금융계약 원리금 |

| 구 분 | 해외사업 금융보험 |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 해외투자보험 (주식, 대출금, 보증, 채무, 부동산) | 증장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 |
|-----|---|--|---|--------------------|
| 부보율 | 100% 이내 | 100% 이내 (업종별 차등) | 100% 이내 | 100% 이내 |
| 비 고 | 지분 참여 및 공사 참여, 이 밖에 경제협력 사업으로 O&M 계약 등 체결 | -해외 자원개발 및 대체 에너지 사업 및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 는 사업 -신용위험 보험 사고시 국내업체 앞 구상 | -국익 기여가 예상되는 국내·외 투자주체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신흥시장 및 자원보유국 으로의 투자를 적극 유도 | - |

Q 3)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대상 기업이 우리 기업의 상호 명을 알게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를 위해 신용조사기관 관계자 및 무역 보험공사 해외지사 직원이 직접 해외기업과 접촉 하게 되므로 신용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외기업에 재무 자료 제출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더욱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4) 이미 거래를 진행 중인 해외기업이 인수나 합병되어 상호명이 바뀌면 재조사 의뢰를 해야 하나요?

- 예. 해외기업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근의 재무제표입니다. 인수·합병된 경우, 통상 재무상황에 변동이 생기므로 반드시 변동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등급을 책정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업체명이 바뀌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동일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 5) 차주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 국내법인이 해외사업 관련 공급계약, 구매계약, 운영 및 관리계약 등에 참여
 - 대출원금은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차입금중 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일부분으로 정함

Q 6)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무역보험공사의 주재원 및 현지 추심기관에 의해 수입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변제 촉구·변제조건에 대한 협상 및 분할상환 약정체결 등을 이끌어내며 필요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추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 7)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거래유형은 무엇인가요?

- 수출대금 결제조건에 상관없이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채권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와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위원회 방식, 정부결정방식, 입법기관을 통해 결정되는 법률방식 등입니다. 해외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정에 맞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법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단일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의 경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없이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제도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을 수시로 조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운영방식 등은 국가별로 다양하나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본이념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외국의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위원회 : 전화 (02)541-1493~5, 팩스 (02)541-1496

Q 우리나라와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 (싱가포르)도 일부 있으며 최저임금은 위원회·정부·법률 등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6대 준거지표

- 근로자와 그 가족의 빈곤 수준과 기본적 필요(basic needs)
- 일반적인 임금 수준
- 생계비와 그 변화
- 사회보장급여
- 다른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 생활수준
- 경제적 요인 : 경제 개발, 생산성 수준, 고용 수준, 지불능력

○ 최저임금의 시간·일·주·월 단위의 고시국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時間)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12.1.2~5.18 평균 최종고시 기준) : 1\$=1,134.03원, 1€=1,485.47원

| 국 가 | 적용기간 | 시간당 최저임금액 | | | 1인당 GNI ('08,\$) | 비 고 |
|------|----------------|--------------------------|----------------|------------------|------------------------|----------------------------------|
| | | 해당국 통화 | 달러환산 (\$) | 원화환산 (원) | | |
| 한 국 | '12.1.1~'12.31 | 4,580 | 4.04 | 4,580 | 19,890 | 상여금 및 숙박비 제외 |
| 일 본 | '11.10.1~ | ¥731 | 9.16 | 10,388 | 41,850 |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제, 상여금 제외, 숙박비 포함 |
| 미 국 | '09.7.24 ~ | \$7.25 | 7.25 | 8,222 | 47,340 | 연방 최저임금,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
| 영 국 | '11.10월~'12.9월 | £6.08 | 9.62 | 10,912 | 38,200 | 22세 이상, 상여금 및 숙박비(상한규정) 포함 |
| 뉴질랜드 | '12.4.1~ | \$13.5 | 10.98 | 12,451 | 28,770 ⁰⁹⁾ | 16세 이상, 휴가비 및 현물급여(식사, 숙소) 제외 |
| 캐나다 | '11.3.31~ | C\$10.25 | 17.43 | 19,760 | 43,250 | 각 주정부소재(온타리오 자료), 18세 이상, 숙박비 포함 |
| 아일랜드 | '11.2.1~ | €7.65 | 10.02 | 11,366 | 41,820 | 18세 이상 숙련된 성인근로자,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
| 프랑스 | '12.1.1~ | €9.22 | 12.08 | 13,698 | 42,370 | 주당 35시간 이상,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
| 독 일 | ~'12.12.31 | €11.05(서독) €10.00(동독) | 14.48 13.10 | 16,417 14,857 | 43,070 | 지역·업종별 단체협약 고시(건설업 보통 인부) |

주 1) 최저임금 산업범위와 관련 한국은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하지 않아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한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 산업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음

2) 일본 :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가중 평균한 수치

3) 캐나다 :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액(주별 최저임금 상이)

4) 독일 : 건설업 보통인부 기준 최저임금액(산업별 최저임금제 운영)

자료 :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해당국 관련 웹사이트, 코트라, 미노동부, 세계은행(World Bank) 등 【※ 이하 동일】

– 일(日)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12.1.2~5.18 평균 최종고시 기준) : 1\$=1,134.03원, 1€=1,485.47원

| 국 가 | 적용기간 | 일(하루) 최저임금액 | | | 1인당 GNI('08,\$) | 비 고 |
|-----|-----------|-------------------------|-----------|-------------------|--------------------|----------------------------------|
| | | 해당국 통화 | 달러환산(\$) | 원화환산(원) | | |
| 멕시코 | '12.1.1~ | 62,33P(A지역) | 4.77 | 5,414 | 8,930 | 국가최저임금제,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제 병행 |
| | | 60,57P(B지역) | 4.64 | 5,262 | | |
| | | 59,08P(C지역) | 4.53 | 5,132 | | |
| 필리핀 | '11.5.26~ | 389P~426P (마닐라, 비농업) | 9.06~9.93 | 10,279~ 11,256 | 2,060 | 지역별 최저임금제 |

– 주(週)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12.1.2~5.18 평균 최종고시 기준) : 1\$=1,134.03원, 1€=1,485.47원

| 국 가 | 적용기간 | 주 최저임금액 | | | 1인당 GNI('08,\$) | 비 고 |
|-----|----------------------|-------------|----------|---------|--------------------|------------------------------|
| | | 해당국 통화 | 달러환산(\$) | 원화환산(원) | | |
| 호주 | '11.7.1~ '12.6.30 | AU\$ 589.30 | 615.46 | 697,956 | 46,200 | 연방 최저임금, 현물급여 및 숙식비 제외 |

– 월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10.1.4~4.1 연평균 기준) : 1\$=1,143.05원, 1€=1,582.26원

| 국 가 | 적용기간 | 월 최저임금액 | | | 1인당 GNI('08,\$) | 비 고 |
|-------|----------|-------------------------|----------|---------|--------------------|---------------------------------------|
| | | 해당국 통화 | 달러환산(\$) | 원화환산(원) | | |
| 베트남 | '11.1.1~ | 200 만동(1등급지) | 96.00 | 108,867 | 1,160 | 국내 및 외투기업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최저 임금 통일) |
| | | 178 만동(2등급지) | 85.44 | 96,892 | | |
| | | 155만동(3등급지) | 74.40 | 84,372 | | |
| | | 140만동(4등급지) | 67.20 | 76,207 | | |
| 인도네시아 | '12.1.1~ | 1,529,150루피아 (자카르타주) | 168.21 | 190,751 | 2,500 | 주 단위 및 시·군단위로 최저임금 결정 |
| | | 705,000루피아 (동부자바주) | 77.55 | 87,944 | | |

| 국 가 | 적용기간 | 월 최저임금액 | | | 1인당 GNI('08,\$) | 비 고 |
|-------|----------|-------------|----------|-----------|--------------------|-------------------------------|
| | | 해당국 통화 | 달러환산(\$) | 원화환산(원) | | |
| 중 국 | '12.1.1~ | 1,260위안(북경) | 199.71 | 226,477 | 4,270 | 지역별 최저임금제 |
| | '12.4.1~ | 1,450위안(상해) | 229.83 | 260,628 | | |
| 헝가리 | '12.1.1~ | Ft 93,000 | 409.20 | 464,045 | 12,860 | |
| 폴란드 | '12.1.1~ | PLN 1,500 | 465.90 | 582,345 | 12,440 | 1년 이상 근무자 |
| 슬로바키아 | '12.1.1~ | €327 | 428.40 | 485,822 | 16,840 | 16세 이상 |
| 체코 | '12.1.1~ | CZK 8,000 | 419.20 | 475,385 | 17,890 | |
| 터키 | '12.1.1~ | €363 | 475.57 | 539,306 | 9,890 | 16세 이상 |
| 포르투갈 | '12.1.1~ | €485 | 635.40 | 720,561 | 21,870 |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50%한) |
| 스페인 | '12.1.1~ | €641.4 | 840.30 | 952,923 | 31,750 | 성별, 나이, 장애유무 구분 없이 최저임금 적용 |
| 슬로베니아 | '11.1.1~ | €748 | 979.95 | 1,111,298 | 23,900 | |
| 그리스 | '12.1.1~ | €586.08 | 767.82 | 870,735 | 26,950 | 미혼 3년 미만 근무 사무직, 상여금 포함 |
| 네덜란드 | '12.1.1~ | €1,446.60 | 1,891.78 | 2,149,203 | 49,030 | 23세 이상, 숙박비 포함 |
| 벨기에 | '12.1.1~ | €1,444 | 1,891.78 | 2,145,340 | 45,840 | 22세 기준(1년 이상 근무) |

5. 해외건설 진출제도

- 1) 해외건설면허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 해외공사수행 관련(현지법인 설립) 보고의 범위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 3) 해외건설 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4)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시에 이행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나요?
- 5) 해외건설 『통합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FIRMS)』은 무엇인가요?
- 6)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7) 해외설계수행실적, 해외감리수행실적 가점부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 8)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에 대한 PQ가점 부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 문 의 처 |

해외건설 신고제도 및 해외공사 수행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 전화 (02)2110-6292, 팩스 (02)503-7304

○ 해외건설협회 : 전화 (02)3406-1069, 팩스 (02)3406-1123

Q 1) 해외건설면허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 해외건설업면허는 신고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해외건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국내건설관련 면허증사본” 및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내부결재 과정을 마친 후 일종의 면허증격인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추후에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외건설업변경 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해외건설업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해외건설업의 종류는 종합·일반(토목, 건축,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전문·전기·정보통신·환경오염방지시설·건설ENG·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해외 건설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시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 (yes.icak.or.kr) → 해외건설업신고

Q 2) 해외공사수행 관련(현지법인 설립) 보고의 범위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해외건설 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수주활동 상황 보고, 계약체결 결과 보고, 시공 상황 보고, 공사내용 변경 보고, 준공 보고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 상황 보고입니다.
-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 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공사 수행절차(해외건설촉진법 참고)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해외진출 → 공사수행절차

-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지사 또는 법인 설립을 필요로 합니다. 현 해외건설촉진법(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환거래 등 이유로 보고 의무가 있으나 지점이나 사무소는 보고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 작성

근거규정 : 법 제10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8조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해외진출 → 공사수행절차

Q 3) 해외건설 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외건설공사는 특성상 입찰정보의 입수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건설 공사에 대한 정보 입수는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정보원을 선점하여 입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건설공사의 입찰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진출 예상 국가의 관보·신문·공사 정보지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잡지·인터넷 등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전트·개발업자·수출업자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발주처 및 기술회사의 인맥을 통해 직접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KOTRA·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KOICA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건설협회의 웹사이트(www.icak.or.kr)에는 프로젝트 부문에 최신 프로젝트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발주정보는 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World Bank, ADB, JBIC, IDB 등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웹사이트 카테고리 내 Project를 통해 최신공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프로젝트, 재외공관

Q 4)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시에 이행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나요?

- 해외공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Bank Guarantee와 보험 회사에서 발급하는 Surety Bond의 2종류가 있습니다. Surety Bond는 미주 지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지역과 중동지역은 Bank Guarantee가 통상적으로는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은 현지 은행의 보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외 발주처에서 선호하는 Bank Guarantee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일반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책은행·일반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으로

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로부터 여신 취급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등 사업성 평가 결과(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외화가득률, 계약조건, 발주처 정보 등 진출국에 대한 건설시장 동향, 해당업체의 공사수행 능력 등을 평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Bank Guarantee의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단독으로 Bank Guarantee를 발급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으로 공사이행 보증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모의 형태로 발급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체의 재무 상태에 따라 신용이나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담보·대주주 입보 등을 금융기관이 해당업체에게 직접 요청하여 금융기관에서 Bank Guarantee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5) 해외건설 「통합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FIRMS)」은 무엇인가요?

- 「통합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FIRMS)」은 우리업체들이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8개 건설기업이 10년 동안 수행한 126건의 해외공사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분석·견적·입찰부터 시공·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책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FIRMS는 2005.9.22일 정식 오픈되어 현재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메뉴를 통해 개인 및 기업회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통합관리시스템(rms.icak.or.kr)

Q 6)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외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 수출과 무환반출이 있으며, 일반 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고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개설,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송금, 현금송금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장을 개설한 후,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재를 송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수수가 없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환반출제도는 해외건설현장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적시 공급을 통한 공사수행의 원활화 및 우리나라 업체간(해외현장과 본사)의 거래로 인한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생성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수출절차의 대표적인 신용장(L/C) 개설을 통한 수출절차

| |
|--|
| 1. 해외공사 현장이 하나의 별도법인 형태가 되거나 수입대행업체를 선정 |
| 2. 동 법인이나 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수입허가를 얻어 국내에 물품구입 Order 발송 |
| 3. Master L/C를 Open하여 국내에 Telex로 접수 |
| 4. (Order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와 가격 Nego 후, 수입국 은행이 지급 보증한 L/C를 국내은행에 Telex로 접수) |
| 5. 주문을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은행에서 Master L/C Open을 확인 |
| 6. Master L/C Open을 확인한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수출관련 서류 작성 |
| 7. 수출서류 작성이 완료된 후 물품 선적 |
| 8. 물품 선적 후 국내은행에 기자재 대금을 지불요청 |

무환반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외공사현장에서 Master L/C Open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가 Master L/C Open을 국내 은행에서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무환반출입 확인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수출절차의 간소화(해외건설협회장의 반출입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기자재 반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
- L/C Open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음(외화 낭비 방지)
- 재반입 시 세제혜택(무환반출된 기자재의 2년 이내 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단점〉

- 기자재대금 수령 늦음(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의 수령 없이 기자재를 먼저 반출하였으나 이는 공사의 기성발생 또는 완료시 수출대금의 수령이나 정산이 되어야만 가능하여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에게 자금 부담이 발생)

Q 7) 해외설계수행실적, 해외감리수행실적 가점부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 최근 5년간 해외설계 및 해외감리용역의 가점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용역 수행에 대한 사실 확인만을 수행하며 공동도급 비율을 곱하여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처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용역비에 따른 가중치 적용방법은 발주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평가기준이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호 및 제2009-133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에 대한 가중치 적용비율은 각기 다르며 설계의 경우에는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이면서 당해 용역비 이상일 경우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1건당 0.25점의 가점 대상이 되나 감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경우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1건당 0.25점의 가점대상이 됩니다.

용역비별 가중치 적용비율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 및 제2009-1335호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설계의 경우(용역이 완료된 경우)

- 용역비 10억원 이상이면서 당해 용역비 이상 : 100%
- 용역비 10억원 이상이면서 당해 용역비 미만 : 80%
- 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60%
- 용역비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0%

나. 감리의 경우(진행중인 용역은 용역기간 경과율에 따른 평가)

- 감리용역비 30억원 이상으로 해당 용역금액 이상 : 100%
- 감리용역비 30억원 이상으로 해당 용역금액 미만 : 80%
- 감리용역비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60%
- 감리용역비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40%
- 감리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

예 A사(국내업체)와 B사(외국업체)간의 JV(4:6)이며 감리 용역비가 25억원인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335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I조, 7항에 설명된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전체 용역비 25억인 용역의 가중치 60%, 즉 $0.6 \times 0.25 = 0.15$ 점이며 공동도급 비율(40%)에 따라 가점이 0.06점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내 용역 입찰시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만약에 50%:50%의 비율로 적용된다면 당해 감리용역의 공동도급 지분율인 50%를 한 번 더 고려한 0.03점이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의 증명서에는 전체 용역비는 물론 외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즉, A사 10억원, B사 15억원)가 동시에 명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설계용역에 대한 가점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에는 특별한 명기가 없으니 감리용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발주처 및 지자체 등의 발주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8)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에 대한 PQ가점 부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 국내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PQ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자가 최근 10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해외 설계용역에 참여한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이 있는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그 사실 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점의 부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에 대한 PQ가점 적용방법은 발주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각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가 최근 10년간 참여한 해외설계용역이 5건 이상이거나 참여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경우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1인당 0.1점씩 최대 0.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가중치 적용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중치(%) | | 100 | 80 | 50 |
|--------|-----|---------|-----------------|---------|
| 구분 | 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 | 개월수 | 20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건수나 개월 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국내 용역 입찰 시에 타 업체와의 공동도급 지분율 등에 따른 상세 가점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에 명기되어있지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 록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1-1. 투자보장협정

- 의미
 - 협정체결국간 투자교류 증진을 위해 투자유치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자국민 및 제3국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공용 수용 시 적법하게 보상하며,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자유 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
- 주요 내용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보장, 적법한 수용 및 이에 대한 보상, 투자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투자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절차
- 기대효과
 -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를 체약 상대국에의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투자자의 투자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활성화

| 문 의 처 |

-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 : 전화 (02)2100-7719

투자보장협정체결 현황(92개국)

2012. 9월 현재

| | 발 호(84) | 서 명/미발호(9) | 비 고 |
|-------------------------|--|--|--|
| 구주지역 (32개국) |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덴마크('88), 헝가리('89), 폴란드('90), 러시아('91), 오스트리아('91), 이탈리아('92), 우즈베키스탄('92), 리투아니아('93), 터키('94), 스페인('94), 체코('95), 그리스('95), 타지키스탄('95), 핀란드('96), 포르투갈('96), 카자흐스탄('96), 라트비아('97), 우크라이나('97), 스웨덴('97), 벨라루스('97), 네덜란드('05/'75년 협정 개정, 슬로바키아('06), 알바니아('06), 크로아티아('06), 불가리아('06), 아제르바이잔('08), 루마니아('08/'94년 협정 개정), 키르기즈('08), 벨기에·룩셈부르크('11/'76년 협정 개정) | | ▶ 한-EFTA FTA ('06) - 동 FTA의 일부로서 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간 투자협정 체결 (기존 한-스위스 투자보장협정 중요) |
| 아시아지역 (16개국) |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말레이시아('89), 태국('89), 파키스탄('90), 몽골('91), 인도네시아('94), 인도('96), 라오스('96), 필리핀('96), 캄보디아('97), 홍콩('97), 일본('03), 브루나이('03), 베트남('04/'93년 협정 개정, 중국('07/'92년 협정 개정) | | ▶ 한-싱가폴 FTA('06) |
| 아프리카 -중동지역 (22개국) | 튀니지('75), 세네갈('85), 남아공('97), 이집트('97), 카타르('99), 나이지리아('99), 모로코('01), 알제리('01), 사우디아라비아('03), 이스라엘('03), 오만('04), 아랍에미리트('04), 요르단('04), 이란('06/'98년 협정 개정, 레바논('06), 모리타니아('06), 쿠웨이트('07), 리비아('07) 모리셔스('08), 가봉('09), 부르키나파소('10), 콩고공화국('11) | 탄자니아('98), 콩고민주공화국(DRC) ('05), 르완다('09), 짐바브웨('10) | |
| 미주지역 (15개국) | 파라과이('93), 페루('94), 아르헨티나('96), 볼리비아('97), 니카라과('01), 온두라스('01), 파나마('02), 엘살바도르('02), 멕시코('02), 과테말라('02), 코스타리카('02), 트리니다드토바고('03), 가이아나('06), 자메이카('07), 도미니카(공)('08), 우루과이('11) | 브라질('95), 콜롬비아('09) | ▶ 한·칠레 FTA('04)로 기존 '99년 한-칠레 투자보장협정 대체 ▶ 한·콜롬비아 FTA('12) 체결로 '09년 서명된 투자협정(FTA 내용과 동일)은 별도 발효절차 불요 |

1-2. 이중과세방지협정

(2012. 8월 현재)

| | |
|---------------|---|
| 의미 |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 또는 납세자의 본국)과 원천지국(투자유치국 또는 소득발생지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
| 주요 내용 | <p>가. 거주지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상소득별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한다. 대상소득별 과세범위는 해당국가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 협상을 통해 결정됨</p> <p>다. 원천지국에서 제한 없이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관련된 사업이윤, 예술가·체육인소득, 고정시설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및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단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p>라.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10~15%)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 사용료, 이자 <p>마. 조약별로 과세범위가 상이하므로 소득별로 해당 조약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채권 양도소득, 연금, 국제운수(항공기·선박)소득 등 |
| 발효 (78개국) | <p>덴마크('79), 핀란드('81), 스웨덴('82), 노르웨이('84), 터키('84), 룩셈부르크('86), 헝가리('90), 아일랜드('91), 프랑스('92), 폴란드('92), 이탈리아('92), 루마니아('94), 스페인('94), 체코('95), 불가리아('95), 러시아('95), 영국('96), 벨기에('96), 포르투갈('97), 몰타('98), 그리스('98), 우즈베키스탄('98), 네덜란드('99), 카자흐스탄('99), 독일('02), 오스트리아('02), 우크라이나('02), 벨라루스('03), 슬로바키아('03), 슬로베니아('06), 크로아티아('06), 알바니아('07), 리투아니아('07), 아이슬란드('08), 아제르바이잔('08), 라트비아('09), 에스토니아('10), 스위스('12) (구주 38개국)</p> <p>싱가포르('81), 말레이시아('83), 방글라데시('84), 호주('84), 스리랑카('86), 인도('86), 필리핀('86), 파키스탄('87), 인도네시아('89), 몽골('93), 베트남('94), 중국('94), 피지('95), 뉴질랜드('97), 파푸아뉴기니('98), 일본('99), 미얀마('03), 네팔('03), 라오스('06), 태국('07) (아시아 20개국)</p> <p>이집트('94), 이스라엘('97), 아랍에미리트('05), 요르단('05), 오만('06), 사우디아라비아('08), 카타르('09), 이란('09), 쿠웨이트('10) (중동 9개국) 튀니지('89), 남아프리카공화국('96), 모로코('00), 알제리('06) (아프리카 4개국) 미국('79), 브라질('91), 멕시코('95), 칠레('03), 캐나다('06), 베네수엘라('07), 파나마('12) (미주 7개국)</p> |
| 서명 미발효 (7개국) | 수단('04), 나이지리아('06), 탄자니아('99), 가봉('10), 우루과이('11), 페루('12), 바레인('12) |
| 개정된 협정 (12개국) | <p>독일('78), 영국('78), 벨기에('79), 프랑스('81), 네덜란드('81), 오스트리아('87), 스위스('81)(구주 7개국)</p> <p>일본('70), 태국('77), 뉴질랜드('83), (아시아 3개국) 캐나다('80) (미주 1개국), 쿠웨이트('00) (중동 1개국)</p> |

문 의 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 전화 (02)2150-436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38

1-3. 사회보장협정

(2012. 9월 현재)

| | |
|----------------|--|
| 의미 | 국가 간의 투자와 서비스 교류에 따라 외국에서 연금을 가입한 자영자 또는 근로자,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정 |
| 주요 내용 | 가. 파견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3년~5년) 상호 면제 나. 외국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 급여수급권 인정 |
| 발효 (24개국) | 유럽 15개국 : 영국('00), 독일('03), 네덜란드('03), 이탈리아('05), 헝가리('07), 프랑스('07), 체코('08), 아일랜드('09), 벨기에('09),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10), 덴마크('11) 아시아/오세아니아 6개국 : 중국('03), 일본('05), 우즈베키스탄('06), 몽골('07), 호주('08), 인도('11) 미주 2개국 : 캐나다('99), 미국('01) 중동 1개국 : 이란('78) |
| 발효 예정 (3개국) | 필리핀, 스페인, 터키 |

※ 발효예정국은 협정서명 후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가 진행 중임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1일 현재 24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국가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음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가.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의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 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

나. 협정내용

-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
 - 대상국가(16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 내용

- ①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와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협정
- ② 양 국가에 연금을 가입하였으나 한쪽 국가의 가입기간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미국의 경우 1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 국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③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미국의 경우 5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파견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 대상국가(24개국) : 이란, 영국, 네덜란드, 중국(잠정조치),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8개국과 상기 가입기간 합산협정 16개국

- 내용

- ①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
- ②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은 단기·파견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만 가입

| 국가 |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몽골, 호주,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 이태리, 헝가리, 프랑스,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 이란, 중국 |
|------|--|-------------------------------|--------|
| 면제기간 | 5년간 | 3년간 | 제한 없음 |

※ 면제가능기간은 협정국 동의 시 2년~3년 연장 가능

※ 이란에서는 가입증명서 제출 없이 한국 국적만으로 면제됨

- 면제절차 : 공단에 가입증명 발급신청(파견증명서류 첨부) → 파견국가 사회보장기관에 가입 증명서 제출

※ 가입증명서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서식자료)에서 출력(서식명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문 의 처

-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과 : (02)2023-8317, 팩스 : (02)2023-8311
 ※ 홈페이지 : www.mw.go.kr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02)2176-8700, 팩스 : (02)3485-9803~4
 ※ 홈페이지 :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전국 대표 : 전화 1355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1-1. 조세조약 현황

(2012. 8월 현재)

| Ⅱ시 행 국(78)Ⅱ | | | | | |
|--------------|---------------|-------------|---------------|--------------|---------------|
| 그리스 | ('98. 07.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 ('96. 01. 07) | 네덜란드 | ('81. 04. 17) |
| 네팔 | ('03. 05. 29) | 노르웨이 | ('84. 03. 01) | 뉴질랜드 | ('83. 04. 22) |
| 덴마크 | ('79. 01. 07) | 독일 | ('78. 05. 04) | 라오스 | ('06. 02. 09) |
| 라트비아 | ('09. 12. 26) | 러시아 | ('95. 08. 24) | 루마니아 | ('94. 10. 06) |
| 룩셈부르크 | ('86. 12. 26) | 리투아니아 | ('07. 07. 14) | 말레이시아 | ('83. 01. 02) |
| 멕시코 | ('95. 02. 11) | 모로코 | ('00. 07. 01) | 몰타 | ('98. 03. 21) |
| 몽골 | ('93. 06. 06) | 미국 | ('79. 10. 20) | 미얀마 | ('03. 08. 04) |
| 방글라데시 | ('84. 08. 22) | 베네수엘라 | ('07. 01. 15) | 베트남 | ('94. 09. 09) |
| 벨기에 | ('79. 09. 19) | 벨라루스 | ('03. 06. 17) | 불가리아 | ('95. 06. 22) |
| 브라질 | ('91. 11. 21) | 사우디아라비아 | ('08. 12. 01) | 스리랑카 | ('86. 06. 20) |
| 스웨덴 | ('82. 09. 09) | 스위스 | ('81. 04. 22) | 스페인 | ('94. 11. 21) |
| 슬로바키아 | ('03. 07. 08) | 슬로베니아 | ('06. 03. 02) | 싱가포르 | ('81. 02. 11) |
| 아랍에미리트 | ('05. 03. 02) | 아이슬란드 | ('08. 10. 23) | 아일랜드 | ('91. 12. 27) |
| 아제르바이잔 | ('08. 11. 25) | 알바니아 | ('07. 01. 13) | 알제리 | ('06. 08. 31) |
| 에스토니아 | ('10. 05. 25) | 영국 | ('78. 05. 13) | 오만 | ('06. 02. 13) |
| 오스트리아 | ('87. 12. 01) | 요르단 | ('05. 03. 28) | 우즈베키스탄 | ('98. 12. 25) |
| 우크라이나 | ('02. 03. 19) | 이란 | ('09. 12. 08) | 이스라엘 | ('97. 12. 13) |
| 이집트 | ('94. 02. 05) | 이탈리아 | ('92. 07. 14) | 인도 | ('86. 08. 31) |
| 인도네시아 | ('89. 05. 03) | 일본 | ('70. 10. 29) | 중국 | ('94. 09. 28) |
| 체코 | ('95. 03. 03) | 칠레 | ('03. 07. 25) | 카자흐스탄 | ('99. 04. 09) |
| 카타르 | ('09. 04. 15) | 캐나다 | ('80. 12. 19) | 쿠웨이트 | ('00. 06. 13) |
| 크로아티아 | ('06. 09. 15) | 태국 | ('77. 10. 12) | 터키 | ('84. 06. 03) |
| 튀니지 | ('89. 11. 25) | 파나마 | ('12. 04. 01) | 파키스탄 | ('87. 10. 20) |
| 파푸아뉴기니 | ('98. 03. 21) | 포르투갈 | ('97. 12. 21) | 폴란드 | ('92. 02. 21) |
| 프랑스 | ('81. 02. 01) | 피지 | ('95. 02. 17) | 핀란드 | ('81. 12. 23) |
| 필리핀 | ('86. 11. 09) | 헝가리 | ('90. 04. 01) | 호주 | ('84. 01. 01) |

* 볼드(Bold) 표시된 국가는 개정 발효국과 (가)서명국임

■ 제정 서명국(7) ■

| | | | | | |
|----|---------------|-------|---------------|------|---------------|
| 수단 | ('04. 09. 09) | 나이지리아 | ('06. 11. 06) | 콜롬비아 | ('10. 07. 27) |
| 가봉 | ('10. 10. 25) | 우루과이 | ('11. 11. 29) | 바레인 | ('12. 05. 01) |
| 페루 | ('12. 05. 11) | | | | |

■ 제정 가서명국(8) ■

| | | | | | |
|---------|---------------|------|---------------|-------|---------------|
| 키르기스 | ('08. 11. 18) | 리비아 | ('09. 08. 14) | 타지키스탄 | ('09. 10. 28) |
| 투르크메니스탄 | ('09. 11. 03) | 가나 | ('10. 04. 21) | 예멘 | ('10. 07. 07) |
| 브루나이 | ('11. 01. 12) | 에콰도르 | ('11. 08. 24) | | |

■ 개정 발효국(12) ■

| | | | | | |
|-------|---------------|------|---------------|-----|---------------|
| 프랑스 | ('92. 03. 01) | 영국 | ('96. 12. 29) | 벨기에 | ('96. 12. 31) |
| 뉴질랜드 | ('97. 10. 10) | 네덜란드 | ('99. 04. 02) | 일본 | ('99. 11. 22) |
| 오스트리아 | ('02. 03. 30) | 독일 | ('02. 10. 31) | 캐나다 | ('06. 12. 18) |
| 태국 | ('07. 06. 29) | 쿠웨이트 | ('10. 12. 27) | 스위스 | ('12. 07. 25) |

문 의 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 전화 (02)2150-436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38

1-2.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12. 7월 현재)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그리스 | 98.7.10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8%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 10% | 99. 1. 1 이후 지급분 |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96. 1. 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 10% | 97. 1. 1 이후 지급분 |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네덜란드 | 81. 4.17 99. 4. 2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 ·7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기타 : 10% ·저작권 : 15% | 81. 1. 1 이후 지급분 |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네 팔 | 03. 5.29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 10% | ·25% 이상 법인 : 5%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1.1 이후 지급분 10%) | 15% | 04. 1. 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노르웨이 | 84. 3. 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 (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 15% | 15% | ·기타 : 10% ·저작권 : 15% | 82. 1. 1 이후 지급분 |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뉴질랜드 | 83. 4.22 97.10.10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초과유보세 | 10% | 15% | 10% | ·한국 : 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81.4.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 · 한국 : 81.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뉴질랜드 :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 의정서 |
| 덴마크 | 79. 1. 7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 ·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 15% | 15% | ·산업적 투자 : 10% ·기타 : 15% | 77. 1. 1 이후 지급분 | 77.1.1 이후 | 의정서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독일 | 78. 5. 4 02.10.31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 ·장비사용 : 2% ·기타 : 10% | 03. 1. 1 이후 지급분 |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 라오스 | 06. 2. 9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 | 10% | ·10%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0% | 5% | 07. 1. 1 이후 지급분 |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
| 라트비아 | 09.12.2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0%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 10. 1. 1 이후 지급분 |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러시아 | 95. 8.24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 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비과세 |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 (조합 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 5% ·기타 : 10% | 5% | 96. 1. 1 이후 지급분 |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루마니아 | 94.10. 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7% ·기타 : 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기타 : 10% | 95. 1. 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룩셈 부르크 | 86.12.2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정보 : 10% ·기타 : 15% | 84. 1. 1 이후 지급분 |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리투아 니아 | 07. 7.14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사용 : 5% ·기타 : 10% | 08. 1. 1 이후 지급분 |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말레이시아 | 83. 1. 2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 15% |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기타 : 10% ·저작권 (문학예술) : 15% ·저작권 (학술) : 10% | 82. 1. 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 의정서 |
| 멕시코 | 95. 2.1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 (08.1.1부터) 자산세 (07.12.31 까지) |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 15%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비과세 ·기타 : 15% | 10% | 96. 1. 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모로코 | 00. 6.1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 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 10% | ·25% 이상 직접 보유 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0% | ·저작권 등 : 5% ·기타 : 10% | 01. 1. 1 이후 지급분 | 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몰타 | 98. 3.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 비과세 | 99. 1. 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 몽골 | 93. 6. 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 5% (지연벌과금 제외) | 5% | 10%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미국 | 79.10.20 | 소득세 법인세 | ·연방소득세 | 12% | ·10% 이상 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 이하 : 10% ·기타 : 15% | ·저작권 · 필름 : 10% ·기타 : 15% | 79.12. 1 이후 지급분 |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 |
| 미얀마 | 03. 8. 4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 농특세 (소) | ·소득세 ·이익세 | 10% | 10% | ·산업적 · 상업적 · 과학적 장비 경험 : 10% ·기타 : 15% | 04. 1. 1 이후 발생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방글라 데시 | 84.8.22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0% | 83. 1. 1 이후 지급분 |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베네 수엘라 | 07.1.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 · 은행 : 5% · 기타 : 10%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 : 5% ·기타 : 10% | 08. 1. 1 이후 지급분 |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베트남 | 94. 9. 9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 10% | 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5% ·기타 : 15% | 95. 1. 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벨기에 | 79. 9.19 96.12.31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 10% | 15% | 10% | 97. 1. 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벨라루스 | 03. 6.17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 5% | 04. 1. 1 이후 발생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불가리아 | 95. 6.22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총 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 5% | 95. 1. 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브라질 | 91.11.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 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 ·7년 이상 차관 (은행) : 10% ·기타 : 15% | 10% | ·상표권 : 25% ·저작권: 10% ·기타 : 10% | 92. 1. 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사우디 아라비아 | 08.12. 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 5% | ·25% 이상 법인 (동업 관계 제외) : 5% ·기타 : 10% | ·산업·상업· 학술 장비 : 5% ·기타 : 10% | 09. 1. 1. 이후 지급분 |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 스리랑카 | 86. 6.20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0% | 80. 1. 1. 이후 지급분 | 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 스웨덴 | 82. 9. 9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정부소득세 (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 ·7년 초과 차관 (은행) : 10% ·기타 : 15%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기타 : 10% ·저작권 : 15% | 81. 1. 1. 이후 지급분 | 81.1.1. 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스위스 | 81. 4.22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 10% |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 · 10% [문학예술 작품(필름 포함)의 저작권 제외] | 79. 1. 1. 이후 지급분 | 7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 12.07.25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 · 은행수취이자 : 5% · 기타 : 10% | · 10% 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5% | 13.1.1 이후 지급분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개정 의정서 |
| 스페인 | 94.11.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개인소득세·법인세 ·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 · 25% 이상 회사 : 10% · 기타 : 15% | 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슬로 바키아 | 03.7. 8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부동산세 | 10% |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 03.7.8 이후 지급분 | 03. 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슬로 베니아 | 06.3.2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5% | · 25% 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5%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싱가포르 | 81. 2.1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소득세 | 10% | · 25% 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5% | 79.1.1 이후 지급분 |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 05. 3. 2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소득세 · 법인세 | 10% |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비과세 | 03. 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아이슬 란드 | 08.10.2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국가에 대한 소득세 · 국가에 대한 부유세 ·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 10% |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10% | 09. 1.1 이후 납세분 |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 아일랜드 | 91.12.27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소득세, Income Levy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 10% 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비과세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아제르 바이잔 | 08.11.2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개인소득세 · 법인이윤세 · 재산세 · 토지세 | 10% | 7% | · 특허, 의장, 산업·상업· 과학적 경험정보 : 5% · 기타 : 10% | 09.1.1 이후 발생분 |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 알바니아 | 07.1.1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중소기업세 | 10% |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 기타 : 10% | 10% | 08. 1.1 이후 부서의 과세분 |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알제리 | 06.8.3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종약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 ·장비사용 대가 : 2% ·기타 : 10% | 07. 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에스토니아 | 10.5.25 |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 11. 1.1 이후 지급분 |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영국 | 78.5.13 96.12.29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 ·장비사용 : 2% ·기타 : 10% | 97. 1.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교환 각서 |
| 오만 | 06. 2.1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기업소득세 ·이윤세 | 5% (지급 연체 가산금 제외) | ·10% 이상 소유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0% | 8% | 07. 1.1 이후 부서의 과세액 | 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오스트리아 | 87.12.1 02.3.30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 ·장비사용 : 2% ·기타 : 10% | 03. 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요르단 | 05.3.28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 10% | 10% | 10% | ·한국 : 06.1.1 이후 납세분 ·요르단 : 06. 1.1 이후 발생분 |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우즈베키스탄 | 98.12.25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 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 ·장비사용 대가 : 2% ·기타 : 5% | 99. 1.1 이후 지급분 | 99.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우크라이나 | 02. 3.19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 5% | ·2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 5% | ·한국 : 03.1.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 부터 60 일째 되는 날 이후 지급분 | ·한국 : 03. 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 기업소득세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 이란 | 09.12.8 |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재산세 | 10% | 10% | 10% | 10. 1.1 이후부터 과세분 |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이스라엘 | 97.12.13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금융기관 수취 : 7.5% ·기타 : 10%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 10% ·기타 : 15% | ·장비사용 : 2% ·기타 : 5% | 98. 1.1 이후 지급분 |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 이집트 | 94. 2. 5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 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3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5% | 92. 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이탈리아 | 92. 7.14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0% | 93. 1.1 이후 지급분 |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인도 | 86. 8.3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 ·은행 : 10% ·기타 : 15% | ·20% 이상 법인 : 15% ·기타 : 20% | 15% | ·한국 : 86.1.1 이후 ·인도 : 86.4.1 이후 지급분 | · 한국 : 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인도 : 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 의정서 |
| 인도 네시아 | 89. 5. 3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 사용료에 대한 조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5% | 90. 1.1 이후 지급분 |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일본 | 70.10.29 99.11.22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10% | ·직전 6개월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10% | 00. 1. 1 이후 지급분 |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 94. 9.28 06. 7. 4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 10% | 07. 1. 1 개시 지급분 | 07.1.1 개시 사업연도 | 제2 의정서 |
| 체코 | 95. 3. 3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 활동 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 10% (신용판매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 10% (저작권사용 료 면제) | 95. 3. 3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칠레 | 03 .7.25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은행 및 보험회사 : 5% ·기타 : 15% |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 04. 1. 1 이후 발생분 |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카자흐 스탄 | 99. 4. 9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10%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 ·상업적· 산업적· 학술적 장비 : 2% ·기타 : 10% | 00. 1. 1 이후 지급분 |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 카타르 | 09.4.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 10% | 10% | 5% | 10. 1. 1 이후 원천징수 | 1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캐나다 | 80.12.19 06.12.18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 1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쿠웨이트 | 00. 6.13 10.12.27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익의 5% ·자카트세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5% | 5% | 15% | 11. 1. 1 이후 지급분 | 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크로아 티아 | 06.9.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 5%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 비과세 | 07. 1. 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태국 | 77.10.12 07. 6.29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석유소득세 | ·금융기관 (보험회사포함) :10% ·장비, 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기타 : 15% | 10% |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 등, 과학 작품 사용권 등 : 5%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 08. 1.1 이후 지급분 | 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 터키 | 86.3. 27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 | ·2년 초과 : 10% ·기타 : 15%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5% ·기타 : 20% | 10% | 87. 1.1 이후 지급분 |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튀니지 | 89.11.25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 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 15% | 15% | 90. 1.1 이후 지급분 |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 파나마 | 12.4.1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 | 5% | ·25% 이상 직접 소유법인(동업기 업 제외) : 5% ·기타 : 15%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3% ·기타:10% | 13.1.1 .이후 지급분 | 1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
| 파키스탄 | 87.10.20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 12.5% |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2.5% | 10% | 87. 1.1 이후 지급분 |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조약 체결국 | 발효 일자 | 대상조세 | | 제한세율(원천징수) | | | 적용기간 | | 비고 |
|------------|------------------------------|--------------------------|---|--|---|-------------------------------|--------------------|---|-----|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
| 파푸아 뉴기니 | 98. 4.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하용되는 조세유인책 | 10% | 15% | 10% | 99. 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포르투갈 | 97.12.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 15% | ·2년 이상 25% 이상 회사 : 10% ·기타 : 15% | 10% | 98. 1.1 이후 지급분 |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폴란드 | 92. 2.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법인소득세 ·농업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 10% | 91. 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프랑스 | 81. 2. 1 92. 3. 1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0% | 92. 3.1 이후 지급분 | ·개인 : 92. 3.1 이후 발생소득 ·법인 : 92. 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피 지 | 95. 2.17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0% | 96. 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핀란드 | 81.12.23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국가소득세·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 10% | 82. 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필리핀 | 86.11. 9 |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공모공사채 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 촉진법 :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10% ·기타 25% ·필리핀투자 촉진법 : 10% | 15% ·필리핀 투자촉진법 : 10% | 87. 1.1 이후 지급분 |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헝가리 | 90. 4. 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 비과세 | ·25% 이상 법인 5% ·기타 : 10% | 비과세 | 91. 1.1 이후 지급분 |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호 주 | 84. 1. 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비공개 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 15% | 15% | 15% | 82. 1.1 이후 발생소득 |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 국가별 제한세율 요약표 적용 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 : 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조세의 '주민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국제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법령 → 조세조약」란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2013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 KOTRA 자료 12-040 –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인 : 홍 석 우

편집인 : 박 흥 석

발행처 : KOTRA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KOTRA

전화 : 02) 3460-7114

www.kotra.or.kr

인쇄처 : 화신문화(주) (02)2277-0624

Copyright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